

#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0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책임연구원 : 박성철(한국전파진흥원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박시백(한국전파진흥원 주임연구원)

# Contents

## 목 차

### 요 약 문

### I 서 론

### II 국내의 허가 및 검사제도

- 1. 허가개관 ..... 5
- 2. 관련 규정 및 절차 ..... 11
- 3. 정기검사 규정 및 항목 ..... 27
- 4. 국내 허가 및 검사제도의 이슈 ..... 32

### III 주요 국가 허가 및 검사제도

- 1. 일본의 허가 및 검사제도 ..... 39
- 2. 미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 ..... 53
- 3. 영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 ..... 78
- 4. 독일의 허가 및 검사제도 ..... 83
- 5. 프랑스의 허가 및 검사제도 ..... 89

### IV 국내외 허가 및 검사제도 비교

- 1. 허가 구조 및 체계 ..... 94
- 2. 허가 관할 기관 및 법규정 ..... 95
- 3. 허가 절차 ..... 99
- 4. 재허가 및 정기검사 ..... 104

1. 방송사업 허가과 방송국 허가의 구분 .....	111
2.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 .....	112
3. 재허가 기간의 연장 .....	113
4. 허가 과정의 시청자 의견 제시 .....	114
5. 재허가 제도의 유연화 .....	116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한국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 관련 법 정리 .....	118
부록 2. 일본 방송법 관련 법령 목록 .....	129
부록 3. 일본 방송국 개설 관련 방송법 규정 .....	130
부록 4. 일본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	134
부록 5. 일본 전파법 관련 법령 목록 .....	146
부록 6. 일본 방송국 개설 관련 전파법 규정 .....	149

# Contents

## 표 및 그림 목차

### 표 목차

<표 1> 지상파 방송국 및 다른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27
<표 2> 정기검사의 구분	29
<표 3>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	29
<표 4> 대조검사 및 성능검사 항목	31
<표 5> 국가별 방송 허가제도	32
<표 6> 방송평가와 재허가의 중복 평가항목	38
<표 7> 일반 무선국 및 방송국의 면허신청사항 비교	43
<표 8> FCC의 규제업무	54
<표 9> FCC가 정한 공익의무조항	71
<표 10> TV 방송국의 주요 체크리스트	76
<표 11>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수행기관	97
<표 12>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규정 비교	99
<표 13> 한국·일본·미국의 주파수 지정 관련 비교	101
<표 14>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신청 관련사항 비교	103
<표 15>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관련 비교	105
<표 16> 불시검사 항목과 정기검사 항목의 비교	108
<표 17> FCC의 지상파 TV방송국 기술적 사항 검사 항목(불시검사)	112
<표 18> 주요국의 지상파 TV 방송국 허가기간	113
<표 19> 텔레비전 방송국 면허 갱신에 대한 공중 공지 규정	115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방법 체계도 .....	4
<그림 2>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법령 체계도 .....	11
<그림 3> 지상파 방송국 허가업무 처리 흐름도 .....	14
<그림 4> 개설신청에서 운용개시까지의 흐름 .....	48
<그림 5> 무선국 변경절차 .....	52
<그림 6> 미국의 방송허가절차 .....	63
<그림 7> 미국의 재허가 주요 절차 .....	72
<그림 8>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절차 비교 .....	100

# 요약문

## I

## 서론

### 1. 국내외 환경

#### 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다양한 허가·검사 제도의 성립과 발전

-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고유의 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왔음. 지상파 방송사업 또는 방송국의 허가기간, 허가절차, 방법, 허가조건 등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방송산업의 발전과정, 방송시장의 형태와 특성, 정부의 철학과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규제가 발전하여 왔음. 예로,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기간은 4년에서 20년까지로 다양하며, 허가방식은 크게 심사제와 경매제를 택한 국가로 구분됨

#### 나. 전파자원 이용 수요의 증가와 이해 당사자 간 갈등·분쟁의 가능성

- 최근 우리나라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수입의 확대, 사업자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방송과 통신시장의 융합과 성장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파자원의 수요 및 이용 증가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음



## 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유지 조건에 대한 논의

- 산업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미디어 시장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으로서 방송국의 법률적 기술적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공영방송 중심에서 벗어나 민영방송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간 재정적 규모나 안정성, 기술적 수준 등에서 편차가 나타남. 특히, 일부 사업자는 재허가 과정에서 논란을 빚는 등 재정적 내지 기술적 문제 발생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음

## 2. 연구의 필요성

### 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상파 방송 규제정책의 추진 필요

- 급속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DMB 등 신규매체의 등장으로 방송 시장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유료방송과 융합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의 변화가 불가피함
-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지대하며 한정된 전파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도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 신규 매체의 등장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상파 방송 사업의 규제정책에 대한 추진이 요구됨

### 나. 전파자원의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제도 모색

-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 가속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전파자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출력 무선국인 방송국의 전파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검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외국의 지상파 방송사업 및 설비의 관리·규제와 관련한 현황과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특히, 미국과 일본의 최근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함

## 다. 기존 허가·검사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안

- 법률적·기술적 기준에 근거하는 방송국 허가·검사제도는 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존속을 결정하는 핵심적 행정절차임. 특히,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갖춰야 할 기본 조건임
- 기존의 허가·검사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법리적 차원 내지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검사·허가 등 행정행위의 구체적 절차에 대한 분석과 방송국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의 제안이 필요함

##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법적 규제 중 사업규제 측면 분석

-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규제, 경제적 규제, 법적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방송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를 살펴보고자 함
- 법·제도적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규제(contents regulation)와 방송사업의 진입과 유지에 관한 규제(business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사업개시 및 유지와 관련한 법·제도적 규제의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 나. 방송 사업 허가제도 및 방송국 검사제도 분석

- 방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허가과 무선국 시설에 대한 허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함
- 사업에 대한 허가는 최초의 시장 진입 시에 필요한 신규 허가과 일정기간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재허가 제도가 있음.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송수신 시설에 대한 허가는 신규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와 정기검사, 변경검사 등이 있음
- 사업허가 관련 사항은 방송법에서, 시설허가 관련 사항은 전파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 및 관련 규칙, 규정, 고시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함

## 다. 미국·일본 등의 허가·검사 관련 제도 검토 및 분석

- 미국, 일본의 지상파 방송 허가 및 검사제도에 대한 최근 법·규정을 확보하여 허가·검사의 기한, 절차, 조건 등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함
- 국내 허가 및 검사 제도를 살펴보고 특히 주요 쟁점들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4. 연구방법

## 가. 국내와 미국·일본 등의 법령과 규제에 대한 최신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와 미국, 일본의 최신 법령의 관련 규제조항들을 수집 분석함. 국내의 경우, 방송법의 사업허가 관련 조항과 전파법의 무선국 시설허가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법 제도들을 분석함

## 나. 방송국 허가 백서 및 검사업무 지침서 등 자료 분석

-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함. 학술적 연구 이외에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백서』, 『방송국 허가업무 편람』, 『무선국 기술업무 지침서』 등 실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함

## 다. 방송국 검사현장 참관 및 관계자 인터뷰

- 지상파 방송국 검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여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안함. 허가·검사제도의 정책 관계자들과 현장의 검사원, 방송국의 경영 및 기술 담당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제안에 현장의 인식과 의견을 참고함

## II

## 국내의 허가 및 검사제도

### 1. 허가 개관

- 현행 방송법은 방송국에 대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국 허가와 관련한 현행 법제 체계는 전파법과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방송법 :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규제, 방송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룸
  - 전파법 :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설비 허가·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방송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방송법에 기초하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허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으로서 방송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방송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
  - 방송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의 규제 역시 ‘방송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전파 발사의 정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2. 관련 규정 및 절차

- 지상파 방송국 허가·검사제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및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에 포함되어 있음
- 전파법 상 관련규정
  - 전파법에서는 하나의 무선국으로서 지상파 방송국 개설 허가에 대해 규정
  -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함
  - 포함 규정 :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방송국 개설허가의 심사사항, 방송국 개설조건, 방송수신의 보호 및 방송 표준방식, 방송국 허가 절차, 재허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허가 유효기간 등
- 방송법 상 관련규정
  - 방송법 제9조 제1항을 통해 방송사업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전파법에 위임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법에서 방송국 개설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 포함 규정 :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 재허가, 재허가 거부 시 후속조치 등
- 신규허가 절차 : 허가신청 → 접수 → 주파수 지정 → 허가 → 시설공사 → 준공검사(변경검사) → 허가
  - 주관부처 및 담당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전파기획관
  - 신청서류 : ① 신청인 관련 사항 기재 서류, ② 사업계획서, ③ 시설설치계획서
  - 심사사항
    - <기술관련>
    - ①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②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 ③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전파법시행령이 정하는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④ 방송국의 개설조건 충족 여부
- ⑤ 기타 방송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전파법시행령이 규정한 사항

<사업관련>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허가 관련 기타 절차

- 변경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①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②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 ③ 사업의 양도
- ④ 방송분야의 변경
- ⑤ 방송구역 변경
- ⑥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 ⑦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구비서류> :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허가증 사본, 공사설계서 및 무선국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기타 변경사실 증명서류 등

- 재허가

- 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는 그 근거를 방송법에 두고 실질적인 규정 및 절차는 전파법에 의거하여 행해지며,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 : 3년

<심사항목>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 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⑩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 ⑪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⑫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⑬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⑭ 주과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⑮ 운용할 무선설비가 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허가 취소 :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에서 정하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음

### 3. 정기검사 규정 및 항목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
- 관련 규정
  - 유효기간 : 3년
  - 시기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방법
  - 대조검사 : 시설자, 설비, 설치장소, 종사자 배치 등에 대한 실제 현황이 허가
    - 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검사
  - 성능검사 : 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사로, 공중선전력, 주파수, 불요발사, 점유 주파수대폭, 등가등방복사전력, 실효복사전력, 변조도 등을 측정
- 검사수행기관 : 각 지역별 전파관리소

○ 검사 항목

- 대조검사
  - 공통적용 항목 : 시설자, 설치장소, 무선종사자, 기기형식·일련번호 및 전파 형식, 주파수, 공중선, 전원설비, 안전시설, 보호장치
  - 개별적용 항목(지상파 방송국) : 원격제어 및 감시장치, 의사공중선, 예비장치
- 성능검사
  - 공통적용 항목 : 송신장치(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 공중선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및 실효복사전력 등), 수신장치(부차적인 전파발사), 종합시험
  - 개별적용 항목(지상파 방송국) : 아날로그(종합주파수 특성, 영상송신장치의 상·하측파대 강도 등 37개 항목), 디지털(휘도신호와 색차 신호의 비트수, 영상신호의 형식 등 15개 항목)

Ⅲ

주요 국가 허가 및 검사제도

1. 일본의 허가 및 검사제도

- 전파법상 관련 규정
  - 일본의 전파법에서는 무선국 면허, 무선설비 조건, 무선국 감독 등 통신·방송 관련 하드웨어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이러한 전파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방송국개설의근본적기준, 무선국 허가절차규칙, 무선설비규칙, 방송국과관련한표현의자유향유기준 등의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파법에 의거하여 일본에서는 방송전파를 발사하는 방송국을 규제하고 있음
- 방송법상 관련 규정
  -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의 면허를 받은 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 업무 운영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됨
  - 방송법의 주요 내용 : 법의 제정 목적, 방송의 정의, 프로그램 기준, 일본방송 협회(NHK) 규정, 위성방송 관련 규정 등
  - 방송법의 구성 : ① 총칙으로, 목적, 정의, 방송보급기본계획으로 구성  
 ②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 자체의 프로그램 심의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 기준 제정에 대한 의무조항
- 방송사업자 면허 관련 규정 : 방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면허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선국 개설에 대한 면허로 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허가 절차 : 주파수 확보 → 면허신청 → 심사 → 예비면허 부여 → 공사 → 낙성 검사 → 본 면허 부여
  - 면허 신청 기간 : 이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이 희소하고,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인 관계로 일정한 기간 공시 후 신청을 받고 있음
  - 면허 신청 사항 : 일반 무선국과 동일한 항목 외에도,
    - ① 무선설비의 공사비 및 무선국 운용비의 지불방법
    - ②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전망
    - ③ 방송사항
    - ④ 방송구역 등
 일반 무선국의 그것과는 다른 별도의 항목들이 포함

- 심사 기준

- ① 공사설계가 전파법 제3장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함
- ②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 근거해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해야 함
- ③ 해당 업무를 유지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어야 함
- ④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향유기준에 합치해야 함
- ⑤ 방송국개설의 근본적기준에 합치해야 함

○ 관련 기타 절차

- 변경허가 : 면허유효기간 중 통신사항, 무선설비 설치 장소, 무선설비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무성에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면허의 취소 : 총무대신은 면허인이 결격사유(외국인 등), 외국인 임원 취임 금지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재면허 :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방송국에 대해 재면허를 할 수 있음. 재면허와 신규 면허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개설 절차를 전파법 제15조에 따른 간이한 면허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 미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

○ 관련 규정

-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권한은 Communication Act of 1934(이하 1934 Act)에 의하여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갖고 있으며, FCC는 방송에 관한 허가 및 재허가 심사를 1934 Act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 FCC의 규제 업무

- ① 라디오 방송국 구분
- ② 방송국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성격 규정
- ③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 ④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방송지역 등급 구분
- ⑤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 간의 전파 간섭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 ⑥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자격 조건
- ⑦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준비시설 점검, 방송사 시설규제 조항 준수 여부,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운영 준수 여부
- ⑧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호출부호 배정
- ⑨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준수해야 되는 규제 및 통제 규칙 제정

○ 면허 신청자격 : FCC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갖춘 자 또는 사업체

○ 방송사업자 면허 및 방송국 허가 관련 규정

- 1934 Act 307조에 의하면, FCC는 공익과 편의성, 필요성에 따라 무선국 면허를 신청자에게 부여해야 함
- 면허 기간 및 갱신에 대해 면허 유효 기간은 8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부여된 면허에 대해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갱신을 부여할 수 있음
- 아날로그 지상파 TV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에 대한 규정과 함께 Advanced TV 면허에 대한 규정을 1934 Act 제336조에 규정

○ 허가 절차 : 주과수 할당(경매) 공고 → 주과수 할당(경매) → 방송국 건설허가 (3년 이내 운용준비) → 방송국 사업자 면허신청 및 허가

- 주과수 할당 시 심사기준

- ① 지역 거주자
- ② 소유의 다양화
- ③ 주단위의 네트워크(State-wide Network)
- ④ 기술적 요건
- ⑤ 동점일 경우 다른 방송 소유가 적은 사업자 등 일정 조건에 의해 선정

- 방송국 건축 허가를 위한 제출자료

- ① 신청자 또는 단체의 인적 사항 등 사업자 일반정보

② 사업자의 법적 자격 여부

③ 기술적인 세부 사항

- 방송 사업자 면허 시 제출사항

· TV 방송국 허가 : 일반정보(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료 면제여부, 건축허가서의 기간, 조건, 의무조항 이행 등), 기술정보(채널, 주파수 정보, 송신기 출력, 안테나 정보 등)

· DTV 방송국 허가 : 일반정보(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료 면제여부, 또는 공영 방송 신청 구분, Program Test Authority 이행 여부 등), 법적 정보(건축허가서의 기간, 조건, 의무조항 이행, 변경 및 불이행 여부, 사업자의 문제점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계류상태 등), 기술정보(채널, 주파수 정보, 송신기 출력, 안테나 정보 등)

○ 재허가 절차 :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에 대한 청원서 제출 → FCC 답변서 제출 → FCC 청원서 조사 시작 → 재허가 여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 FCC 재허가 승인 및 조건부 허가

- 재허가 심사기간 : 8년

- 재허가 기본조건

① 방송사업자가 공익 의무조항을 준수하여 공익을 위한 방송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② 방송사업자가 방송법과 FCC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법과 FCC 규제를 고의적으로 위반·남용 사실이 없을 경우

- 재허가 거부 청원

· 해당 방송지역의 주민이나 단체가 FCC에 특정 방송사의 재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 인력,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FCC에서는 재허가 거부 청원제를 전격 도입

· 재허가 거부 청원 시 제출서류 : ① 청원서, ② 청원서를 복사해서 해당 방송사에 1부 보냈다는 배달 증명서, ③ 전문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청원서 내용이 사실임을 공증하는 서신(Affidavit Letter)

- 재허가 준비서류 : ① 사업자 소유 보고서, ② 평등고용제도, ③ 공람파일 등
- 무선 시설물에 대한 검사 방법 : ABIP(Alternative Broadcast Inspection Program: 선택적 방송국 검사프로그램) 및 SIP(Self-Inspection Program, 자가검사 프로그램)
- 불시검사항목
  - ① 비상경보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의 운영과 작동에 관한 항목
  - ② 안테나의 높이, 위치, 관리 등에 대한 항목
  - ③ 송신기의 출력의 크기
  - ④ 할당된 주파수대의 사용여부
  - ⑤ Aural modulation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⑥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⑦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

### 3. 영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

- 허가 관련 규정
  - 영국의 지상파방송은 BBC와 BBC를 제외한 방송으로 나뉨. BBC는 칙허장과 협정서를 근간으로 설립 및 운영되며 BBC를 제외한 방송에 대한 허가는 방송법(1990년, 1996년)과 커뮤니케이션법(2003년)을 근간으로 함
- 허가 절차 : 허가에 대한 공지 → 신청서 제출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심사 및 입찰가 확인 → 허가부여 여부 결정
  -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최고로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허가가 부여됨(예외 : 최고로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응모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은 경우, 최고로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응모자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응모자가 있는 경우)
  - 방송법 제2장에 따라 채널3, 채널4, 채널5의 허가기간은 10년

○ 관련 기타 절차

- 변경허가 : 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사는 허가의 종료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함(ITC는 지상파 방송사가 허가 신청시 제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허가 취소 : 1990년 방송법 42조, 2003년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① OFCOM이 인지하고, ② 허가조건이나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③ 방송사가 그러한 조치를 정정하도록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 분명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4. 독일의 허가 및 검사제도

○ 허가 관련 규정

- 독일의 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뉨. 공영방송은 내무부와 주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에 관해 관할하며, 민영방송은 연방 각 주의 미디어청이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는 미디어법에 의거하여 허가업무를 수행. 방송국가 협약 20조에서는 민영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방영을 위해서는 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 허가 절차 : 주과수 할당 계획 공고 → 허가신청서 접수 → 방송사업 허가 결정

- 독일의 방송허가는 주과수 할당 계획 공고를 통해 게시됨
- 니더작센주미디어법(NdsMedG) 제 6조 제1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음
  - ① 민사법상의 법인(재단,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 ② 공법상 종교단체 또는 공법상의 세계관단체
  - ③ 영속적으로 투자된 민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결합체(Vereinigung)
  - ④ 보호자가 지정되지 않은, 행위능력의 제한이 없는 자연인
- 주미디어청의 심사기준은 ①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예상 기여도, ② 종합편성 프로그램과 전문편성프로그램, ③ 프로그램의 지역관련성, ④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전문성, ⑤ 편집에 있어서의 공동결정 등

- 민영방송의 허가기간은 주마다 미디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기간 역시 다르며, 최저 2년에서 최고 10년까지로 다양한데 5년을 민영방송의 허가기간으로 정한 수가 많음

○ 관련 기타 절차

- 재허가 : 독일에서는 재허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민영방송이 허가기간 동안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가 됨
- 허가의 철회 : 방송사업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도 ① 허가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② 방송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③ 방송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
- 허가의 취소 : 방송사업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도 ① 허가신청자가 기망, 협박, 또는 여타의 위법수단을 이용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②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요청이 있는 후에도 당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5. 프랑스의 허가 및 검사제도

○ 방송법상 관련 규정

- 프랑스의 방송허가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자유법(1989년 1월 17일 법), 제1장 제1절21조-43-10조에 규정되어 있음
- 프랑스의 방송허가는 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의해 입찰의 과정을 거쳐 협약(convention)을 맺는 허가제와 신고(déclaration)를 하는 신고제의 두 가지로 구분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 허가심사 → CSA와 사업자 협약 → 허가권 부여

- 지상파 아날로그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의 신설은 입후보자의 입찰을 통한 CSA의 허가권 발급 대상으로 규정됨
- 임시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의 허가는 CSA가 입찰과정을 담당하며, CSA는 기간이 9개월이 넘지 않는 한시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 있음
- 허가기간
  - ① 지상파 전국/지역 : 라디오의 경우 최대 5년,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허가권을 발급
  - ② 임시 지상파 지역 : 한시적 텔레비전의 허가는 연장할 수 없으며 기존사업자에 의해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CSA에 기존 허가의 결산서가 제출되어 있는 동안에 합리적으로 한시적 채널의 허가 기간을 조정해서 정함
- 관련 기타 절차
  - 재허가 : 특별한 하자가 없는 채널에 한하여 CSA가 한번에 5년씩 두 번까지 허가를 자동으로 갱신해 줄 수 있도록 함
  - 공청회와 협약의 재조정 : CSA가 재허가 가능성을 출판물의 형태로 공표한 후 1개월 내에 당사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 허가 불허 및 취소 : CSA는 재허가 불허 결과에 따라 법적 청산이나 상사법원에 의한 양동의 경우, 허가 당사자의 법인이 사라진 경우에 발급된 허가의 폐지를 선언해야 함

## IV

## 국내외 허가 및 검사제도 비교

### 1. 허가구조 및 체계

- 한국과 일본은 방송법과 전파법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을 규율하며,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함



- 미국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관련하여 한국 및 일본과는 크게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시장의 규모 및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미국은 대출력 방송국이 1,800여개 전체 방송국 수는 2만 7천여 개에 이르며, 상업방송과 지역방송국, 저출력방송국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음. 개별 방송국을 모두 심사하고 분석하기에는 인력·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방송국의 허가·검사 과정에 사업자의 자체 점검과 시청자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FCC는 재허가의 경우 지역 시청자들의 청원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검사의 경우도 ‘자가검사리스트(Self Inspection List)’를 제공하는 한편 불시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 허가 관할 기관 및 법규정

### 가. 관할 기관

- 한국은 2008년 2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기존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를 받는 이중적 구조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및 전파법 제21조 및 제34조에 의한 무선국(방송국) 개설허가를 심사함
- 일본은 우정성에서 방송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1년 1월 중앙성청 개편으로 우정성이 총무성에 통합되면서 총무성에서 주파수 할당에서부터 면허 심사 및 재면허에 이르는 방송 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미국은 Communication Act of 1934 및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에 의해 FCC에서 방송에 관한 허가 및 재허가 심사를 전담하고 있음. 동법 301조는 FCC에 의해 부여된 면허를 소유하지 않고는 누구도 무선국을 운영하거나 무선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면허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지를 감시하고, 위반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나. 관련 법규정

- 한국은 방송법과 전파법을 통해 방송 허가 및 검사에 관한 내용 전반을 규율하고 있음
  - 방송법에서는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및 절차, 결격 사유, 허가 취소, 변경허가, 재허가 등을, 전파법에서는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의 개설허가, 허가 시 심사사항, 개설 조건, 허가 유효기간, 재허가, 정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방송법과 전파법을 통해 방송 면허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
  -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통해 방송국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허가신청 관련 사항 및 절차, 면허변경, 재면허, 면허취소 등은 전파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음
  
- 미국의 방송국 허가제도는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의거 FCC에 의해서 진행되며, 한국·일본과는 체계에서부터 차이가 있음
  - 공익과 편의성, 필요성에 따라서 무선국을 분류하고 면허 무선국의 분류별, 분류 내 각 무선국에 부여되는 서비스 성격을 규정함
  - 각 무선국 분류별로 주파수 대역을 배분하고, 각 무선국에 주파수를 할당하며 무선국이 사용하는 출력과 운영기간을 결정함
  - 방송국 면허 발급과 관련된 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허가 거부 청원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3. 허가절차

- 한국은 허가 접수를 한 이후에 주파수를 지정하는 데 비해, 일본과 미국은 주파수를 먼저 확보하고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해 면허신청을 받거나 주파수 경매 절차를 진행함. 특히, 미국은 1999년 이후 상업방송에 대해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은 상시로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일본과 미국은 일정기간을 정해 공지한 후 신청을 받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신청사업자에 관한 정보, 사업계획 관련 정보, 시설 및 장비 관련 정보로 구분되며 국가 간 큰 차이는 없음

#### 4. 재허가 및 정기검사

- 한국은 방송법 제17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파법 제15조에 의해 재허가를 간이한 면허절차로 진행 가능함
  - 미국은 해당 방송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특정 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는 재허가 거부 청원제도를 두고 있음
- 일본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한국은 3년이나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미국은 3년이던 지상파 방송의 유효기간을 1981년 텔레비전은 5년, 라디오는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다시 1996년 매체에 관계없이 8년으로 변경하였음
- 한국의 재허가는 신규 허가의 심사기준 이외에 허가기간의 성과, 즉 방송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심사함. 일본은 간이한 절차로 재허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면, 신규 허가와의 큰 차이가 없음
  - 미국은 사업자가 심각하게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남용한 사실이 없는 한 재허가를 보장함. 단, FCC의 9가지 공익조항에 대한 면허 갱신 거부 청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 정기검사는 실제 설비가 허가사항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와 설비의 기계적 특성을 점검하는 성능검사로 구분되며, 각 지역의 전파관리소에서 검사를 수행함

- 미국은 FCC의 Enforcement Bureau가 검사권한을 가지며, 민원을 비롯한 문제 발생 시 시행하는 선택적 방송국 검사 프로그램(Alternative Broadcast Inspection Program, ABIP)과 방송국의 자체 검사 기준인 자가 검사 프로그램(Self Inspection Program, SIP)이 있음.

## 1. 방송사업 허가과 방송국 허가의 구분

- 현행 지상파 방송사업은 사업에 대한 허가과 무선국 설비에 대한 허가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기존의 제작·편성·송출이 일원화된 수직적 통합 체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치 않았으며, 무선국 개설허가가 곧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과 의미하였음
-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가 실효성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며, 방송사업의 재허가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같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재허가 기간의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이 경우 방송사업의 재허가와 방송국의 정기검사는 시기적으로도 별개로 진행되게 됨. 더욱이 향후 제작·분배·전송 분야 사업자의 분화와 다각화, 멀티플렉스 방송의 등장 등으로 방송사업자와 방송국 설비의 소유자가 분리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면허와 시설면허의 법제도적 구분과 정비가 필요함. 곧, 방송사업의 사업면허는 방송법에서 방송의 공익적 기여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사하며, 방송국의 시설면허는 전파법에서 무선국으로서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 2.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

- 현재 3년을 주기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들이 검사 시기 직전에 무선국 설비에 대한 정비와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전파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미국은 방송국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정기검사 제도가 없으며, 7개 항목(아래 표 참조)에 대한 불시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2008년 현재 방송국이 2만 7천여 곳으로 검사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불시 검사 항목 >

- ① 비상경보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에 운영과 작동에 관한 항목
- ② 안테나의 높이, 위치, 관리 등에 대한 항목
- ③ 송신기의 출력의 크기
- ④ 할당된 주파수대의 사용여부
- ⑤ Aural modulation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⑥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⑦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

- 국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중계국에 대해 무선국 불시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전파법 제24조 제5항에 임시검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에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국 설비에 대해 검사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불시에 실시하는 검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사항목을 축소하여 실시하는 방안, 그 해 검사 대상 방송국의 일정 비율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 '부적합'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방송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 대상, 검사 항목, 시기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재허가 제도와 연계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대해 일정 기간 결과 후 실시하는 방안이나 검사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파관리를 유도함

### 3. 재허가 기간의 연장

-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국 개설허가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외국의 경우나 국내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 측면, 방송사업의 연속성 보장 등에서 지상파 방송국 허가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됨
  - OECD 국가들의 방송국 허가기간을 살펴보면, 미국 8년, 일본 5년, 영국 10년, 프랑스 10년 등 대부분 5년 내지 10년임
  - 국내 IPTV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국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최초 허가는 3년으로 하고 재허가의 경우 필요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도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자에 따라 재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4. 재허가 과정의 시청자 의견 제시

- 방송법 제10조 제2항은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시청자 의견 접수 건수가 많지 않아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함

- 미국의 경우 지상파 TV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면허갱신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할 권리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방송지역의 주민이나 단체가 방송국의 면허갱신 신청에 대해 거부를 청원하거나 비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청원제도는 지역 방송국 중심이며 물리적으로 전수검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의 청원제도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화, 시민 참여의식의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재허가 과정에 대한 시청자 참여의 확대는 필요함. 시청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청자의 의견 반영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재허가 제도의 유연화

- 허가 유효기간의 다변화
  -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1년~7년으로 다변화하는 방안 고려
  -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하도록 하였음
  - 허가 유효기간 다변화는 사업자의 심사참여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재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
- 심사기준의 매체별 차별 적용
  - 현행 재허가는 방송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어, 방송의 특성에 따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겠음
  - 중앙과 지역, 공영과 민영,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등 방송의 특성에 따라 심사 항목이나 배점 등에 차별화된 심사기준 마련

## I. 서론

방송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 다른 매체보다도 엄격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방송의 강력한 확산력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공적 매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은 항상 공익성, 공공성의 요구를 받아왔고 그것을 실현을 도모해왔다.

방송에 대한 규제의 핵심적 근거는 무선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논거들이 제시된다. 첫 번째는 전파는 공공의 소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파를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공을 대신 하는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한다는 이론이다.

공공에 의해 특별히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전파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파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광범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공정성 등의 요구도 인정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전파의 국가독점사상에 기초하여 방송을 공영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미 민영 상업방송 시스템이 정착한 미국에서도 이러한 논거가 종래 방송사업의 규제를 위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예컨대, 미국 통신법상의 중요한 방송 규제기준인 ‘공공의 이익, 편익 또는 필요 (public interest, convenience or necessity)’라는 이른바 ‘공익기준(public interest standard)’은 바로 이러한 전파공물론 또는 공공소유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무선전파가 자원으로써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방송으로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파는 유한하고 희소하며, 사용가능한 주파수보다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는 유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국민의 ‘수탁자(trustee)’로서 방송의 다양성, 방송의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무선전파를 이용한다는 점 이외에 방송의 규제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방송은 영상이나 음성을 이용하는 호소력이 높은 매체이다. 또한, 가정에 직접 전달되어 수신자의 적극적 노력 없이도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 더욱이 방송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즉각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증폭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다양성 확보, 공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규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즉 콘텐츠에 관한 규제(contents regulation)와 방송사업 자체에 대한 진입과 유지에 관한 규제(business regulation)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앞서 살펴본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관계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또한, 공익 내지 공공성의 추구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다. 방송법의 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다양한 규제들, 프로그램의 선정성 또는 정치적 편향성 등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방송 내용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에서 사업의 진입 및 유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선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국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무선국의 개설 및 유지에 관해서는 전파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허가와 검사제도로 한정하여 다룬다. 따라서, 방송법과 전파법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의 사업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고유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OECD 국가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허가기간이나 허가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허가기간이 스웨덴의 4년에서부터 뉴질랜드나 포르투갈의 20년까지 다양하다. 허가방식은 크게 심사제를 채택한 국가와 경매제를 채택한 국가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은 정치·경제·사회·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자적인 규제체제를 구축해 온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의 신규 허가는 방송 고유의 논리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까지 재허가 제도는 형식적 규제 장치로서의 실효성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재허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 시장의 융합과 성장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규제 제도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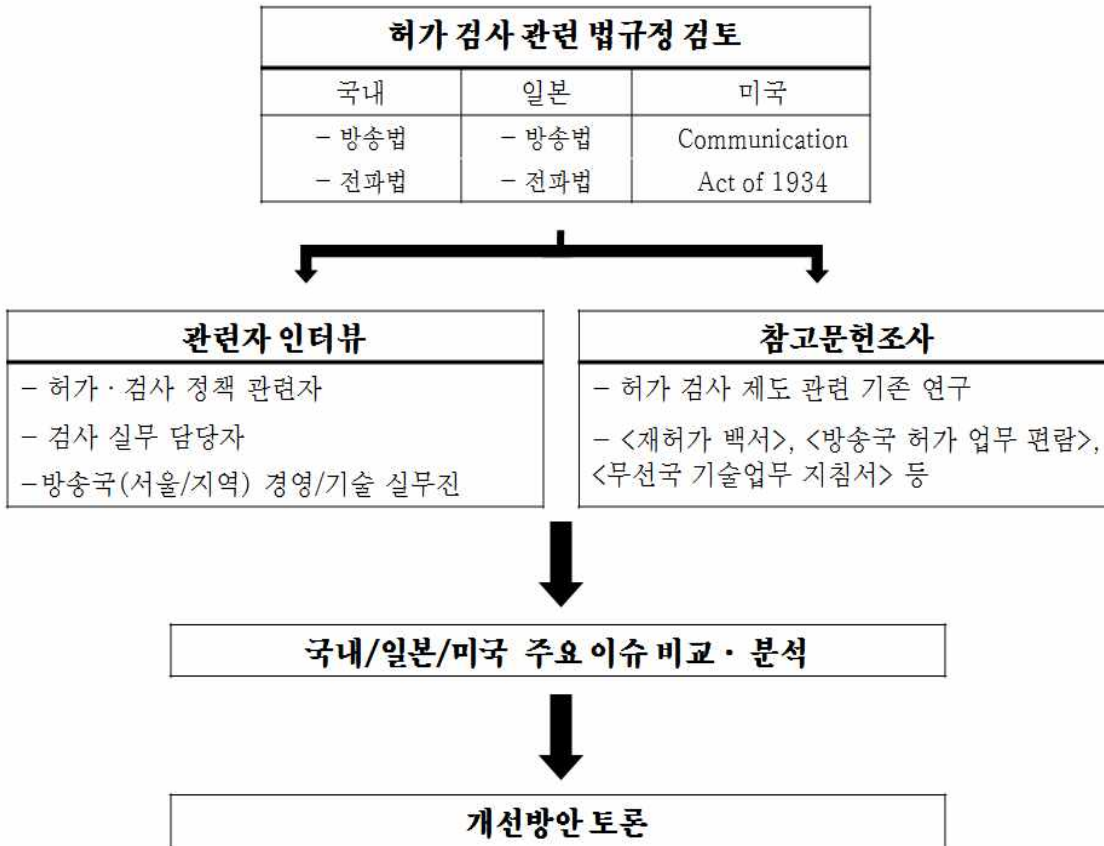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지상파 텔레비전 사업자의 허가제도와 검사제도에 대한 법 제도적 측면을 다룬다. 허가제도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한 신규허가와 기존 사업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재허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제도는 새 사업자의 무선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와 일정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기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허가제도는 지상파 방송의 사업면허와 관련되며, 검사제도는 무선국 설비에 대한 시설면허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신규 허가와 재허가, 지상파 방송을 위한 무선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와 정기검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의 규정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들을 분석할 것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활성화되어 효율적인 규율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의 지리적 환경 또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국내와 미국,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적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와 미국, 일본의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허가제도와 검사제도에 대한 최신의 법 조항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허가와 검사 담당자와 방송국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검사제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와 자료들을 참고할 것이다. 학문적 논의 뿐 아니라 ‘재허가 백서’와 같은 실무 자료들도 살펴보고, 직접 검사 현장도 참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방법 체계도



## II. 국내의 허가 및 검사제도

### 1. 허가 개관

#### 가. 허가의 기본구조

전통적으로 방송은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무선을 통하여 정보를 일방향으로 송신하는 것(1대N)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현행 방송법이 제정되기 이전, 구(舊) 방송법상 ‘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에서도 명확하다. 즉, 구 방송법은 방송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으로 규정(방송법 제2조 제1항)함과 동시에 제한된 공공자산인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지상파방송’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방송개념을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파의 희소성에 의거한 전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논리가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송사업은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자신의 방송국을 이용하여 정보를 발신하도록 하는 ‘하드·소프트 동일체 원칙’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방송의 개념은 무선방송망의 지상파방송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방송의 하드·소프트 동일체 원칙도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000년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개념을 유선방송망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망의 위성방송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즉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규정하였다(방송법 제2조 제1호). 이는 종래 무선의

방송망만을 인정하던 방송개념에서 무선과 유선의 방송망을 동시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행 방송법은 2004년 3월 기존 ‘방송망’ 중심의 방송 개념을 ‘방송내용물’ 중심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방송통신설비에 의하여 설비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

이와 아울러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분·정의(방송법 제2조 제2호)함과 동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대한제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등록 또는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로서 무선국의 관리·운영을 전제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진입조건으로 등록 또는 승인제를 채택함으로써 방송사업의 하드·소프트 동일체 원칙에의 변화를 허용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국 허가와 독립한 방송사업 허가의 허용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본적으로 방송국의 관리·운영을 전제로 하는 방송국 허가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상의 방송국에는 전파법의 규율을 받는 ‘무선국’ 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의 규율을 받는 ‘유선방송국’이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김창규, 2008, pp.40~42).

지상파 방송국 허가와 관련한 현행 법제 체계는 전파법과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파법이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sup>1)</sup>의 허가·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한다면,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 방송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고 있다. 즉, 현행 법제 상 방송국 허가는 방송사업자 규제와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에 대한 규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방송법에 기초하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허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방송사업의 근거만이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방송법이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듯 방송사업은 사업 활동 그 자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에 필요한 방송국(무선국) 개설을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당해 방송국(무선국)의 주파수 지정은 방송국 개설 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은 방송국(무선국)의 허가 와 동시에 일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의 규제 역시 방송사업 그 자체의 정지, 즉 ‘방송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전파 발사의 정지’, 즉 방송국의 운용정지 혹은 방송국의 허가 취소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창규, 2005, p.269).

## 나. 허가의 성격

방송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법상 허가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창규, 2008, pp.46~47).

첫째, 사업허가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영업행위 그 자체, 즉 당해 사업의 운영 그 자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통상 사업 자체에 허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은 사업허가의 심사기준 또는 사후 사업감독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고, 또한 국가의 행정조치도 사업 그 자체의 정

---

1) 일상적으로 쓰이는 ‘방송국’이라는 용어는 전파법상에 ‘무선국’의 하나로서 정의되어 있는 표현이다. 전파법 제2조 제9항에 따르면 ‘방송국’이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지 또는 사업허가의 취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시설허가이다. 이것은 일정한 시설의 설치 그 자체, 즉 그 시설의 설치 내지 개설을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약사법상의 약국개설, 의료법상의 병원개설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업무자체(의약품의 판매, 의료행위)의 경우는 별도의 법규범이 규율하는 바에 위임하고, 오로지 시설면에서의 규제를 행하는 것이다.

셋째, 사용허가이다. 이는 학문상의 특허에 해당한다. 이것은 사업활동 및 사인이 설치하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니라, 당해 사업에 필수적인 물적 조건의 이용 그 자체를 허가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당해 물적 조건의 자유로운 이용이 사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광업법, 어업법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업법의 경우 광업 그 자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존립기초인 광물의 채굴 및 그것을 취득유로운 이는 광업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상의 감독수단도 광업 그 자체의 취소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업권의 취소, 채굴의 제한 등의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방송국을 관리·운영하여야 사업운영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업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전파법의 방송국 개설조건이나 방송법의 사업자 소유기준 등을 갖추었다고 누구에게나 방송국의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주파수의 희소성론 내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론에 입각하여 방송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과 절차, 즉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과 시청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천받은 자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방송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의 방송국 개설허가라는 시설허가를 통하여 방송국 및 방송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김창규, 2008, p.46~47).

이처럼 방송국(무선국)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정행위로, 새롭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는 구별된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인 만큼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 과정에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 처벌을 받게 된다(경북체신청, 2005, p.13). 따라서 방송사업의 허가는 현행 실정법상 허가제의 유형 중에서 ‘시설허가(학문상의 허가)’와 ‘사용허가(학문상의 특허)’가 복합된 독특한 허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다.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방송사업의 허가, 즉 전파법상의 방송국 허가는 곧 방송주파수의 이용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방송주파수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데, 방송주파수 이용이 곧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방송주파수를 포함한 전파의 법적 성질은 종래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전파를 공유물 내지 공공용으로 인식하여 모든 사람의 공통재산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이 견해는 전파를 공기와 같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특정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유 내지 공공재산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면, 전파 또는 주파수의 소유권 및 배타적 지배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다른 하나는 원칙적으로 전파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無主物)’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즉,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파 또는 주파수를 허가제를 통하여 특정인의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파 또는 주파수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파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주된 이유는 오늘날 전파이용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무선국의 증대와 주파수대의 부족현상에 대처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에서 연유한다. 다시 말해서, 전파가 공적 자원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도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장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이진, 1998, pp.62~63). 즉 무선국 허가를 받아 전파를 이용하는 시설자의 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전파를 이용하는 시설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가, 전파배분에 있어서 입찰 내지 경매를 허용할 것인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전파법과 방송법은 방송주파수의 허가에 있어 유효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허가 거부, 방송주파수의 양도 및 대여의 미인정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상 소유권의 법리, 즉 소유권을 사용·처분할 수 있는 일체의 불가분적 권리로 이해할 때, 방송주파수의 이용권(방송국 운영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방석호, 1995, p.339).

따라서 방송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의 지위는 해변, 도로 등의 공공용물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방송국 허가에 따른 방송용 주파수의 이용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정한 배타적 이용·수익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상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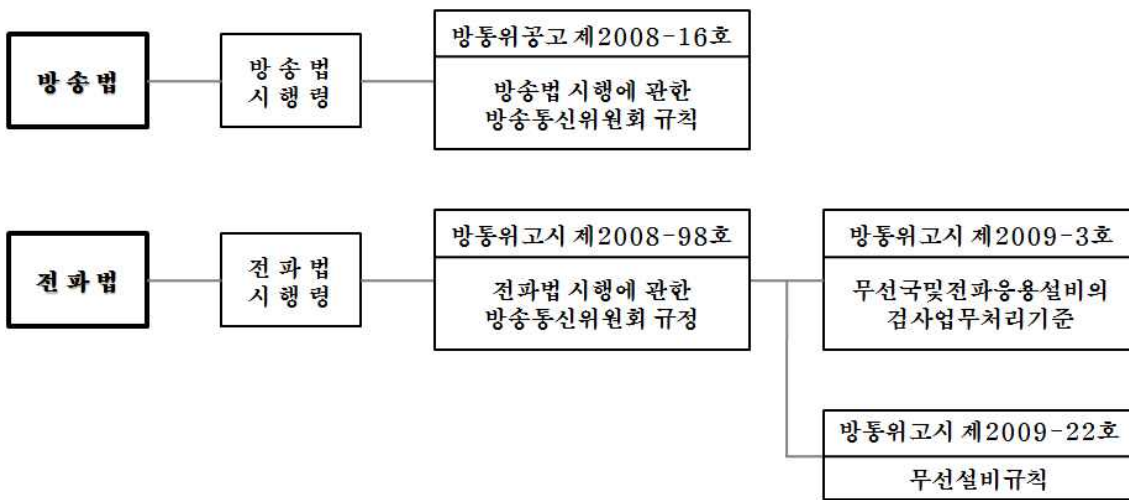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사업자는 특허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방송법상 방송발전기금의 납부, 전파법상 전파사용료의 납부 등이 그것이다(김창규, 2008, pp.49~50).

## 2. 관련 규정 및 절차

### 가. 관련 법령

지상파 방송국 허가·검사제도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법 및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법령 체계도



#### (1) 전파법 상 관련 규정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국 허가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에서 방송국 허가를 받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방송국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국 허가·승인·등록**  
(방송법 제9조)

-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 분류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전파법 시행령 제26조(업무의 분류)에서는 ‘지상파방송업무’를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무선국의 개설**  
(전파법 제19조)

-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선국의 분류**  
(전파법 시행령 제26조)

2. 방송업무

-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특히 전파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절(제34조~제37조)에서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에 관련한 법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방송국 개설허가의 심사사항(제34조), 방송국의 개설조건(제35조), 방송수신의 보호(제36조) 및 방송표준방식(제37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전파법에서는 하나의 무선국으로서 지상파 방송국 개설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송국 허가 절차, 재허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허가 유효기간 등이 전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 (2) 방송법 상 관련 규정

방송법 제9조 제1항(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을 통해 방송사업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전파법에 위임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법에서 방송국 개설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그러나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방송국 허가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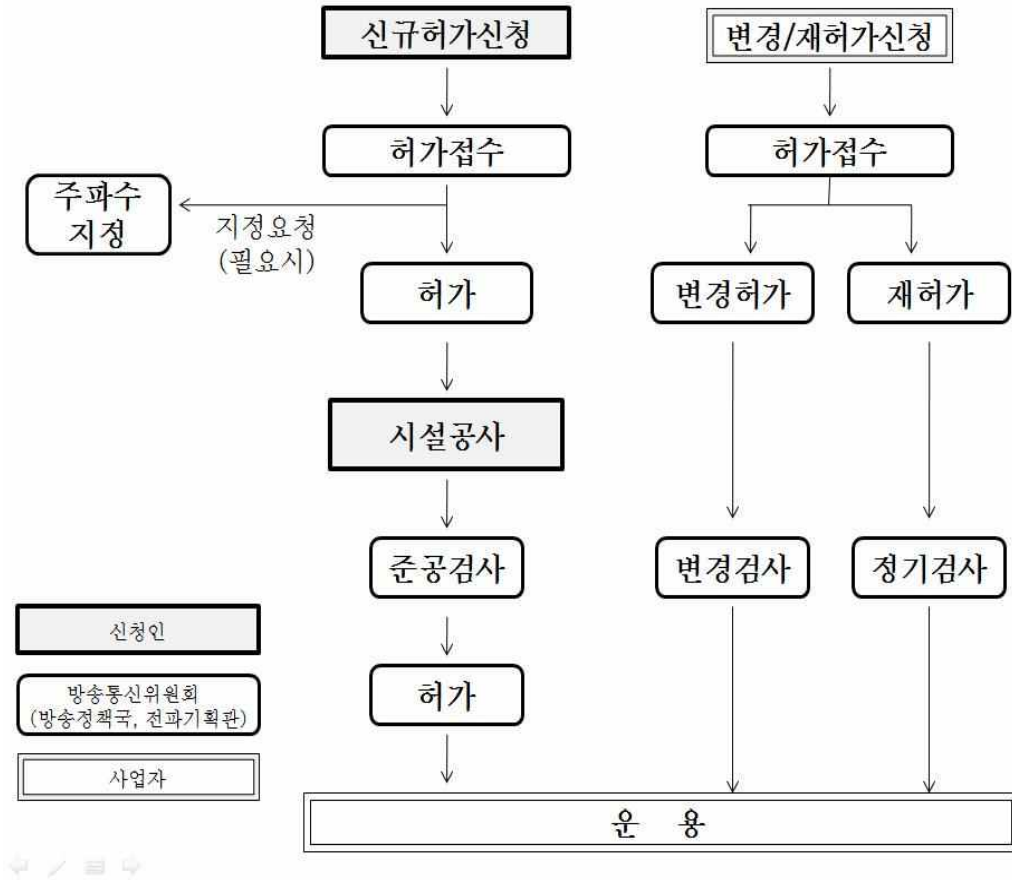
### 나. 허가 절차

지상파 방송국을 개설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 접수 → 주파수 지정 → 허가 → 시설공사 → 준공검사(변경검사) →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상파 방송국 허가는 크게 신규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로 구분된다. 먼저 신규허가는 방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방송시설을 갖추고 방송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다음으로 변경허가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사업양도, 방송 분야 혹은 구역의 변경 등 기 방송사업자가 사업 운영 및 내용에 관련된 변경을 할 때 받는 허가이다. 마지막으로 재허가는 전파법에 의해 명시된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방송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받게 되는 허가를 말한다.

본절에서는 먼저 신규허가를 중심으로 허가업무가 처리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변경허가, 재허가 등 허가 관련 다른 절차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해보도록 한다.

<그림 3> 지상파 방송국 허가업무 처리 흐름도



(1) 허가신청

방송 허가신청 시 전파법에 따른 방송국 신청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신청요령 및 법적 근거에 대해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파법에 따른 방송국 신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전파법 제21조 제1항).

## 무선국의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

- ①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 유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나.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 포함)
  - 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라.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마.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바. 방송발전 기여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설치계획서
  - 가.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 나.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다.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 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조 제3항·제4항

## 방송사업 등의 허가

(방송법시행령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조)

### <방송법시행령 제5조>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조>**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 (2) 허가심사

방송국 개설신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전파법시행령이 정하는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방송국의 개설조건(방송국의 설치가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전파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설치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기타 방송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전파법시행령이 규정한

사항(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의 여부,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주소 시설의 보유여부,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의 여부),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여부,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 공중선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의 여부)

\* 근거 : 전파법 제21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여기에서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으로, ‘무선설비규칙’을 말한다. 무선설비규칙에 대해서는 기술검사 항목 및 기준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심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심사 결과 그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방송국의 개설허가

(방송법 제34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무선국의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방송법 제35조)

-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送信空中線)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허가증의 기재사항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국 승인 시 방송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근거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심사기준·절차**  
(방송법 제10조)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준공검사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대상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허가 관련 기타 절차

### (1) 변경허가

방송사업자는 ①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②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③ 사업의 양도, ④ 방송분야의 변경, ⑤ 방송구역의 변경, ⑥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⑦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방송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구비서류로는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허가증 사본, 공사설계서 및 무선국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 허가내용(방송국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등 포함), 변경내용(변경사항 포함),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시험전파(발사기간, 발사내용 포함)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변경허가 또는 승인한 경우 허가증(승인증 혹은 등록증)을 신청 방송사업자에게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 변경허가·승인·등록

(방송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0조)

##### <방송법 제15조>

-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는 제9조 제1항(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 ②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법 제79조 제1항(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 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0조>

-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시행에 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별지 제36호의 서식과 같다.
- ⑧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또는 승인신청을 받아 허가 또는 승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증, 승인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 (2) 재허가

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는 그 근거를 방송법에 두고 실질적인 규정 및 절차는 전파법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허가

(방송법 제17조,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 ①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재허가)>

-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에서 명시해놓은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파법 제22조 제1항을 통해 무선국으로서 지상파 방송국 개설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를 재허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파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재허가 대상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경우 각 무선국에 대한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게끔 허가할 수 있다.

## 재허가 유효기간

(방송법 제16조, 전파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방송법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제22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①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허가나 재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이동국, 육상국 등의 무선국 이외의 방송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지상파는 여기에 포함)은 3년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재허가 시 심사항목은 크게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사업 및 내용에 대한 평가와 전파법에 의거한 시설 관련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방송법에 따른 심사항목>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9.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10.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11.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13.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전파법에 따른 심사항목>**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근거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재허가 심사내용**

(방송법 17조,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 10조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재허가)>**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 (3) 허가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1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제18조 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방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방송법 제18조>

-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소유제한)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 제1항(변경허가)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 ①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정기검사 규정 및 항목

#### 가. 관련 규정

##### (1) 유효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파 방송국 및 다른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상파 방송국 및 다른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무선국 유형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선박국(총톤수 40톤 미만)</li> <li>· 의무항공기국(회전익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제외)</li> <li>· 실험국, 실용화시험국</li> </ul>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선박국(총톤수 40톤 미만,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어선 제외))</li> <li>· 의무항공기국(회전익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소출력방송국 제외)</li> </ul>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항공국·고정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비상국·기상원조국·항공기지국·무선조정국·전파전문국·선박지구국·항공기국·무선항행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li> </ul>	5년

\* 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의 경우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음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은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정기검사**  
(전과법 제24조)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 제4항(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개설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전과법 시행령 제44조)

-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과 같다.
3.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선국 : 3년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 (2) 시기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정기검사의 시기**  
(전과법 시행령 제45조)

- ① 법 제24조 제4항(무선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3) 방법

정기검사는 크게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된다. 대조검사는 시설자, 설비, 설치장소, 종사자 배치 등에 대한 실제 현황이 허가·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검사이다. 성능검사는 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사로, 공중선전력, 주파수, 불요발사, 점유주파수대폭, 등가등방복사전력, 실효복사전력, 변조도 등을 측정한다.

<표 2> 정기검사의 구분

구 분		검 사 항 목
대조검사	실제 설비가 허가·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시설자,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종사자 배치
성능검사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사	공중선전력, 주파수, 불요발사, 점유주파수대폭, 등가등방복사전력, 실효복사전력, 변조도 등

현재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 정기검사는 각 지역별 전파관리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별 전파관리소장은 정기검사 대상 지상파 방송국 시설자에게 검사일 및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대조 및 성능검사 후 해당 방송국이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명칭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 요망)를 교부한다.

<표 3>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

명 칭	관 할 구 역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광주전파관리소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정기검사의 방법**  
(전파법 시행령 제45조)

- ②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성능검사: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불요발사)·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 ③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4조 제4항(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교부한다.
- ⑤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나. 검사 항목

<표 4> 대조검사 및 성능검사 항목

구 분	대 조 검 사	성 능 검 사
공통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li> <li>· 설치장소</li> <li>· 무선종사자</li> <li>· 기기형식·일련번호 및 전파형식</li> <li>· 주파수</li> <li>· 공중선</li> <li>· 전원설비</li> <li>· 안전시설</li> <li>· 보호장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신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허용편차</li> <li>- 점유주파수대폭</li> <li>- 불요발사의 허용치</li> <li>- 공중선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및 실효복사전력</li> <li>- 반송파 억압비</li> <li>- 변조도 및 주파수 변이</li> </ul> </li> <li>· 수신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차적인 전파발사</li> </ul> </li> <li>· 종합시험</li> </ul>
개별적용 (지상파 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제어 및 감시장치</li> <li>· 의사공중선</li> <li>· 예비장치</li> </ul>	아날로그 방송용 (총 3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주파수 특성</li> <li>· 영상송신장치의 하측파대 강도</li> <li>· 영상송신장치의 상측파대 강도</li> <li>· 영상송신장치의 동기신호 침투치의 변동</li> <li>· 영상신호의 페테스탈레벨 허용편차</li> <li>· 미분이득(DG)</li> <li>· 미분위상(DP)</li> <li>· 영상신호의 색신호의 진폭</li> <li>· 영상신호 색신호의 위상</li> <li>· 직선성 왜곡의 휘도신호 및 색신호 부반송파를 변조하는 신호의 지연시간차 등</li> </ul>
		디지털 방송용 (총 1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비트수</li> <li>· 영상신호의 형식</li> <li>·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 비트율</li> <li>· 영상 보조데이터의 비트율</li> <li>·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li> <li>· 음성신호의 표본당 비트수</li> <li>· 음성신호의 부호화 목표 비트율</li> <li>·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 구조</li> <li>· 대역외 발사강도</li> <li>· 침투전력대 평균전력비 등</li> </ul>

\* 자료 : 무선국 검사업무 처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3호)을 재구성

## 4. 국내 허가 및 검사제도의 이슈

### 가. 방송사업 허가와 방송국 허가의 분리

현행 방송국 허가제도가 사업면허를 규율한 방송법과 시설면허를 규율한 전파법의 복합 형식을 취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방송 허가제도를 방송 허가제도를 사업허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무선국으로서 시설허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김창규, 2008, p.50).

김창규(2008)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방송 허가제도에서 무선국 개설과 같은 기술적인 심사에 대한 것은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5> 국가별 방송 허가제도

구분	방송 허가 규정	근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자는 FCC에 재정적·기술적 자격, 무선국 소유, 무선국 설치부지 소유, 무선국 운영시간 및 운영목적 등 서면 제출</li> <li>·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에 부응하는 경우 방송허가를 부여하도록 규정</li> <li>· 재허가시에도 허가기간 중 해당 방송국이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에 부응한 점을 FCC가 인정해야 허가발급이 가능</li> </ul>	통신법 제307·308·309조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티플렉스사업자는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독립상업방송위원회)에게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계획안, 기술적 수단, 서비스시간표, 요금, 디지털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서류 제출</li> <li>· ITC는 이를 심사하여 영국 DTV 발전에 기여할지를 고려하여 허가 부여</li> <li>· 허가갱신의 경우 허가조건 준수여부, 보충 기술계획안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함</li> </ul>	방송법 제7·8조, 제58조 제7항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A(시청각최고위원회)는 허가취득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규칙으로서 광고, 쇼핑, 협찬, 프랑스제작물의 쿼터, 방영권 유효기간프랑스화제작물 상영규칙 등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li> <li>· TF1의 민영화규정 지생요강서에 편성의 일반원칙, 보도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다원성, 자사제작물 비율준수, 광고방송의 원칙, 영화 및 방송영상물에 대한 일반원칙 등 명시</li> </ul>	방송법 제27조, 제62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국면허 심사 시 ① 공사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 입각하여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 ③ 업무 유지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있을 것, ④ 방송국 개설기준에 합치할 것(방송사업의 공익적 특성) 등의 사항 검토</li> </ul>	전파법 제7조 제2항

\* 자료 : 김창규(2008), pp.51~52를 재구성

그러나 현재 국내 허가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허가 및 무선국 허가 형태로 중층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허가제도의 본래 목적인 방송의 공익적 의무에 대한 규제와 그 법제적 원리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허가절차 상의 중첩적인 측면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시 공익적 의무사항의 부여와 그 준수여부에 대한 규제감독 측면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으므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 나. 타 평가 및 검사 간 평가항목 중복

### (1) 준공검사 - 재허가 - 정기검사

준공검사는 신규허가 후 전파관리소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국이 허가 사항 및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준공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검사 시 평가 항목은 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기술기준(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한지, ②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전파법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금치산자·한정치산자, 죄인 등은 부적합) 여부이다.

재허가는 크게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로, 방송평가, 공정성 및 공익성,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경영, 기술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시 기술심사항목

(2009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1. 무선국 개설 일반 조건
  - 주파수 지정 가능성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 전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무선설비규칙)
  -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적합성 → 전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자격·정원 배치 기준)
2. 방송국 개설 일반조건: 혼신발생 여부, 연주소 시설보유 여부, 시설설치계획의 합리성 등
3. 텔레비전 방송국 개설조건: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 적합성, 송신공중선 높이 적합성 등
4. 무선국 개설자 적격성



**재허가 등**  
(방송법 제17조)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둘째는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시행령 제38조(재허가)에 의거 전파관리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상파 방송보조국에 대한 재허가이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무선설비규칙), 제71(무선종사자의 배치)조에 따른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2009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
  - 운영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 지상파 방송보조국에 대하여는 본 재허가 계획과 별개로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전파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전파법 제22조>

-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 ① 법 제22조제1항(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정기검사는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 전파관리소에 의해 실시되며 크게 성능검사와 대조검사로 이루어진다.

**정기검사 항목**  
(전과법 시행령 제45조)

②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성능검사: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불요발사)·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무선종사자의 배치**  
(전과법 제71조)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준공검사의 평가 항목들과 재허가 시 평가 항목들에는 중복되는 부분들(무선설비규칙,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준공검사 평가항목 = 재허가 평가항목’인 것은 아니다. 재허가가 대체로 더 큰 범위의 평가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항목 중복은 타당한 것이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규 허가 이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재허가 평가 항목과 정기검사 평가 항목에 역시 중복되는 부분들(무선설비규칙,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이 존재한다.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 재허가와 정기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다르고(각각 방통위, 전파관리소), 재허가 시 기술에 대한 배점

은 1,000점 만점 중 30점에 불과하다고 해도 재허가와 정기검사에서 중복되는 평가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은 틀림없다.

셋째, 재허가와 정기검사는 엄연히 다르다. 준공검사의 경우 재허가 및 정기검사와 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검사항목들이 존재하나 검사의 성격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

## (2) 방송평가 -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하는데, 이를 ‘방송평가’라 한다.

###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법 제31조)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시 방송평가 배점은 1,000점 만점에 500점으로, 무려 50%에 달한다. 현재 재허가는 3년에 1회, 방송평가는 1년에 1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허가의 방송평가 항목은 최근 2년간 방송평가 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방송평가는 크게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으로 이루어진다. 방송평가가 대체로 계량화되어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방송평가단이 평가를 시행한다면, 재허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계획을 토대로 재허가대상이 심사위원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 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비계량적으로 심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재허가의 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방송평가 및 재허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항목 개선이 요구된다.

**<표 6> 방송평가와 재허가의 중복 평가항목**

재 허 가	방 송 평 가	비 고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中 - 시정명령 시 1회당 10점 감점	○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 및 불이행사례 - 시정명령 1회당 5점 감점	둘 다 계량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中 - 편성실적의 적정성(10점)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中 - 편성시간량에 따른 5등급 평가(10점)	재허가는 비계량
○ 재무구조 및 계획의 적정성(45점) 中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안정성 및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등을 참고하여 평가)	○ 재무의 건전성(150점) 中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 이익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 평가	재허가는 비계량
○ 분야별 투자실적 및 계획(25점) 中 -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 및 세부내역	○ 인적자원 개발 투자 中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10점) - 1인당 교육비(10점)	재허가는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30점) -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이행 실적 및 처리의 적정성 - 시청자 불만처리 현황 분석 및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中 -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여부(15점) -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의 효율성 정도 (7.5점)	재허가는 비계량

※ 자료 : 2008 방송평가척도 세부기준, 2008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재구성

※ 방송평가 : 영역별 300점씩 총 900점 만점(채널별 평가), 재허가 : 1,000점 만점(사업자별 평가)

### 다. 디지털 시대의 부응

아날로그 시대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제도를 디지털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의 주파수대로 하나의 채널을 전송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여러 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디지털시대로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다채널을 서비스하는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제작사업자와 분배사업자, 전송사업자 등 사업자가 다각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무선국을 소유한 방송사업자 중심의 허가제도로는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다각적 방송사업자 허가 개념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창규, 2008, p.55). 따라서 이러한 방송시스템의 진화에 따른 허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Ⅲ. 주요 국가 허가 및 검사제도

#### 1. 일본의 허가 및 검사제도

##### 가. 허가 관련 규정

지상파 방송국 개설과 관련한 일본의 법제 체계는 「전파법」과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이 무선설비로서의 방송국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면, 「방송법」은 「전파법」에 따라 개설된 방송국이 행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방송협회 및 방송대학학원의 설립·운영 등 방송의 내용과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국 개설과 관련한 일본의 법제는 설비로서의 방송국 개설과 그 운영 형태로서의 방송사업 허가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1) 전파법 상 관련 규정

일본의 전파법에서는 무선국 면허, 무선설비 조건, 무선국 감독 등 통신·방송 관련 하드웨어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방송국개설의근본적기준”, “무선국허가절차규칙”, “무선설비규칙”, “방송국과관련한표현의자유향유기준” 등의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파법에 의거하여 일본에서는 방송전파를 발사하는 방송국을 규제하고 있는데, 방송의 실시에는 전파 사용이 불가피하며 전파의 사용은 혼신 등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질서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전파법 상 방송국 개설 관련 규정은 일반 무선국 개설 관련 규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전파법이 방송국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일반 무선국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개설에 대한 절차가 대부분의 일반 무선국의 그것과 유사·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국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방송법 상 관련 규정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의 면허를 받은 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 업무 운영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일본의 방송법은 첫째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되어 이의 효용을 가져오는 것을 보장할 것, 둘째 방송의 불편부당, 진실 및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것, 셋째 방송종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세 원칙에 입각해 방송을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하고 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프로그램편집준칙의 준수, 프로그램 간(교양, 교육, 보도, 오락프로그램) 조화의 유지, 방송프로그램 심의회의 설치 등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집에 관해 필요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김영덕, 2005, p.85~86).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제정 목적, 방송의 정의, 프로그램 기준, 일본방송협회(NHK) 규정, 위성방송 관련 규정 등이다. 이러한 방송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방송보급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는 방송사 자체의 프로그램 심의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 기준 제정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구성된다(김영덕, 2005, p.87).

일본 방송법에서 방송국 개설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그러나 방송의 계획적인 보급 및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법에 입각해 “방송보급기본계획”을 총무대신이 정하고 이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송보급기본계획에는 방송국 설치에 관한 지침, 방송의 구분, 방송대상 지역, 방송대상지역별 방송계 수의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입각해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채널플랜)에서는 방송용 무선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파수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파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 (3) 방송사업자 면허 관련 규정

일본 법제에 따르면 방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면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선국 개설에 대한 면허로 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방송사업에 대한 면허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방송국 허가 시에 이미 방송 사업 전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굳이 시설면허인지 사업면허인지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나. 허가 절차

지상파 방송국 개설 및 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총무대신으로부터 방송국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의 전제로 방송용 주파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일반무선국 개설절차인 ‘면허신청 → 심사 → 예비면허 부여 → 공사 → 낙성검사 → 본 면허 부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주파수 확보 단계

방송국은 “방송보급기본계획”에 입각해 설치되는데, 우선 방송보급의 관점에서 적합하고 방송용 주파수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총무성은 전파감리심의회에 대해 “방송보급기본계획” 및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의 변경을 자문한다. 전파감리심의회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를 총무성에 답신한다.

통상 무선국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무선통신규칙에 정해진 국제주파수분배표를 근거로 이용 가능한 대역을 결정하여 일본 내 분배를 하고, 이러한 주파수는 전파법



제26조에 따른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라 총무대신에 의해 공시가 된다. 방송용 주파수도 이러한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라 그 대략적인 주파수 범위가 결정되어지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 등은 주파수할당계획에서 좀 더 세분화된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 따라 확정이 되며, 이는 총무대신이 공표한다.

### 주파수할당계획

(전파법 제26조)

- ① 총무대신은 면허 신청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표(이하 “주파수할당계획”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공중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변경 경우도 동일하다.
- ② 주파수할당계획에는 할당 받을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방송을 하는 무선국(전기통신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련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1. 무선국이 실시하는 무선통신 형태

### 신청심사

(전파법 제7조)

- ③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은 방송법 제2조의2 제1항의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방송계 수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파수할당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할당 가능한 주파수 중 방송을 하는 무선국과 관계되는 것(다음 항에서 “방송용 할당 가능 주파수”라고 한다)의 범위 내에서 혼신의 방지 기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감안해 정한다.

## (2) 면허신청

방송용주파수가 확보되면 면허신청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면허신청 기간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면허신청 기간

일반적인 무선국의 경우는 상시로 그 면허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신사업이나 방송국 등의 경우는 이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이 희소하고,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인 관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시한 후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 ② 면허신청 사항

방송국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6조에 의거한 사항들이 포함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 무선국과 동일한 항목 외에도, ① 무선설비의 공사비 및 무선국 운용비의 지불방법, ②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전망, ③ 방송사항, ④ 방송구역 등 일반 무선국의 그것과는 다른 별도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표 7> 일반 무선국 및 방송국의 면허신청사항 비교

구 분	일반 무선국	방송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개설이 필요한 이유</li> <li>- 무선설비의 설치장소</li> <li>- 운용 개시 예정일</li> <li>- 타 무선국 면허인 또는 등록인 간의 혼신 및 그 밖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li> </ul>	
개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li> <li>- 전파형식 및 희망하는 주파수의 범위 및 공중선전력</li> <li>- 희망하는 운용허용시간</li> <li>- 무선설비의 공사설계 및 공사완료의 예정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설비의 공사비 및 무선국 운용비의 지불 방법</li> <li>-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견적</li> <li>- 방송사항</li> <li>- 방송구역</li> </ul>

**면허신청**  
(전파법 제6조)

- ②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일반 무선국 면허 신청)에 관계없이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항 제1호(목적), 제2호(개설이유) 및 제4호(설치장소) 내지 제8호(운용 개시 예정일)에서 열거하는 사항
  2. 무선설비의 공사비 및 무선국 운용비의 지불방법
  3.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견적
  4. 방송사항
  5. 방송구역

### (3) 면허심사

접수된 방송국 면허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은 전파법 제7조(신청심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설계가 전파법 제3장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둘째, 총무대신이 정하는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 근거해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해당업무를 유지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넷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에의한표현의자유항유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외에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국개설의근본적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 ① 결격 사유 심사

면허 신청의 심사에 앞서 신청자가 전파법 제5조(결격사유)에 따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부터 심사하게 된다. 방송국의 경우 방송법 위반자에 대한 무선국 개설을 금지하는 반사회성 배제와 같은 통상의 결격사유 외에도, 특히 일반 무선국 면허 결격 사유보다 외국성 배제 사유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외국 국적자 이외에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5조제4항에서는 통상 외국인의 지분이 20%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보아 무선국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성 배제는 통상 전파자원의 희소성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전파자원, 특히 방송 전파 자원은 희소자원이므로 국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격사유**  
(전파법 제5조)

-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면허를 주지 않는다.
1.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1 이상 혹은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
- ④ 공중선으로부터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방송)을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면허를 주지 않는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인 경우 또는 그러한 자의 의결권이 5분의 1 이상인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점유하는 의결권의 비율과 그러한 자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의결권의 비율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이 그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것(전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
    - 나. 가목의 자의 의해 직접 점유하는 의결권의 비율이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임원이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②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

방송국 면허 심사 시 일반적인 무선국의 “주파수할당계획”이 아닌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 따라 주파수 할당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은 방송을 하는 무선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및 그 주파수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전파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은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방송계수의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파수할당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할당 가능한 주파수 중 방송을 하는 무선국과 관계되는 것(방송용 할당 가능 주파수)의 범위 내에서 혼신의 방지 및 기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감안해 정한다(전파법 제7조 제3항).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에는 방송별, 지역별 등의 분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 방송구역, 채널 등이 정해져 있고, 총무성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 신청심사 (전파법 제7조)

- ② 총무대신은 전조제2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신청이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2. 총무대신이 정하는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방송을 하는 무선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및 그 주파수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거해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한 것
- ③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은 방송법 제2조의2 제1항의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放送系數의 目標(다음 항에서 “放送系數의 目標”라고 한다)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파수할당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할당 가능한 주파수 중 방송을 하는 무선국과 관계되는 것(다음 항에서 “방송용 할당 가능 주파수”라고 한다.)의 범위 내에서 혼신의 방지 기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감안해 정한다.

### ③ 표현의자유향유기준판단

방송국 개설 신청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자유향유기준판단”은 전과법 제7조 제2항 제4호(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에 합치하는 것)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통상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원칙’으로 불리고 있다. 과거 “방송보급기본계획”에 따른 지침의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총무성령으로 격상되었다.

방송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소수에 의한 방송 지배를 방지하고 방송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국 면허 신청 시 신청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1인의 방송사업자가 개설하여 경영할 수 있는 방송국은 단 하나의 방송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방송국을 직접 개설한 자는 아니지만 다른 방송사업자를 지배하는 자도 타 방송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를 지배하는 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도 방송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청심사 (전과법 제7조)

- ② 총무대신은 전조제2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신청이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4.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대해 확보하는 것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향유되어 지도록 하기 위해, 신청자와 관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합치하는 것.

### ④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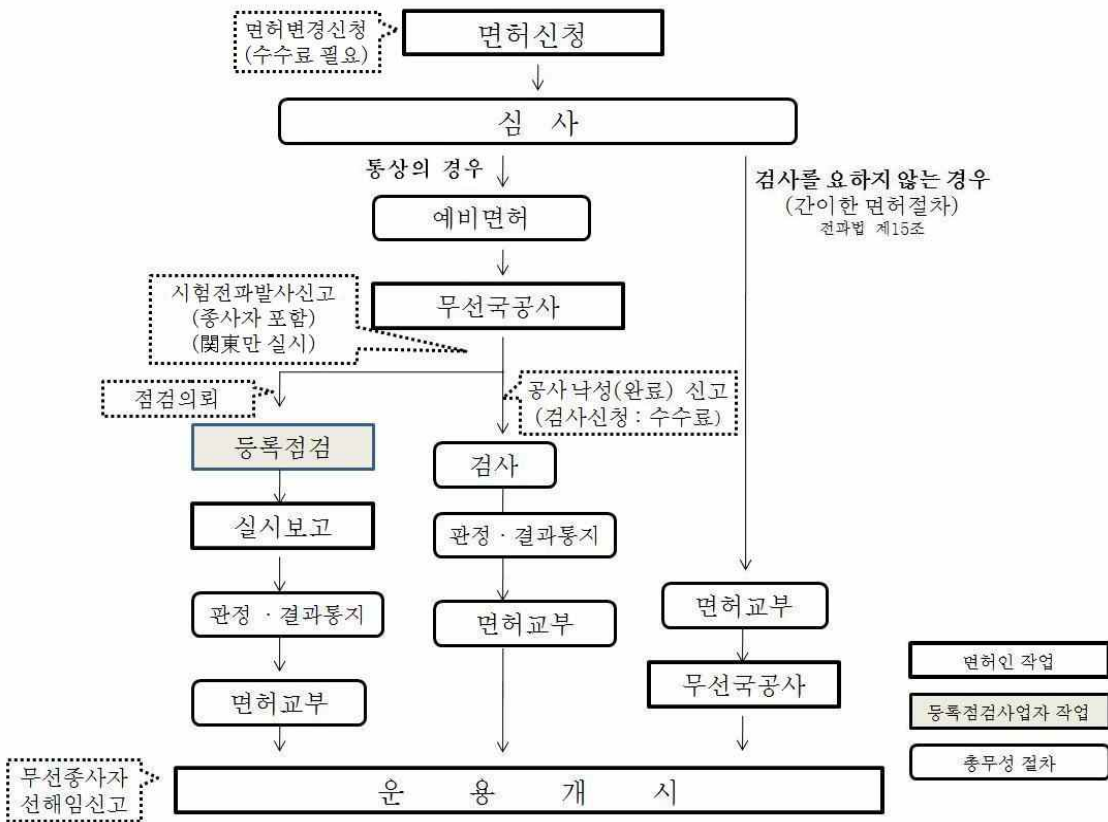
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한 조건 중에 방송국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포함된다. 방송국개설의 근본적 기준은 방송국 종류 별로 그 방송의 주파수 범위,

내용, 면허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방송국 설치 장소, 기존 방송국에 대한 방해배제와 주파수 부족 시 판단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본 근본적 기준이 방송국 면허 부여 여부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 (4) 면허 일반절차

면허 신청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추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질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파수 확보 등 추상적인 심사 절차는 전파감리심의회가 주체가 되어 수행한다. 총무성은 추상적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면허 절차의 행정 행위를 수행한다.

<그림 4> 개설신청에서 운용개시까지의 흐름



한편, 복수의 사업자가 방송국 개설을 위해 신청을 했을 경우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제11조는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제10조에 적합한 정도에서 보아 가장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자를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복수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하나로 하는 소위 ‘단일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유력자가 조정자 역할로 개입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보아 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일본방송연맹편, 1999, pp.36~40, 2005, 김영덕에서 재인용).

### (5) 예비면허 부여

총무대신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파감리심의회 의 자문을 거쳐 전파법 제8조 제1항에 입각해 ① 공사완료의 기한, ② 전파형식 및 주파수, ③ 호출부호, 호출명칭,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식별신호, ④ 공중선전력, ⑤ 운용허용시간을 지정하고 예비면허를 부여한다.

#### 예비면허 (전파법 제8조)

- ① 총무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정해 무선국의 예비면허를 준다.
1. 공사완료의 기한
  2. 전파형식 및 주파수
  3. 호출부호(표식부호를 포함한다), 호출명칭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식별신호
  4. 공중선전력
  5. 운용허용시간
- ② 총무대신은 예비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 제1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6) 본 면허 부여

예비면허를 받은 자는 방송국 건설에 착수한다. 공사가 완성되면 총무대신에게 낙성을 신고하고 낙성 후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본 면허가 교부되고 방송국 운용을 개시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방송국은 통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무선국 면허 유효기간을 부여 받게 된다.

총무대신은 면허 교부 시 면허장을 교부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면허 연월일 및 면허 번호
2. 무선국 목적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운용허용시간
5. 방송사항
6. 방송구역

## 다. 방송국 관련 기타 절차

### (1) 면허의 취소

총무대신은 면허인이 제5조 제1항(외국인 등의 결격사유), 제2항(실험무선국 등) 및 제4항(외국인 임원 취임 금지)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전파법 제75조). 또한 총무대신은 면허인이 전파법, 방송법 또는 이들 법률에 입각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무선국 운용 정지를 명령하거나 기간을 정해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 전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밖에 면허인이 다음의 각항에 해당될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무선국 운용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정지했을 때
- 부정한 수단에 의해 무선국의 면허 또는 제17조(면허인은 통신상대방, 통신사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

는 때는 미리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인이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하다)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을 행하게 했을 때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에 따르지 않을 때 등

초단파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을 때는 그 방송의 전파에 중첩하여 다중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도 그 효력을 잃는다.

**결격사유**  
(전파법 제5조)

② 총무대신은 예비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 제1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재면허**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방송국에 대해 재면허를 할 수 있다. 재면허와 신규 면허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개설 절차를 전파법 제15조(간이면허절차)에 따른 간이한 면허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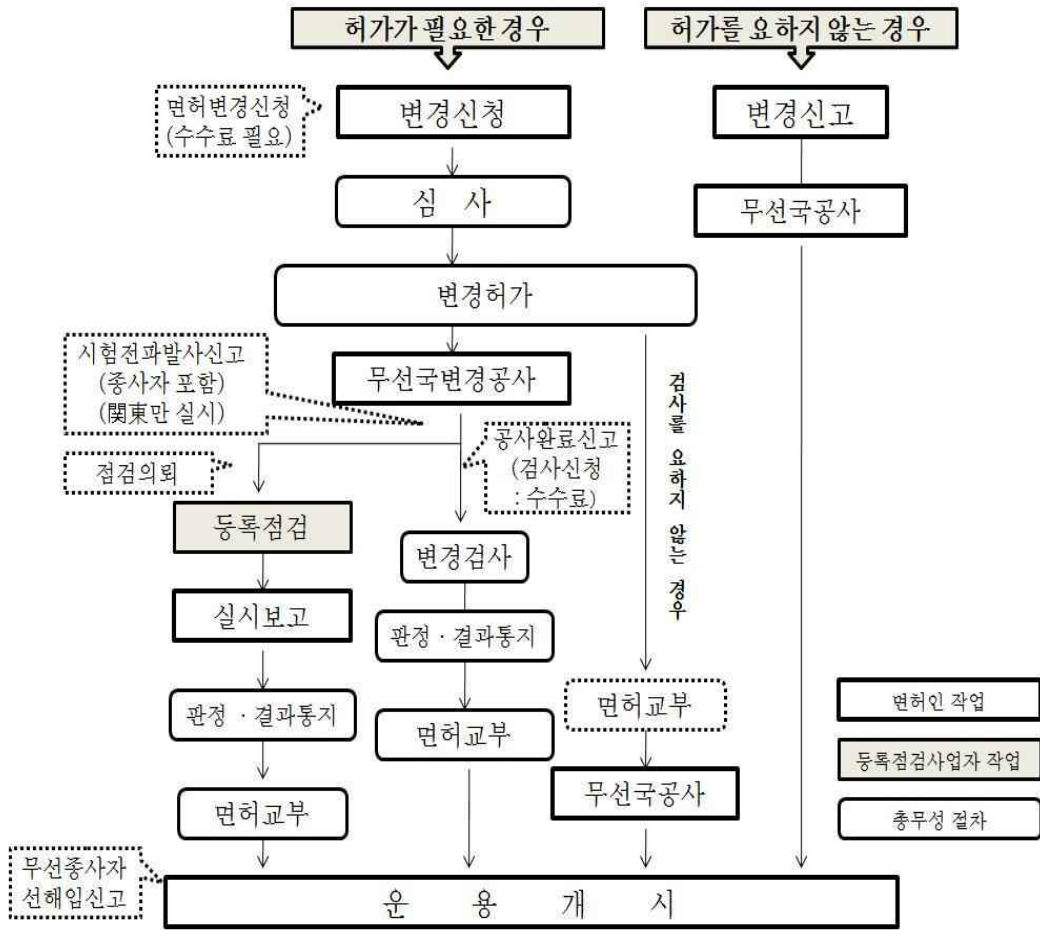
**간이면허절차**  
(전파법 제15조)

제13조제1항 단서의 재면허 및 적합표시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무선국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제6조(면허신청) 및 제8조(예비면허) 내지 제12조(면허교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간이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3) 방송국 변경 절차**

면허유효기간 중 통신사항, 무선설비 설치 장소, 무선설비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무성에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5> 무선국 변경절차



## 2. 미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

### 가. 허가 관련 법규정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권한은 Communication Act of 1934(이하 1934 Act)에 의하여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갖고 있으며, FCC는 방송에 관한 허가 및 재허가 심사를 1934 Act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1934 Act 301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방당국에 모든 무선 통신 전송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였고, 부여된 면허를 소유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미국의 관할권 안에서 무선국을 활용한 무선 통신 또는 신호를 위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전파 매체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의 전파 소유에 대해 불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34 Act에서 정부는 전파의 원활한 통제 및 면허를 발급 받은 사업자가 FCC에서 규정한 면허 허가기간 / 허가조건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독립규제기관인 FCC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FCC가 갖는 방송사업 허가과 면허 취소의 기준은 모두 1934 Act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면허 취소에 관하여서는 공평원칙(Fairness Doctrine-1941)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34 Act 315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통해서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반의 민감한 이슈나 주요 사항에 관한 사업자의 입장을 표현할 경우에는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 사업자가 갖는 '방송의 파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하여야 하며, 방송을 사적 소유물로 여겨 사업자의 사적 관점을 대중에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재허가 관련하여 1996 Act 이전까지 재허가 기간은 3년이였다.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은 FCC는 매년 모든 방송 허가자의 1/3을 심사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의회에서 텔레비전은 5년, 라디오는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6년에 이르러서는 1996년 통신법에 의거 매체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방송의 재허가 심사 기간을 8년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방송허가 기간이 증가하게 된 것은 잦은 심사로 말미암아 방송사가 정상적인 방송 운영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방송사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정창신, 2006, p.24).

## (1) Communication Act of 1934 관련 규정 및 면허 허가제도

1934 Act에서는 FCC의 구체적인 규제 업무는 크게 라디오 방송국 구분, 방송국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발급 받은 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성격 규정, 면허를 발급 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방송지역 등급 구분 등 9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FCC가 방송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방송하는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FCC의 규제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FCC 규제업무	① 라디오 방송국 구분 ② 방송국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성격 규정 ③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④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방송지역 등급 구분 ⑤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간의 전파 간섭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⑥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자격 조건 ⑦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준비시설 점검, 방송사 시설규제 조항 준수 여부,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운영 준수 여부 ⑧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호출부호 배정 ⑨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준수해야 되는 규제 및 통제 규칙 제정

\* 출처: 강종근, 2005, p.6

또한 1934 Act에 따르면 FCC는 공익과 편의성, 필요성에 따라서 무선국을 분류하고 면허 무선국의 분류별, 분류 내 각 무선국에 부여되는 서비스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무선국 분류별로 주파수 대역을 배분하고, 각 무선국에 주파수를 할당하며 무선국이 사용하는 출력과 운영기간을 결정한다. 또한 각 방송 무선국의 분류별, 개별 무선국의 위치를 결정하고, 각 무선국 및 그 장치의 외부 효과와 방송 송출에 따른 간섭유무, 선명도에 관하여 사용되는 설비 종류를 규제하고 있으며, 법

규정을 준수하고, 무선국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FC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하며, 서비스 지역이나 구역을 설정하는 권한을 FCC가 갖고 있다. 이처럼 1934 Act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면허 허가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방송 면허 허가 제도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CC로 하여금 허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1934 Act에서는 유무선 사업자들이 미국 내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방송의 규제는 방송이 갖는 공익성과 필요성, 편리성, 전파의 공공성, 전파의 회소성, 전파의 침투성,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접근성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방송 사업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사용권을 국가가 부여함으로써, 공익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였다. 하지만 전파의 회소성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업자 선발 방식이 1999년부터 과 같이 공익 의무조항에서 경매제도로 변화되었다(강종근, 2005, p.14)

< 1934 Act에 나타난 FCC의 방송 관련 주요 권한 >

- ① 무선국을 분류하고 면허 무선국의 분류별, 분류 내 각 무선국에 부여되는 서비스 성격을 규정
- ② 각 무선국 분류별로 주파수 대역을 배분 및 할당
- ③ 무선국이 사용하는 출력과 운영기간을 결정
- ④ 각 방송 무선국의 분류별, 개별 무선국의 위치 결정
- ⑤ 각 무선국 및 그 장치의 외부 효과와 방송 송출에 따른 간섭유무, 선명도에 관하여 사용되는 설비 종류를 규제
- ⑥ 법 규정을 준수하고, 무선국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FC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
- ⑦ 서비스 지역이나 구역을 설정
- ⑧ 동시방송(chain broadcasting)에 참여하는 무선 방송국에 적용되는 특별규칙을 제정할 권한

\* 출처: Communications Act 1934 재구성

방송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① FCC에서 공고하는 신규 방송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거나 ② 기존 방송국의 면허에 참여 할 수 있다. 즉 FCC에서 공고하는 신규 방송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파수대역에 대해 신설 방송 지역에 방송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이다. 이는 주파수 확장으로 신설이 가능한 새로운 방송사의 신규채널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경우 FCC는 신규 방송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기존 방송국의 면허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면허 사업자가 공익 의무조항을 위반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면허 사업자의 면허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공익 의무조항을 무시한 채 방송 사업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FCC에 공익의무조항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방송사업 면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방송 면허 사업자는 방송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소에 해당될 정도의 공익의무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 (2) 방송사업자 면허

방송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신청자는 FCC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갖춘 자 또는 기본 조건을 갖춘 사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FCC에서는 서류심사와 청문회를 거쳐서 해당지역에서 공익 의무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방송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방송 사업자 또는 사업체를 선발해서 건축허가서(Construction Permit)를 발급한다.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체는 건축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방송국 건축 및 방송시설을 완료하고 방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건설허가는 무선국 운영 이전 방송 무선국을 운영하여도 간섭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사 이후, FCC가 발급하는 것으로 국적, 성격, 재정, 기술 및 신청자가 무선국을 건설하고 운영할 기타의 능력, 제안된 무선국의 소유권과 위치, 그리고 교신 대상 무선국의 소유권과 위치, 사용 희망 주파수, 무선국 운영의 제안된 기간 및 운영시간, 무선국의 사용 목적, 사용되는 송신 장치의 유형, 사용될 출력, 무선국의 완공 및 운영 예상일,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정보

에 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방송국 운영에 대한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 이는 건설허가가 정부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국, 이동 무선국에는 건설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이 방송 무선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러한 건설허가에 대한 조항으로 미루어 방송의 공익성 및 방송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방송에 대한 사전 규제 형태로 건설허가를 발급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 미국은 이러한 건설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방송국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강제하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FCC는 방송사업자들에게 디지털 별도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방송국들에 대해 3 단계의 제재 조치를 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방송 무선국에 대한 허가를 취소의 단계를 거침으로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 설비 구축을 유도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사전 규제 형태로 건설허가를 발급하는 미국은 또한 방송국 운영 이후 자체 검사와 불시검사를 통해 방송국 운영에 대해 사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살펴본다면,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FCC가 간접규제하고 있으며, Communication Act 319조, CFR 47. §73.3533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통해 방송무선국을 건설하여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갖추게 하고 있는 것이다.



— < 방송국 건설허가에 관한 사항 > —

<제319조 [47 U.S.C. 319] 건설 허가>

- (a) 무선국 건설 허가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 한 어떠한 무선국 운영 면허도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될 수 없다. 건설 허가 신청은 국적, 성격, 재정, 기술 및 신청자가 무선국을 건설하고 운영할 기타의 능력, 제안된 무선국의 소유권과 위치, 그리고 교신 대상 무선국의 소유권과 위치, 사용 희망 주파수, 무선국 운영의 제안된 기간 및 운영시간, 무선국의 사용 목적, 사용되는 송신 장치의 유형, 사용될 출력, 무선국의 완공 및 운영 예상일,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정보에 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과 양식으로 신청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b) 그러한 건설 허가는 당해 무선국이 실제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초일과 최종일을 특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만일 면허를 부여받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무선국이 위 구체화된 기간에 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에 운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면허가 자동적으로 말소됨을 표시하여야 한다.
- (c) 건설 허가가 부여되어 무선국의 건설 또는 계속적인 건설이 완료되고 그러한 건설 허가의 신청과 허가에 규정된 모든 조건과 의무가 충족되었으며 건설 허가의 부여 이후,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해당무선국의 운영이 공익에 반한다는 사유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건설 허가의 적법한 소지자에게 그 무선국의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건설 허가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의 제309조 (a)항 내지 제309조 (g)항 규정은 이 항에 의해 제공되고 규제되는 무선국의 면허 발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d) 정부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국, 이동 무선국에는 건설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공공의 연안 무선국, 사적 소유 고정 극초단파 무선국,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허용된 무선국에 대하여 건설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된다고 결정하지 않는한, 이들 무선국의 건설 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국들에 대하여 건설 허가의 요건 적용을 면제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단, 연방통신위원회는 건설 허가가 승인된 방송국 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건설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함을 그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무선국이나 다른 분류의 무선국들에 대하여 그러한 면제가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건설 허가의 요건을 면제할 수 없다.

### (3) 방송사업자 면허 및 방송국 허가 관련 규정

방송 사업자의 면허 관련하여서는 1934 Act 307조, 308조, 309조에 따라, 방송 무선국 면허에 대해 신청자 부여와 면허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 및 갱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34 Act 307조에 의하면, FCC는 공익과 편의성, 필요성에 따라 무선국 면허를 신청자에게 부여해야 하는데, 면허 기간 및 갱신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은 8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부여된 면허에 대해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FCC는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갱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선국 면허의 갱신 신청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FCC는 방송사업자가 과거에 제출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거나 혹은 재허가 결정에 대한 고려에 있어 직접적인 영행을 미치지 않을 정보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하였다.

#### < 1934 Act 307 조 : 면허 부여 사항 >

##### <제307조 [47 U.S.C. 307] 시설의 배분, 면허기간>

- (a) 공공 편의, 이익, 필요에 도움이 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 법에 의해 규정된 무선국 면허를 신청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b) 면허, 변경, 갱신에 대한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한 연방통신위원회는 허가, 주파수, 운영시간, 출력을 각 주와 지역사회 각각에 무선 서비스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에 맞게(fair, efficient, and equitable) 분배되도록 각 주와 지역사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 (c) 면허기간
  - (1) 최초 면허 및 갱신 면허 : 방송국 운영에 부여된 각 면허는 8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익, 편의, 필요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존 면허의 만료일로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갱신을 부여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과 부합되도록 연방통신위원회는 특정 분류의 무선국에 대한 면허가 부여되고 갱신되는 기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조치가 공익, 편의, 필요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분류의 무선국에 대하여 그러한 분류의 무선국에 대하여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면허 또는 그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하거나 따를 수 없다.

(2) 신청에 필요한 자료 : 방송국 면허의 갱신 신청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며, 그러한 갱신에 대한 신청인의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자신에게 과거에 제공되었거나 그러한 신청의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에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는 자신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규 또는 추가 사실을 요구할 수 있다.

308조에 의하면 방송 무선국 면허 조건으로 서면 신청에 대해서만 건설 허가과 무선국 면허,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을 FCC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자들은 국적, 성격, 재정, 기술, 무선국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자의 기타 자격 등을 제안된 무선국의 소유권과 위치 및 다른 무선국들과 교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무선국들의 소유권과 위치,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와 출력, 제안하는 무선국의 운영기간 또는 운영 시간, 무선국의 사용 목적,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등과 함께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있다.

< 1934 Act 308 조 : 면허 조건 >

**<제308조 [47 U.S.C. 308] 면허 신청, 국제 통신을 위한 면허의 조건>**

- (a) 연방통신위원회는 자신이 접수하는 서면 신청에 대해서만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s), 무선국 면허(station license), 또는 그 변경(modifications) 또는 갱신(renewals)을 부여할 수 있다. 단, (1)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에 관련되거나 설비의 손상 때문에 연방통신위원회가 비상사태로 판단하는 경우, (2) 대통령이 선포하거나 의회가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 동안 그리고 미국이 개입된 전쟁의 계속 중에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방이나 국가 안보 또는 전쟁의 노력에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 (b) 무선국 면허, 그 변경, 또는 갱신의 모든 신청자들은 국적, 성격, 재정, 기술, 무선국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자의 기타 자격 등을 제안된 무선국의 소유권과 위치 및 다른 무선국들과 교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무선국들의 소유권과 위치,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와 출력, 제안하는 무선국의 운영기간 또는 운영 시간, 무선국의 사용 목적,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등과 함께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원래 신청의 제출 후부터 그러한 면허의 기간 중 언제라도 그러한 신청에 따라 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

적인 사실에 관한 서면 제출을 신청자 또는 면허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 또는 사실 진술에는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과 양식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c) - 생략 -

(d) 이의신청의 요약--영리 또는 비영리 텔레비전 면허의 갱신 신청자는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제안 그리고 만일 존재한다면 폭력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을 보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이를 문서로 요약하여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309조에서는 면허 처리에 관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방송사업 면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면허 부여 자체에 대해 공익, 편의, 필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확인 이후 FCC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방송사업 면허를 허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 1934 Act 309 조 : 처리절차, 면허의 형식과 조건 >

##### <제309조 [47 U.S.C. 309] 신청의 처리절차, 면허의 형식과 조건>

(a)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제308조가 적용되는 자에게 제출된 각 신청에 대하여 면허의 부여가 공익, 편의, 필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신청의 검토 및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기타 문제를 검토한 후 서면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b) 이 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위한 어떠한 신청이나 상당한 정도의 변경 신청 제출에 대하여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음을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는 부여될 수 없다.

- 이하 생략 -

(c) 이 조 (b)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b)항이 적용되는 신청의 경미한 변경, 또는

(2) 다음의 어느 신청:

(A) 허가된 무선국 시설의 경미한 변경,

(B) 제310조 (b)항에 의한 비자발적인 양도나 이전에 대한동의, 또는 소유권이나 지배권에 상당한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양도나 이전에 대한 동의,

(C) 제319조 (b)항에 의한 면허, 그러한 면허의 신청이 계류중 승인된 건설의 완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적 운영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면허에 의해 승인될 서비스와 실제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 또는 임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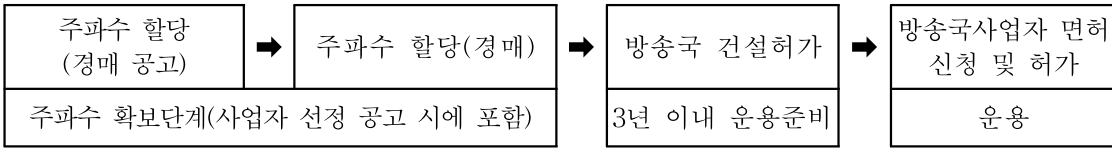
- (D) 승인된 시설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
- (E) 원격 중계(remote pickup) 시설, 스튜디오 링크 시설, 그리고 방송국 운영에 사용되는 유사 시설의 승인,
- (F) 전송되는 프로그램이 계속적 성격의 것이 아닌 특별 사항일 때 제325조 (c)항에 따른 승인,
- (G) 제출된 정규 운영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정규운영 신청이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비방송 운영의 특별 임시승인,
- (H) 제308조 (a)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승인.

또한 아날로그 지상파 TV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에 대한 규정화 함께 Advanced TV 면허에 대한 규정을 1934 Act 제336조에 규정하고 있다. Advanced TV 면허는 미국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 회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방송에 대해 대비하였다. 1934 Act에서 방송 사업 허가 및 규제에 관련한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한다면,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는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CFR §73.607, 610, 613, 622에서 방송 채널과 방송국간 이격거리, Class A TV 방송국에 대한 보호, 출력과 안테나 높이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지상파 TV 방송국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CFR에서 규정하고 있다.

## 나. 허가 절차

지상파 방송허가 절차는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지역 방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FCC는 관련 사업자 공고를 내고, 방송 사업자 선정 이후 선정된 사업자 혹은 사업체에게 방송국 건설허가를 발급하여 최종적으로 방송국 허가라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1996년 이후 방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 주파수 할당에 있어 경매제도로 변화함에 따라, 여유 주파수 대역에 대해 경매 혹은 할당 공고를 내고 이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및 경매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있어 방송 사업자가 주파수에 대한 활용 계획을 사업자 선정 시 제출하고 있다.

<그림 6> 미국의 방송허가절차



### (1) 주파수 확보 단계

주파수는 제한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파수의 이용을 위한 허가제도는 진입규제의 일환으로 운용되며, 3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비교청문 방식(Comparative Hearings)으로 과정자체가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주파수 사용 공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자 혹은 사업체를 비교하여 주파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추첨방식(Lotteries)으로 공고에 지원하는 사업자 사업체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는 방송 사업 부자격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996년 이후 주파수의 금전적 가치 및 희소성으로 인하여 경매방식(Auctions)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한정된 자원을 사업자들에게 경매라는 방식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만,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방송 사업 재허가 시에 허가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는 FCC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경매 공시 및 의견 수렴(Comment Public Notice)과 주파수, 방송 구분, 경매 절차 및 관련 정보, 경매 일시, 경매 참가 자격 등의 상세 정보에 관해 공고함으로써 방송 사업자가 활용할 주파수 확보의 전초전을 갖게 된다. 주파수 할당(경매) 이후 Communication Act 1996 309조(j)항에 의거 1999년 10월부터 상업 방송 전파에 대한 경매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경매 신청서와 입찰 선금을 납부하고 라운드 방식의 인터넷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송 사업자가 투명하게 주파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상업방송이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공공방송은 CFR 47.§73.7003에 의하여 점수제를 통해 최고득점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방송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였다.

< 심사기준 >

- ① 지역 거주자 : 방송 사업 신청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한 경우 3점
- ② 소유의 다양화 : 해당 지역에 다른 방송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2점
- ③ 주단위의 네트워크(State-wide Network) : 50개 이상의 공인된 초·중등학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2점
- ④ 기술적 요건 : 경쟁사업자에 비해 10% 이상 많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시 1점, 25% 이상 많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시 2점
- ⑤ 동점일 경우에는 다른 방송 소유가 적은 사업자 등 일정 조건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

\* 출처 : FCC, CFR 47.§73.7003, 재구성

## (2) 방송국 건축허가

1934 Act 319조와 CFR 47.§73.3533에 의거하여 방송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게 된다. 방송사업 신청자는 방송사업 해당 지역에서 공익의 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방송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 또는 사업체를 선발해서 건축 허가서를 발급한다.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체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방송국 건축 및 방송 시설을 완료하고 방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FCC에서는 건축된 방송국에 대해 현장 심사를 통해서 면허 신청자의 방송시설 및 기술이 FCC 표준 규격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국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방송사업자 혹은 사업체는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자격 보유 여부, 시설 설치계획이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방송사업자 혹은 사업체는 ①신청자 또는 단체의 인적사항 등 사업자 일반 정보와 ② 사업자의 법적 자격 여부, ③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방송국 건축 허가를 위한 제출자료 >

- ① 신청자 또는 단체의 인적 사항 등 사업자 일반정보
  - 신청 목적 : 신규 건설허가 또는 보수 건설 허가
  - 신청 구분 : AM, FM, TV, DTV
  - 신청 규모 및 신청료 면제 여부(정부 기관이 신청할 경우) 등
- ② 사업자의 법적 자격 여부
  - 국적 및 지분 보유 현황, 소유제한·복수매체 또는 교차소유 규제 저촉 여부, 경매 증빙서류, 고용평등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③ 기술적인 세부 사항
  - 각 신청 형태(AM, FM, TV, DTV)에 따른 기술 기준 사항
  - TV 방송의 경우 : 채널, 방송사 구분, 주파수 Offset과 Tolerance, 안테나 구조 등록, 안테나 위치 및 구조, 안테나 스펙, 채널 지정, 해당지역 방송 커버리지, 주조정실 소재지, 전파 방해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 환경 보호법 준수 여부 등
  - DTV 방송의 경우 : 안테나 위치 및 출력, ERP 및 안테나 높이 규정, RF 노출에 따른 안전 규칙과 환경 문제, 지정된 해당지역 DTV 커버리지, DTV 출력이 Radio Astronomy에 미치는 전파장애, 안테나 제한 준수, 기술 세부 사항, 안테나 위치, 구조, 전파방해 방지를 위한 규정 조항, 해당지역 방송 커버리지 등

\* 출처 : FCC, 1934 Act 319조, CFR 47.§73.3533, 재구성

### (3) 방송 사업자 면허

건축허가서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건축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방송국 건축 및 방송시설을 완료하고 방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TV 방송 면허 신청서는 FCC Form 302에 따라 일반정보와 기술정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항에 대해 FCC가 심사 이후 조건 만족 시, 허가기간 8년의 방송사업자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DTV 방송 면허 신청서에는 TV와 동일한 Form으로 신청하지만, 일반정보, 법적정보, 기술정보로 구분되어 심사하게 된다.



## < 방송 사업자 면허 시 제출 사항 >

### ① TV 방송국 허가

- 일반정보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료 면제여부, 건축허가서의 기간, 조건, 의무조항 이행, 변경 및 불이행 여부, 상업 또는 공영방송 신청 구분, Program Test Authority 이행 여부, 신청목적, 사업자의 문제점에 관한 이의가 제기 되거나 계류 상태, 사업자의 민사, 형사상 범법 행위(중범죄 전과, 대중매체에 관련된 독과점법, 정부기관에 허위서류 제출, 불평등 고용)의 위반 여부, 연방정부 Anti-Drug Act 준수여부
- 기술정보 : 채널, 주파수 정보, 송신기 출력, 안테나 정보, 방송국 시설에 대한 FCC 규정 준수 여부, FCC 규정에 따라 특수 방송 시설 건설 여부, 송신기 출력 변경 여부, Radiated 출력 증강 여부, 채널 간격 준수여부, 영토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간격 유지 여부, Radio Astronomy에 미치는 전파장애 규제 준수 여부, 다매체 소유구제 준수 여부 환경보호법(1969) 준수 여부 등

### ② DTV 방송국 허가

- 일반정보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료 면제여부, 또는 공영방송 신청 구분, Program Test Authority 이행 여부, 신청 목적
- 법적 정보 : 건축허가서의 기간, 조건, 의무조항 이행, 변경 및 불이행 여부, 사업자의 문제점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계류상태, 사업자의 민형사상 범법행위의 위반여부, 연방정부 Anti-Drug Act 준수여부 등
- 기술정보 : 채널, 주파수 정보, 송신기 출력, 안테나 정보, 방송국 시설에 대한 FCC 규정 준수 여부, FCC 규정에 따라 특수 방송 시설 건설 여부, 송신기 출력 변경 여부, Radiated 출력 증강 여부, 채널 간격 준수여부, 영토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간격 유지 여부, Radio Astronomy에 미치는 전파장애 규제 준수 여부, 다매체 소유구제 준수, 면허 구분 변경 여부 등

\* 출처 : FCC, 1934 Act 308, 309조 재구성

## 다. 방송국 재허가 사항

1934 ACT에 따르면 방송 허가 및 재허가 기간은 3년이었으며, FCC는 매년 모든 방송 허가자의 1/3을 심사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의회는 텔레비전은 4년마다, 그리고 라디오는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96년

에 이르러서는 1996년 통신법에 의거 매체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방송의 재허가 심사 기간을 8년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는 방송허가 기간이 증가하게 된 것은 잦은 심사로 말미암아 방송사가 정상적인 방송 운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방송사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정창신, 2006, p.24). 신규 사업자 및 재면허 신청자는 FCC의 고유 번호 양식(FCC Registration Number: FCC Form 160)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FCC Commission Registration System(CORDES)으로 알려진 FCC 양식은 사업자 또는 단체의 기본 정보, 즉 이름, 영업구분, 연락처, 납세자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을 마치면 FCC에서는 10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 인식에 부여한다. 모든 FCC 양식에는 FRN(FCC Registration Number)번호를 부여받기 전에는 신규 면허 및 재면허 서류를 접수시킬 수 없다. 이같이 온라인과 우편 접수 방식은 2001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만 면허 및 재면허 접수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규면허 신청 및 재면허 신청자 또는 단체는 Universal Licensing System(ULS)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류 등록을 해야 하며, ULS는 온라인 접수 이외에 서류 제출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1) 방송국 재허가 과정

FCC에서 방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Telecommunication Act(1996)에 의해서 8년마다 면허 재허가(갱신)를 받아야 한다. 1996년 이전의 면허 재허가 절차는 기존 면허 사업자의 면허 재허가시에 타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의 재허가에 도전하여 면허를 경쟁하는 비교 청문회 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A라는 방송사업자가 면허 만기일이 도래하여 재허가를 신청하면 방송사업 희망자들도 A방송사업자의 면허에 도전하여 면허를 신청하고, FCC는 경쟁사의 신청 서류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비교 청문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송사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수천개의 TV 방송사의 재허가를 위해서 비교 청문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Telecommunication Act(1996)는 비교 공청회 제도를 폐지시키고 면허 기간을 8년으로 연장시켜 기존 면허 사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8년

간 방송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Telecommunication Act(1996)에 의해서 FCC는 2단계의 재허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첫 단계는 면허 재허가 대상 사업자로부터 면허 재허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두 번째 단계로서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가 다음 3가지 FCC 기본 조건에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허가를 보장하고 있다.

< FCC 재허가 기본 조건 >

- ① 방송사업자가 공익 의무조항을 준수하여 공익을 위한 방송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② 방송 사업자가 방송법과 FCC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법과 FCC 규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을 경우

방송사업자가 3가지 FCC 재허가 기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면허 재허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경우, FCC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단기 재허가, 벌금, 명령,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재허가 심사 첫 단계에서 서류상의 하자 또는 면허 재허가를 원치 않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해당 방송사의 면허 재허가를 거부하는 청원이 접수되면 FCC에서는 보강 서류 제출과 청원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하여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심사시에는 FCC에서 정한 5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

< FCC 재심사 결정 기준 >

- ① 사업자가 지역 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수용하는 대책 수립 여부
- ② 사업자가 지역 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여부
- ③ 사업자가 지역 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위해 봉사하는 대책 수립 여부
- ④ 사업자의 방송법과 FCC 규제법 준수 여부
- ⑤ 사업자가 지역사회와의 견해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FCC로부터 방송사업자 면허를 부여받은 방송사는 면허 만기일 4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을 위한 재허가 인터넷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FCC에서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의 면허 만기일 6개월 전에 면허 재허가를 알리는 우편엽서를 발송해주고 있다. FCC에서는 사업자 재허가 신청전에 FCC 자료 파일(Consolidated Database system)에 등록된 사업자 주소를 확인하여 FCC로부터 행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전 주소 확인 절차를 권장하고 있다. FCC 면허 재허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면허 만기일 3개월 전과 4개월 전에 각각 2회씩 방송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업자가 면허 재허가를 앞두고 있다는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재허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FCC에 재허가 서류를 제출했음을 알리는 공고 방송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FCC의 재허가 안내방송 규정에 의해서 사전 안내방송은 총 4회를 실시해야 하며, 2회는 오후 6시부터 11시 시간대에 실시하고 나머지 2회는 사업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안내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사후 안내방송은 오후 6시부터 11시 시간대에 총3회를 실시해야 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오전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중 1회를 선택해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마지막 안내방송을 실시 한 후, 7일 이내에 안내방송 시간 및 횟수, 내용을 공람 파일에 의무적으로 보관시켜야 한다.

미국의 방송사 수는 2005년 2만 6304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TV 방송국은 1,800여개에 달하고 있다. Telecommunication Act(1996)에 의하여 재허가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었다곤 하지만, 매달 수십개의 방송사 재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FCC로서는 인력이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이들 재허가 대상 기관에 대한 심사 및 분석할 여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FCC는 청원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창신, 2006, p.26).

재허가 거부 청원이란 해당 방송지역의 주민이나 단체가 FCC에 특정 방송사의 재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이다. FCC 규정에 의하면 재허가 거부 청원은 해당 방송사의 면허 만기일 1개월 전까지 FCC에 재허가 거부 청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팩스나 전자 메일 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 또는 단체가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재허가 거부 청원 제출 서류는 청원서 및 배달 증명서, 청원서 내용이 사실임을 공증하는 서신으로 되어 있으며, 청원서

표지에는 해당 방송국 호출 부호, 해당 방송국 ID 번호, 해당 방송국 재허가 신청 서류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FCC 규정에서는 재허가 거부 청원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는 재허가 거부 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 또는 청취자는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재허가 거부 청원 3가지 서류를 구비하면 공식 재허가 거부 청원 요건을 갖추게 되고, FCC에서는 공식적인 재허가 거부 청원 방법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비공식 진정서는 공증서신이 필요 없이 재허가 거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FCC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 재허가 거부 청원 자격 및 제출 서류 >

#### <재허가 거부 청원자>

- 재허가 거부 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로 규정

#### <재허가 거부 청원 제출 서류>

- ① 청원서
- ② 청원서를 복사해서 해당 방송사에 1부 보냈다는 배달 증명서(Certification)
- ③ 전문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청원서 내용이 사실임을 공증하는 서신 (Affidavit Letter)

재허가 거부 청원이 접수되면 재허가 거부 청원의 심사 과정이 시작된다. FCC에서는 재허가 거부 청원 서류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2단계를 거쳐서 재허가 거부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첫단계는 재허가 거부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첫 단계의 검토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재허가 거부 청원을 무시하고 해당 방송사에게 8년의 재면허를 허가한다. 그러나 청원 서류를 검토한 후에 청원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FCC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해당 방송국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조사하게 된다. FCC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방송사에 대한 청원 내용이 공익 의무조항과 관련된 사항이고 아울러 관련 사항이 공익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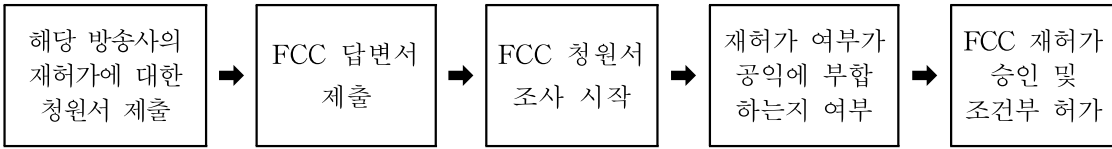
재허가 거부 청원 서류를 심사하여 청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FCC에서는 해당 방송사와 재허가 거부 청원자 또는 단체 쌍방이 타협하여 청원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허가 거부 청원자가 양쪽의 타협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제도적 남용을 막기 위해서 FCC에서는 금전적인 해결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 거부 청원자에 금전을 지불할 경우에는 FCC에 상세한 합의서와 금전 지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법적인 비용 이외의 금액은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9> FCC가 정한 공익 의무조항**

구분	의 무 조 항	내 용
1	지역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	· 해당 지역민 또는 지역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보관해야 함
2	교육 및 정보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적어도 주당 3시간은 아동용 교육 및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이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20분은 오전7시~오후10시 이내 편성되어야 함 · 교육·정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조치
3	비속, 외설, 그리고 추잡한 방송 금지	· 오전6시~오후10시까지의 비속어, 추잡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는 안 됨
4	텔레비전 광고	· 광고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말이나 어린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 당 광고가 10.5분, 주중에는 1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됨
5	정치 입후보자	· 연방 선출직 공무원 혹은 입후보자가 요구할 경우 합당할 정도로 이를 허용해야 함 · 허용 시 상대편 입후보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6	공정 보도 원칙	· 방송국의 입장과 달리하는 단체에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함
7	자막 방송 요건	· 최소한의 시간은 장애우를 위해 자막 방송으로 편성해야 함
8	스튜디오 위치 및 Inspection 파일	· 메인 스튜디오는 방송 전파가 커버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함 · 프로그램 등 방송국의 활동 관련 파일은 별도 보관해 공중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부응해야 함
9	동등한 취업 기회 원칙	· 연방법에 정한 원칙을 방송에도 적용 · 방송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나이, 국적 등의 이유로 취업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됨 · 방송이 송출되는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함

\* 자료 :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그림 7> 미국의 방송 재허가 주요 절차**



**(2) 방송국 재허가 서류**

FCC 재허가 면허 신청서(FCC Form 303-S)에 명시된 재허가 준비서류는 크게 사업자 소유 보고서, 평등고용제도, 공람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 소유 보고서는 상업 방송인 경우 Form 323, 비상업방송국의 경우 Form 323-E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자 소유 보고서는 사업자의 소유 형태 및 소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FCC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이다. 소유 보고서는 소유자의 일반 정보와 소유 형태 및 소유구조에 관한 정보로 나뉘어 있다.

**< 사업자 소유 보고서 구성 >**

**<소유자 일반 정보>**

- ① 사업자 인적사항
- ② FCC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방송사 호출번호
- ③ 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단체 연락처 및 정보

**<소유형태 및 소유구조>**

- ① 신청목적
- ② 방송사 호출 부호, 방송사 고유번호, 위치, 방송사 구분
- ③ 방송사 컨트롤 권한 여부
- ④ 1%이상의 방송사 지분 소유자 명단
- ⑤ 소유자의 국적, 직책, 직업, 현직책의 선출방식
- ⑥ 타 방송사 소유 지분 비율 등

두 번째로 평등 고용제도에 관한 서류는 FCC Form 396에 해당되며, 5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평한 고용을 보장하는 평등 고용제도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재허가를 준비 중인 사업자는 평등 고용제도 양식에 직원 고용 현황을 기록하여 재허가 서류와 같이 FCC에 제출하여야 한다. FCC Form 396은 호출부호, 방송사 고유 번호, 방송사 위치, 타사와 방송시간 계약 여부로 구성된 사업자 정보와 지난 2년간의 평등 고용 보고서, 지난 2년간 평등 고용을 위해서 사업자가 노력한 점을 기록한 설명서가 포함된 고용 현황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공람 파일은 FCC에서 부여한 방송면허는 사업자가 공익을 위한 방송사업을 지속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익을 위한 방송사업의 의무가 있으며, FCC는 모든 방송사업자의 방송준수 여부를 모니터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람 파일을 비치토록하여 지역 주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는 주민 감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공람 파일에는 사업자 면허와 사업자 재면허 신청서와 신청 서류, 쌍방향의서, 사업자 시설 지적도 및 약도, 규제 불이행 및 지역 주민 불만 관련 서류, 소유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 < 공람파일의 구성 >

- ① 사업자 면허 : 사업자의 유효 주파수, 호출 부호, 출력, 트랜스미터 위치, 면허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자 면허를 복사하여 공람파일에 보관
- ② 사업자 재면허 신청서와 신청 서류 : 사업자가 FCC에 제출한 최근의 재면허 신청서를 복사하여 공람 파일에 보관 (8년의 면허를 받지 못하고 단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람 파일에 보관)
- ③ 쌍방향의서 : 사업자를 상대로 청원 또는 제 3자와 합의한 내용을 알리는 합의서
- ④ 사업자 시설 지적도 및 약도 : FCC의 사업자 면허 신청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스튜디오 시설 및 트랜스미터 지적도와 약도를 공람
- ⑤ 사업자의 FCC 규제 불이행 및 지역 주민 불만 관련 서류 : 사업자가 방송법 또는 FCC 규제를 위반한 사실에 관련된 서류 및 지역 주민들이 사업자의 불만을 제출한 서류
- ⑥ 사업자 소유 보고서 : 지역주민들이 사업자의 소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최근 FCC에 제출한 소유 보고서
- ⑦ 사업자의 방송사업에 관련된 계약서 :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람해야 하는 계약서는 사업자가 네트워크와 맺은 제휴 계약서(Network Affiliation Contract), 사업자 소유권과 사업자 면허 통제권에 관련된 계약서(회사 정관, 주식옵션, 은행 용자 서류, 투표 위임권 등) 경영 위탁에 관련된 서류 등이 포함



- ⑧ 선거 방송에 관련된 서류 : 방송법에서 규정한 공직 선거 방송에 관련된 정보 등을 2년간 공람
- ⑨ 평등고용제도 서류 : 지역 주민들이 사업자의 직원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FCC에 매년 제출하는 평등 고용제도 서류를 비치
- ⑩ 기타 : 분기별 방송 편성표, FCC 정기 간행물, 지역 주민의 의견,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면허 재허가를 공고하는 안내 방송

## 다. 방송국 검사 관련 사항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의 Section 303(n) 은 법률에 의해서 면허를 부여받아야만 하는 모든 무선 시설물에 대한 검사권한을 FCC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FCC내의 여러 부서 중에서 Enforcement Bureau가 이러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무선 시설물에 대한 검사 방법은 크게 ABIP 방법과 SIP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다. ABIP(Alternative Broadcast Inspection Program : 선택적 방송국 검사프로그램)은 미국 각 주(STATE)의 방송관련기구와 협력을 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민원의 발생 시에나 특별한 문제의 발생 시에 방송관련기구와 협력하여 법이 준수되는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SIP(Self-Inspection Program : 자가 검사 프로그램) 방법은 FCC에서 방송국 자체성능성적 측정에 의해 자기의 방송국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Self-Inspection Program LIST를 규정해 줌에 따라 방송사에게 자율적으로 출력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였다.

또한 Public Inspection(공공검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소비자나 공공이 FCC에 의해 실시한 검사증명서나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역의 이에 부응해야하는 의무가 법에 명기되어있으며 시행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 무선국에 대한 검사는 CFR 규정상 검사가 필요한 서비스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파의 간섭 혹은 기타 영향에 따라 청원(Complaint)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무선국은 방송용 무선국이며, 매년 300개 정도를 선정하여 불시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관이 현장에 파견되게 되면, 피검사자는 조사관이 불시에 검사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상시·불시에 관계 없이 피검사자는 꼭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FCC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예고되지 않는 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불시 검사 항목 >

- ① 비상경보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에 운영과 작동에 관한 항목
- ② 안테나의 높이, 위치, 관리 등에 대한 항목
- ③ 송신기의 출력의 크기
- ④ 할당된 주파수대의 사용여부
- ⑤ Aural modulation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⑥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⑦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

미국의 방송국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약 2만 7천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모든 방송국을 FCC에서 검사한다는 것은 인력과 자원 모든 측면에서 무리가 가는 사항이다. 하지만 1934 Act에 의하면 방송 무선국은 FCC 혹은 FCC에서 지정한 기관이 검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의 과급효과와 공익성, 이동통신 등 타 산업과 전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방송국을 검사 할 수 없어 그에 대응하는 불시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자가 검사 제도라는 것을 두어 방송 사업자가 불시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자가 검사(Self-Inspection)제도는 TV, FM, AM 방송용 무선국의 경우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국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제도이다. 이는 해당 방송 무선국이 출력, 안테나 위치, 높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전파 간섭의 영향을 방송 사업자 스스로 체크하고, FCC에서 나 위치행하는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하는 검사 자가 체크 리스트의 항목을 살펴보면, 총 7개 부분 10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행정 사항 및 기술 이외 사항들, 안테나 구조, Emergency Alert System (EAS) 시스템에 관한 사항, 방송 무선국의 기술적 사항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 자가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FCC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 검토한 사항들과 불시 검사 항목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방송무선국의 운영에 대해 맡기면서, 불시 검사를 통해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무선국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방송사업자들 스스로 방송무선국 운영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TV 방송국의 주요 체크리스트**

구분	Checklist
일반 행정사항 및 기술 이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 허가관련 사항</li> <li>○ 방송국의 운영 실적과 기기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점검 사항 등</li> <li>○ 방송국 운영기간(허가기간 : 방송국 운영 시작일부터 허가 만료일)</li> <li>○ 방송무선국의 전화 번호 등 위치 및 연락처</li> <li>○ 공람과일(사업자 면허와 사업자 재면허 신청서와 신청 서류, 쌍방향의서, 사업자 시설 지적도 및 약도, 규제 불이행 및 지역 주민 불만 관련 서류, 소유 보고서)</li> <li>○ 그 외 일반 행정사항과 기술 이외 사항들의 57개 항목으로 구성</li> </ul>
안테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테나의 정식 등록 사항(안테나 높이, 토지 등에 관련된 사항)</li> <li>○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주소</li> <li>○ 건설허가 시와 제출한 안테나 구성요소인지 여부</li> <li>○ 안테나 식별 불빛(24시간 지시등이 켜져 있는지의 여부 등)</li> <li>○ 유지보수 기록</li> <li>○ 방송국 허가와 동일한 페인팅을 하였는지 여부</li> <li>○ 그 외 FCC Form 715에 맞는 안테나 성능 및 구조 사항에 대한 11개 항목으로 구성</li> </ul>
Emergency Alert System (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AS Decoder/Encoder에 관한 사항</li> <li>○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EAS에 대한 운영)</li> <li>○ EAS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상 운영 여부</li> <li>○ 그 외 16개 항목으로 구성</li> </ul>

기술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력, 주파수, Modulation, 등에 관한 사항</li> <li>○ 증계기 계측기, Modulation을 100% 사용하였을 경우 +/-250 kHz의 이탈 범위 내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li> <li>○ 전송 시스템의 완전성 여부(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관한 사항)</li> <li>○ 방송국의 출력과 Modulation이 면허 발급된 사항과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모니터링 사항</li> <li>○ 그 외 방송 무선국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10개 항목</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무선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에 관한 사항</li> <li>○ 주요 송신소 및 스튜디오가 허가된 방송국에 대해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얼마나 접근성이 편리한지에 대한 여부</li> <li>○ Local Marketing agreement에 대한 사항을 FCC에 30일 이내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사항</li> <li>○ 방송 무선국의 소유에 관한 계약 사항이 방송 무선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제출 여부</li> <li>○ 그 외 9개 항목으로 구성</li> </ul>

### 3. 영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

#### 가. 허가 관련 규정

영국의 허가제도는 BBC와 BBC를 제외한 방송허가로 나뉜다. 1922년 상업방송(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출발해 1927년 공사로 재편된 BBC는 칙허장과 협정서를 근간으로 설립 및 운영된다. 칙허장은 여왕이 부여하는 것으로 의회의 법안을 초월한다. 칙허장은 10기간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BBC의 허가는 10년동안 방송허가권을 갖는다.

BBC를 제외한 방송에 대한 허가는 「방송법(1990년, 1996년)」과 「커뮤니케이션법(2003년)」에 따른다. 이때, 허가의 주체는 OFCOM이다. 지상파방송 사업자허가 대상은 채널 3, 채널 4, 채널 5이다. 케이블 &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김대호, 2005).

#### <케이블 & 방송법 제8조 제1항>

(a) 다음과 같은 개인

가. 유럽 경제공동체내에 상주하지만 원래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

나. 원래 영국내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또는 채널 섬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

(b) 다음과 같은 법인

가. 유럽 경제공동체 내에 본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사업 주요 분야에 관하여 회원국 법에 의해 구성된 조직체가 아닌 법인체

나. 영국의 국내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체가 아닌 법인체

(c) 지방 자치단체

(d) 그 목적이 주로 전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특성을 지닌 조직체

(e) 이상의 항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조직체

## 나. 허가 절차

### (1) 허가신청

OFCOM은 방송법 제2장 15조 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허가에 대한 공지사항을 공고한다. 사업자는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 허가 받을 지역 내에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커뮤니티나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중 특정 시간이나 일중 일 중 특정일에 있어 프로그램 제공 시간계획서, 전국 채널3의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일일 시간대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

#### <방송사업자에 관한 공지(방송법 제2장 15(1)(b))>

- (a) 지역 채널 서비스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
- (b) 허가 받을 지역 내에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여러 커뮤니티나 특정 지역들
- (c)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중 특정 시간이나 일주일 중 특정일에 있어 프로그램제공 시간계획서
- (d) 전국 채널3의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일일 시간대

### (2) 허가 심사 및 입찰

OFCOM은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심사와 입찰가를 고려하여 사업자를 허가한다. 채널3 사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OFCOM은 현금 입찰가격을 기초로 허가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최고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허가가 부여되지만 예외적인 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최고의 입찰가격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예외적인 사항은 응모자가 제안한 서비스의 질이 예외적으로 낮을 경우이거나 최고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응모자가 제안한 질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이다.

채널4의 경우에는 허가를 부여받기 위해 기술한 채널3의 허가기준에 더하여 채널 3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취향이나 이해에 소구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여야하고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나 내용의 프로그램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 비율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채널3 허가조건 - 방송법 제2장 16(2)항>**

- (a) 피크 시간대에 수준 높은 국내외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충분한 시간 할당
- (b)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외에 수준 높은 다른 프로그램에 충분한 시간 할당
- (c) 지역주민들이 이해에 충분한 시간 할당
- (d) 종교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시간 할당
- (e) 다양한 취향이나 이해를 반영
- (f) 유럽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적절한 비율
- (g)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연간 25% 이상

**<채널4 허가조건 - 방송법 제2장 25(1)(2)/커뮤니케이션법 제271조(1)항>**

- (a) 채널 3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취향이나 이해에 소구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일 것
- (b)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나 내용의 프로그램,
- (c)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 비율을 높일 것

**(3) 허가기간**

채널3과 채널4의 허가는 1993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방송법 제2장에 따라 허가기간은 10년이다. 채널5의 허가기간 역시 10년으로, 10년이 지난 후 재허가를 받는다.

## 다. 방송국 관련 기타 절차

### (1) 재허가 절차 및 기준

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자들은 허가의 종료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의 규제기구인 ITC는 지상파 방송사인 채널3이나 채널5가 원래 허가 신청시 제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규제기구인 ITC는 방송법 제2장 20(4)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재허가 거부 - 방송법 제2장/방송법 부속 12, 4(5)>

- (a) 원래 허가를 받은 프랜차이즈 지역과는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전송 서비스를 원할 때
- (b) 신청하는 시점에 프랜차이즈 전역에 보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
- (c) 신청자가 제안한 지역 전송 서비스가 프랜차이즈 지역 전체를 커버할 것 같지 않을 경우
- (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통신 시스템이 관련 허가 기구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2) 허가취소

채널 3 허가취소 조항은 1990년 방송법 4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유지되었다. OFCOM이 허가받은 방송사가 다음 조건을 해당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채널3 허가취소 - 1990년 방송법 42조>

- (i) OFCOM이 인지하고 있고,
- (ii) OFCOM이 특히 어떠한 점에서 허가 조건이나 허가 조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명시하고,
- (iii) 방송사업자가 그러한 조치를 정정하도록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한것이 분명할 때,



그 밖에 1990년 방송법5조(1)(a)(5)(7)하의 규정에 대해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김대호, 2005).

**<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 1990년 방송법5조(1)(a)(5)(7)>**

- (a) 1990년 방송법 제2부(Part II) 2 절에 의거, 사업자가 부적절한 인물로 판명되거나, 커뮤니케이션법 14절에 의거, 채널 3 사업자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 (b) OFCOM이 판단하기에, 허가 조건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OFCOM이 잘못 판단하도록 할 의도로 정보를 오도하였을 경우,
- (c) 허가받은 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그 특성이나 그 단체의 주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사업자 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 (d) 허가받은 사업자가 방송 사업 허가를 갖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e) 허가받은 사업자가 1949년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1949)의 제1절이 요구하는 지역 채널 3 서비스의 사항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커뮤니케이션법 제2부의 1절이 규정하는 지역 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 (f) 허가받은 사업자가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역 채널 3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OFCOM이 판단한 경우
- (g) OFCOM이 허가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잠정적으로 취소하여, 커뮤니케이션법 405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의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거나, 커뮤니케이션법 156조(1)항을 충족시키도록 할 경우

## 4. 독일의 허가 및 검사제도

독일에서는 ‘방송’은 문화 영역으로 간주하며 방송에 대한 관할권은 지방 정부가 갖는다. 1984년부터 독일의 각 주에서는 주미디어법을 제정하였으며 독일 15개 주의 주미디어청에서 민영방송에 대한 허가과 감독을 담당한다. 주미디어청은 독립적인 행정청으로 민영방송의 허가과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 프로그램의 감독, 법적 관철을 위한 규범과 기초에 공포, 민영방송의 기술적 확대지원, 방송 전문화를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김형성·지성우, 2005).

### 가. 허가 관련 규정

독일의 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뉜다. 공영방송은 내무부와 주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에 관해 관할하며, 민영방송은 연방 각 주의 미디어청이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는 미디어법에 의거하여 허가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각 주간에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fStV)을 체결하여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있다. 방송국가협약 20조에서는 민영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방영을 위해서는 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김형성·지성우, 2005).

#### BadWüttMediG

(방송국가협약 20조)

- a. 민영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방영을 위해서는 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 전역에 방영되는 방송사업자의 허가에는 제2조 제2항에 의한 프로그램의 종류(Programmkategorie)가 확정되어야 한다.
- b. 만일 미디어서비스가 방송의 개념에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제공자는 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모든 주미디어청이 합의로 확정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허가를 신청하거나, 혹은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소관 주미디어청에 방송법적 증명(Unbedenklichkeit)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c. 만일 방송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서 간이허가절차의 실시를 규정할 수 있다.
- 공적 방영의 공적 범위 및 이와 시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방영되거나 전파되는 것 또는
  - 시설물이 방송목적으로 이용되며, 방송이 단지 그곳에서만 수신 가능할 경우 그리고 방송이 이 시설물 내에서 방송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관련이 있는 경우

독일의 민영방송은 허가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민영방송의 허가 유형은 방송 국가협약 20조에 따른 것으로 보통의 민영방송, 간이허가절차(vereinfachtes Zulassungsverfahren),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e)sve한 허가절차가 이에 속한다.

#### 1. 보통의 민영방송허가

- ① 방송사업자의 방영범위가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경우(지역방송사업자의 경우)
- ②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영범위가 독일 전역(bundesweit)에 방영되는 경우에는 RfStV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종류, 종합편성프로그램(Vollprogramm), 전문편성프로그램(Spartenprogramm) 또는 썬프로그램(Fensterprogramm) 등의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 2. 간이허가절차(vereinfachtes Zulassungsverfahren)

- ① 공적 방영의 공적 범위 및 이와 시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방영되거나 전파되는 경우
- ② 시설물이 방송목적으로 이용되며, 방송이 단지 그곳에서만 수신 가능할 경우 그리고 방송이 이 시설물 내에서 방송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관련이 있는 경우

#### 3.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e)에 관한 허가절차

- ① 미디어서비스가 방송의 개념에 포함될 경우

## 나. 허가 절차

### (1) 주과수 확보 단계

독일의 방송허가는 주과수 할당 계획 공고를 통해 개시된다. 방송사를 선정하여 주과수 할당 계획을 공지할 경우에는 활용가능한 방송주과수 대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정한 시기까지 허가신청서(Antrag auf Zulassung)를 접수하도록 한다. 만일 방송사업을 희망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영하고자 계획하는 방영범위가 한개 주(州) 이상일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는 공고된 내용에 따라 신청할 주미디어청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방송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방 각주의 미디어청은 상세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라디오규칙, TV규칙, 채널 점유 규칙 등을 제정한다(김형성·지성우, 2005).

#### 방송사업자의 요건

(방송국가협약 20조)

- 니더작센주미디어법(NdsMedG) 제 6조 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 제1호 민사법상의 법인(재단,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 제2호 공법상 종교단체 또는 공법상의 세계관단체(Weltanschauungsgemeinschaft)
  - 제3호 영속적으로 투자된 민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결합체(Vereinigung)(가령 민법에 의한 협회 또는 사교단체)
  - 제4호 보호자가 지정되지 않은, 행위능력의 제한이 없는 자연인
- 니더작센주미디어법(NdsMedG) 제 6조 제3항 : 공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연방의원)은 방송사업허가를 얻을 수 없다.

### <방송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 프로그램계획서 제출(각주의 미디어법에는 지역방송프로그램의 비율과 지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율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계획서)
- 방송사업 허가신청자가 정기적이고(regelmäßig) 전문적으로(professional)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조직적(organisatorisch)·재정적(finanziell)인 상황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률 : BadWüttMediG 제14조; BayMG 제26조; NdSMedG 제9조 제2항; NWLMG 제5조 이하 및 제29조; RhPflRG 제5조; SaarlMedG 제50조 제3항; SächsPRG 제8조 및 제9조; SachsAhnMedG 제4조 제5항; ThüLMG 제6조 제4항 및 RfStV 제20조(김형성·지성우, 2005에서 재인용)

## (2)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방송사업자가 주미디어청에 주과수 할당계획 및 공고에 기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선정한다. 독일 내의 모든 민영방송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방송사의 존립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주미디어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결정한다. 이때, ‘의견이— 다양성에 대한 예상 기여도’, ‘종합편성프로그램과 전문편성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지역관련성’,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전문성’, ‘편집에 있어서의 공동결정’ 등이 기준이 된다.

## (3) 허가기간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의 허가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주마다 미디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기간 역시 다르다. 최저 2년에서 최고 10년까지로 다양한데 5년을 민영방송의 허가기간으로 정한 수가 많다.

## 다. 방송국 관련 기타 절차

### (1) 재허가

독일에서는 재허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영 방송이 허가기간 동안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된다. 독일에서는 프로그램의 전파가 일반 법적 대상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방송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가 재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김형성·지성우, 2005).

- Baden-Wurttemberg : 청소년 보호, 폭력과 포르노 금지와 반론권
- Bayern : 민족간의 이해, 청소년 보호, 독일 안전보장, 저작권, 반론권, 외국 프로그램의 독일기본법의 규정준수
- Berlin : 인간의 존엄성, 청소년 보호, 형법(폭력, 포르노), 인종차별
- Bremen : 일반 프로그램 기본원칙, 무력과 포르노 금지, 청소년 보호
- Hamburg : 이란 프로그램 기본원칙, 청소년 보호, 선거방송 제한, 법적규정
- Hessen : 반론권, 인간의 존엄성, 윤리관, 종교관, 세계관, 무력과 포르노금지, 전쟁 찬양금지, 인종차별 금지
- Niedersachsen : 법률적 규정, 인간의 존엄성, 무력과 포르노금지, 전쟁찬양 금지, 인종차별금지, 청소년 보호, 개인의 명예훼손
- Nordrhein-Westfalen : 진리와 사실에 입각한 광범위한 정보의 의무, 반론권, 인간의 존엄성, 윤리적·종교적 신념, 형법
- Rheinland-Pfalz : 연방헌법규정, 민주 사회적 법치주의국가, 종료윤리, 청소년 보호, 저작권
- Saarland : 광범위한 진리에 입각한 정보, 인간의 존엄성, 종교윤리, 청소년 보호, 형법
- Schleswig-Holstein : 인간의 존엄성, 일반프로그램 기본원칙, 폭력과 포르노금지, 인종차별

### (2) 허가의 철회 및 취소

방송사업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의 철회>

- 허가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방송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 방송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 \* 근거법: BadWüttMediG 제33조 제1항 제5호; BayMG 제26조 제5항; BremLMG 제16조; NdsMedG 제13조 제2항; NWLMG 제8조 이하와 제120조; SaarlMedG 제48조; SähsPRG 제41조; SchlHolstLRG 제20조 제2항; Wolff/Bachof, Verwaltungsrecht I, § 53

### <허가의 취소>

- 허가신청자가 기망, 헐박, 또는 여타의 위법수단을 이용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요청이 있는 후에도 당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 근거법: BremLMG 제15조; NdsMedG 제13조 제1항; NWLMG 제119조; SaarlMedG 제48조; SähsPRG 제40조; SchlHolstLRG 제20조 제1항; Wolff/Bachof, Verwaltungsrecht I, § 53

## 5. 프랑스의 허가 및 검사제도

### 가. 허가 관련 규정

프랑스의 방송허가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자유법(1989년 1월 17일 법), 제1장 제1절21조-43-10조에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의 방송허가는 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의해 입찰의 과정을 거쳐 '협약'(convention)을 맺는 허가제와 신고(déclaration)를 하는 신고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상파를 통한 민영 전국(nationales), 지역(regionales), 지방(locales)채널과 민영 AM, FM 라디오는 입찰을 통해 CSA에 의해 허가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지상파 공영방송인 France 2, France 3, France4, France 5와 RFO, Arte의 경우 입찰 과정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사용의 허가는 입후보자들의 입찰 과정과 협약(convention)없이 CSA로부터 직접 부여된다(하윤금, 2005).

### 나. 허가 절차

#### (1) 허가 신청

프랑스의 민영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의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의 허가는 입찰과정을 통하여 허가권을 부여한다. 우선 CSA는 신청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주와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 후 방송사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때 각 입찰 후보자들을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포하며 이것으로부터 허가 절차를 시작한다.

#### (2) 허가 심사

프랑스는 방송은 a.지상파 전국/지역 텔레비전과 b. 임시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의 허가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 a. 지상파 전국/지역 텔레비전

1986년 9월 30일 개정법 제 30조 86-107항에 따라 지상파 아날로그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의 신설은 입후보자의 입찰을 통한 CSA의 허가권 발급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후보자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후보자의 경력
- 신문사와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이의 광고 수익원의 분배 가능성에 따른 재정과 서비스 개발 능력
- 1개 혹은 여러 개의 광고 주주, 혹은 1개나 여러 개의 신문사 출판 편집 기업에 직, 간 접으로 참여한 후보

한편 2000년 8월 1일 법의 제2000-719조에는 CSA가 지역 채널의 신설 계획이 실현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정치와 일반 정보의 방송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 기업이나 공영 서비스 단체일 경우, 의견과 의사의 다원주의적인 특성, 정보의 진실성과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독립성 보장
- 지역에서 실현된 프로그램 제작에의 공헌입후보자들의 입찰 과정에 따라 CSA는 탈락한 후보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 정치와 일반 정보의 방송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 기업이나 공영 서비스 단체일 경우, 의견과 의사의 다원주의적인 특성, 정보의 진실성과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독립성 보장
- 지역에서 실현된 프로그램 제작에의 공헌 입후보자들의 입찰 과정에 따라 CSA는 탈락한 후보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 b. 임시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

임시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의 허가는 1994년 2월 1일 법에 CSA가 입찰과정을 담당한다. CSA는 1986년 9월 30일 법 제28-3조에 의거하여 기간이 9개월이 넘지

않는 한시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CSA의 위원장에게 허가 요구가 의뢰되어야 하며 청구에 대한 예심은 주파수원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서비스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는 직접 요청이 있어야 한다. CSA의 담당부서와 지역 텔레비전 공동 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예심이 끝난 후 CSA의 전체 총회인 상임위원회에서 허가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한시적 채널 설립의 목적
- 한시적 채널의 구조에 대한 법적 형태(협회의 구성과 위상 등), 구청에 신고 된 협회의 내용.
- 편성의 기술적 조건들
- 편성내용
- 재정: 전체 기간동안의 예측된 전체 예산

방송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할 수 없다.

**입찰 불가능한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 28-1조)**

- 국가가 기존 채널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수신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헌법이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조항, 방송법 조항에 기초하여 벌금형,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재허가(허가 갱신)가 국가나 지방 및 지역의 차원에서 다원주의 원칙을 해칠 수 있는 경우
- 채널의 재정상태가 충분히 적합한 조건 속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000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됨)
- 라디오 방송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

**(3) 허가권의 결정**

**a. 지상파 전국/지역 텔레비전**

CSA는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한 후에 전체 총회를 소집하고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허가권의 결정은 신청자와 CSA의 협정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관보에 공표하고 부가서류에 허가의 기술적 요건과 협약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CSA는 채택된 사업자들과의 협약과정이 결론에 이르면 라디오의 경우 최대 5년,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허가권을 발급한다.

#### **b. 임시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

허가권의 결정은 신청자와 CSA와의 협약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 내용의 요약문을 약식으로 관보에 공표한다. 허가 기간의 만료 시에 담당장은 CSA에 한시적 텔레비전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한다. 한시적 텔레비전의 허가는 연장할 수 없으며 기존사업자에 의해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CSA에 기존 허가의 결산서가 제출되어 있는 동안에 합리적으로 새로운 한시적 채널의 허가 기간을 조정해서 정한다.

### **다. 방송국 관련 기타 절차**

#### **(1) 재허가**

프랑스는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CSA는 후보자 입찰과정을 통해서 허가된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 사용권한을 주는 방송 허가권과 재허가권을 동시에 가진다. CSA에 갱신되는 허가기간은 최초 허가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은 10년을 넘길 수 없고, 라디오 방송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재허가의 경우 1994년 2월 1일자 법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채널에 한하여 CSA가 한번에 5년씩 두 번까지 허가를 자동으로 갱신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런 준 자동 갱신의 경우 해당 방송사가 이 갱신의 원칙을 어길 경우 허가 만료 전 1년 전에 CSA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 (2) 공청회와 협약의 재조정

CSA가 재허가 가능성을 출판물의 형태로 공표한 후 1개월 내에 당사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때 제3자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다. 이 과정이 끝난 후, CSA와 해당방송사는 협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협상과정을 통해 협약 내용에 있어 허가 기간 6개월 이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DSKG을 경우 입찰 제외 대상자로서 재허가를 얻을 수 없다. CSA는 주파수를 사용할 입후보자들의 입찰과정을 시행하여 주파수를 다시 배분한다.

## (3) 허가 불허 및 취소

1991년 7월 31일 법에 의해 CSA는 재허가 불허 결과에 따라 법적 청산이나 상사 법원에 의한 양동의 경우, 허가 당사자의 법인이 사라진 경우에 발급된 허가의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그밖에 CSA의 동의가 유효하고 상사 법원의 연장 계획이 내려진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되고 허가가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경우 허가 당사자는 주주가 변경되어 존재한다.

기존 허가자의 본질적인 변경, 주주나 지도부 조직의 변경, 재무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 심사없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가 불허되거나 취소된 경우 CSA에 의해 재허가를 취득하지 ATH하게 되고 이 경우 채널은 회수되어 CSA에 의해 재입찰에 붙여진다.

## IV. 국내외 허가 및 검사제도 비교

### 1. 허가 구조 및 체계

한국과 일본, 미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 구조 및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방송법과 전파법을 중심으로 방송 허가에 대한 전반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 허가에 대한 규율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양국은 유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국 및 일본과는 다른 방송 시장의 성격과 관련 법체계를 가지고 방송 허가 및 재허가를 규율하고 있어, 미국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FCC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은 1800여국이며, 이 중 상업방송국이 1400여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업 방송국 중 80% 이상이 ABC, CBS, NBC, FOX로 소위 4대 네트워크 및 후발 상업 방송사업자인 CW, myTV, Pax의 각 네트워크 직영 방송국 또는 별도의 텔레비전 소유회사가 소유하는 가맹국이다. 1,800여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출력이 큰 대출력 방송국으로 환산한 규모이며, LPTV, ClassA 방송국, Translator 사업자 등을 모두 합치게 된다면 약 2만 7천여 개의 방송국이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방송국 중 상당수가 상업방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출력 방송국, 지역 방송국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은 국내와는 시장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 방송 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은 공영 방송사인 KBS와 민영 방송사인 SBS,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중간 구조를 갖고 있는 MBC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체별 방송국 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 1,200개의 방송국 및 방송 보조국이 허가되어 있다. 국내 방송국, 즉 연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방송국의 경우 전국으로 63개의 방송국이 허가되어 있다.

미국의 1,800여국의 대출력 방송국과 비교해 본다면 63개 방송국은 그 숫자가 미미하며, 방송의 출력 및 사용 주파수 등 방송국의 운영에 있어서의 공익성을 고려

해 국내에서는 ‘검사’라는 제도로 방송국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Telecommunication Act(1996)에 의하여 재허가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었다곤 하지만, 매달 수십 개의 방송사 재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FCC로서는 인력이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이들 재허가 대상 기관에 대한 심사 및 분석할 여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FCC는 청원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창신, 2006, p.26).

FCC가 청원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방송국에 대한 출력, 사용 주파수, 시설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또한 FCC의 인력이나 재정적 문제로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미국은 해당 방송국에 대한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방송사에게는 불시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자가 검사리스트(Self Inspection List)’를 제공하여 방송사 스스로 시설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2. 허가 관할 기관 및 관련 법규정

### 가. 관할 기관

한국의 경우 방송국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방송국 허가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에서 방송국 허가를 받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방송국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심사 단계에서 방송법 제10조의 심사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제21조 제1항(무선국의 개설허가)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방송국도 무선국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추가적으로 방송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즉, 전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 중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그 밖의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에서 방송국 허가에 대해 전담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에서부터 면허 신청 심사에 따른 절차, 변경 및 재면허에 이르기까지 방송 허가 관련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우정성(郵政省)에서 방송 허가 업무를 해오던 것을, 2001년 1월 중앙 성정 개편 이후로 총무성에 우정성이 통합되면서 총무성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권한은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의하여 FCC가 갖고 있으며, FCC는 방송에 관한 허가 및 재허가 심사를 1934 Act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1934 Act 301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방당국에 모든 무선 통신 전송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였고, 부여된 면허를 소유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미국의 관할권 안에서 무선국을 활용한 무선 통신 또는 신호를 위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4 Act에서는 정부는 전파의 원활한 통제 및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FCC를 통해 규정한 면허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CC는 방송에 관한 허가 및 재허가 심사를 1934 Act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1934 Act 에서는 FCC의 구체적인 규제 업무는 크게 라디오 방송국 구분, 방송국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발급 받은 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성격 규정, 면허를 발급 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방송지역 등급 구분, 사업자간 전파 간섭 통제, 자격 조건, 준비시설 점검, 호출부호 배정, 준수 규칙 제정의 9가지로 구분된다.

<표 11>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수행기관

구분	수행기관	역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분배</li> <li>· 방송국 허가신청에 따른 제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신청심사, 예비허가, 준공검사, 허가증 교부 등</li> </ul> </li> <li>· 재허가, 변경허가, 허가취소 등 담당</li> </ul>
일본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할당</li> <li>· 방송국 면허신청에 따른 제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신청심사, 예비면허, 낙성검사, 면허교부 등</li> </ul> </li> <li>· 재면허, 면허변경, 면허취소 등 담당</li> </ul>
미국	F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국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성격 규정</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방송지역 등급 구분</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간의 전파 간섭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자격 조건</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준비시설 점검, 방송사 시설규제 조항 준수 여부,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운영 준수 여부</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호출부호 배정</li> <li>·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준수해야 되는 규제 및 통제 규칙 제정</li> </ul>

## 나. 관련 법규정

한국의 경우 방송법과 전파법을 통해 방송 허가 및 검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가진다. 전파법은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며,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무선설비규칙,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 방송법에서는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및 절차, 결정 사유, 허가 취소, 변경허가, 재허가 등을, 전파법에서는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의 개설, 개설 허가, 허가 시 심사사항, 개설 조건, 허가 유효기간, 재허가, 정기검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본 역시 방송법과 전파법을 통해 방송 면허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방송법이 방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파법이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다. 일본 방송법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가지고, 전파법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무선국 허가 절차 규칙, 무선설비 규칙, 무선종사자 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가진다. 일본 방송법 역시 한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송국 개설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대신 방송보급기본계획을 통해 방송국 설치에 관한 지침, 방송의 구분, 방송대상 지역, 방송대상지역별 방송계수의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신 전파법에서는 결격사유, 면허신청에 따른 절차(신청, 신청심사, 예비면허, 준공검사, 면허교부 등), 면허 유효기간, 재면허, 주파수할당계획, 면허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방송국 허가 전반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과는 그 체계에서부터 차이를 가진다. 미국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및 재허가 심사는 대부분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의거 FC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34 Act에 따르면 FCC는 공익과 편의성, 필요성에 따라서 무선국을 분류하고 면허 무선국의 분류별, 분류 내 각 무선국에 부여되는 서비스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무선국 분류별로 주파수대역을 배분하고, 각 무선국에 주파수를 할당하며 무선국이 사용하는 출력과 운영기간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 면허 발급과 관련된 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허가 거부 청원 관련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및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의 방송 허가 및 검사 관련 법규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원화’이다. 국내에서 방송의 허가 및 검사는 방송법과 전파법 모두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이를테면 허가, 재허가, 결격사유, 허가 유효기간 등에 관한 부분은 방송법과 전파법 모두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방송국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룬 방송보급에 대한 기본계획만 방송법을 통해 두고, 실질적인 허가신청 관련 사항 및 절차, 면허변경, 재면허, 면허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전파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Act of 1934를 통해 방송 허가 및 재허가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3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표13>과 같다.

<표 12>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관련 규정 비교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방송법	전파법	방송법	전파법	Communication Act(1934)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li> <li>· 심사기준 및 절차</li> <li>· 결격사유</li> <li>· 허가취소</li> <li>· 변경허가</li> <li>· 재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국개설</li> <li>· 개설 허가</li> <li>· 심사사항</li> <li>· 개설 조건</li> <li>· 유효기간</li> <li>· 재허가</li> <li>· 정기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보급기본계획</li> <li>- 방송국 설치에 관한 지침</li> <li>- 방송구분</li> <li>- 방송대상 지역</li> <li>- 방송대상 지역별 방송계 수의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할당 계획</li> <li>· 결격사유</li> <li>· 면허신청에 따른 절차</li> <li>- 신청</li> <li>- 신청심사</li> <li>- 예비면허</li> <li>- 낙성검사</li> <li>- 면허교부</li> <li>· 유효기간</li> <li>· 재면허</li> <li>· 면허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국 분류</li> <li>· 무선국별 서비스성격 규정</li> <li>· 주파수 할당</li> <li>· 방송국 면허 발급</li> <li>· 재허가 거부 청원</li> </ul>

### 3. 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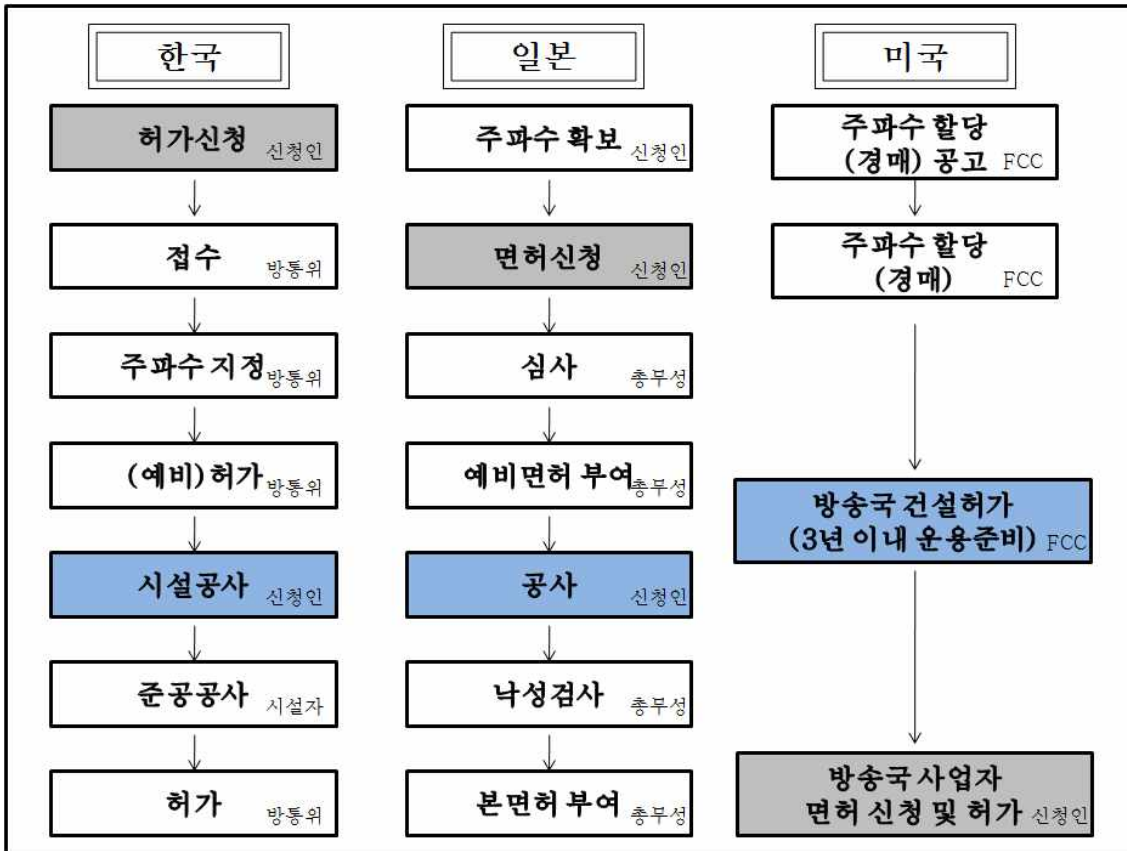
한국·일본·미국 3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한국의 경우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여 필요시 주파수 지정을 한다. 이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인가를 내면, 사업자는 시설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를 필하면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방송국을 운용하며 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총무성에서 주파수를 확보한 후 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적격 판정이 나면 이에 대한 예비면허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시설공사를 실시한다. 설비된 시설에 대해 총무성에서 낙성검사를 하고, 검사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본면허가 부여되며, 면허를 받은 방송국은 방송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FCC가 공고 후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 낙찰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에 사업자는 방송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방송국 건설에 들어가며, FCC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방송시설 및 기술이 표준 규격을 준수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건축허가서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방송국 및 방송시설 건축을 완료하고 방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가 허가를 필하면 방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림 8>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절차 비교



한국·일본·미국의 방송 허가에 대한 일괄 절차를 살펴보면, 한국이 주파수 지정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하는데 비해, 일본과 미국은 주파수 확보(할당) 이후에 할당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절차별 비교를 통해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일본과 미국이 주파수를 확보한 이후 방송 허가에 대해 일정한 기한을 두고 사업자에게 허가신청을 받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수시로 사업자가 방송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해 주파수를 지정하는 절차를 보이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파수 할당이 경매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 방송국 건설허가를 하고 방송국 사업허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이 주파수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이 있는지, 지정 후에 허가 신청이 있는지에 차이 외에 거의 유사한 허가 절차를 보이는데 비해, 미국은 건설허가가 사업허가보다 먼저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허가에 있어 각국의 절차 단위별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가. 주파수 지정 방식

한국·일본·미국의 주파수 할당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파수 경매’에 관련된 것이다. 3국 중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미국만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 중이다. 1999년까지 미국에서는 선착순, 공개추첨, 비교청문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발해 왔으나, 1999년 이후 상업방송에 대한 주파수 경매제를 본격 도입하였다. 현재 주파수 경매는 경매 신청서와 입찰 선금을 납부하는 라운드 방식의 경매시스템(ISAS: Integrated Spectrum Auction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방송은 점수제(Point System)를 통해 최고득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표13> 한국·일본·미국의 주파수 지정 관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경매 여부	X	X	O
주체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총무성	FCC
법적 근거	전파법 제12조	전파법 제26조 (주파수 할당 계획)	CFR 47.§73.7003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li> <li>·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li> <li>·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li> <li>· 할당하려는 주파수 특성</li> <li>· 그 밖의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국 설치지침</li> <li>· 방송대상 지역</li> <li>·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고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거주자(가산점)</li> <li>· 소유다양화(가산점)</li> <li>· 주단위 네트워크(가산점)</li> <li>· 기술적 요건(가산점)</li> </ul>

한국·일본·미국의 주파수 지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전파법 제12조에 의거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그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본다. 이에 일본에서는 방송국 설치지침, 방송대상 지역,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를 하는데 있어,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지역에 다른 방송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쟁사업자에 비해 10% 이상 많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매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 다른 방송 소유가 적은 사업자 등 일정 조건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 **나. 허가 세부 사항**

### **(1) 허가 신청기간**

한국이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로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일본과 미국은 일정 기간 허가 신청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무선국은 상시로 면허 신청을 받고 있으나 통신사업 및 방송국은 이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이 희소하고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인 까닭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여유 주파수 대역에 대해 경매 공고를 내고 이에 대한 경매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있어, 그에 따른 일정한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 **(2) 허가 신청사항**

한국·일본·미국 3국의 허가 신청사항은 큰 틀 안에서 대동소이하다. 신청사항의 경우 크게 신청자나 신청사업자의 정보, 사업계획 관련 정보, 시설 및 장비 관련 정보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신청인 관련사항, 사업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무선설비 공사비, 무선국 운용비 지불법,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전망,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신청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청자 일반정보, 사업자의 법적 자격,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3) 허가 심사기준

심사기준 역시 한국·일본·미국 모두 주파수 할당여부, 방송국 개설에 있어서의 공익성 및 결격사유 등의 규정 등이 포함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주파수 지정 여부, 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인력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 방송국 개설조건 등이, 일본의 경우 기술기준, 주파수 할당 가능여부, 재정적 기초, 표현의 자유향유기준,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등이, 미국은 신청자 및 방송국 일반정보, 사업자 법적 정보, 기술 및 시설정보 등을 허가 심사 시 보고 있다.

<표 14>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신청 관련사항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법적 근거	방송법, 전파법	방송법, 전파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일정 기간 공시 후 신청	일정 기간 공시 후 신청 (주파수 경매 공고)
신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관련사항</li> <li>· 사업계획서</li> <li>· 시설설치계획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설비 공사비</li> <li>· 무선국 운용비 지불법</li> <li>· 사업계획·사업수지전망</li> <li>·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일반정보</li> <li>· 사업자의 법적 자격</li> <li>· 기술적인 세부사항</li> </ul>
허가시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지정 여부</li> <li>· 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li> <li>· 인력 자격·정원배치기준</li> <li>· 방송국 개설조건</li> <li>· 기타 전파법 규정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법 의거 기술기준</li> <li>· 주파수 할당 가능</li> <li>· 재정적 기초</li> <li>· 표현의자유향유기준</li> <li>· 방송국개설의근본적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방송국 일반정보</li> <li>· 사업자 법적 정보 관련</li> <li>· 기술 및 시설정보(채널, 주파수, 시설 규정 등)</li> </ul>

## 4. 재허가 및 정기검사

### 가. 재허가 비교

#### (1) 법적 근거 및 재허가 방식

한국의 경우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재허가 기준이 신규허가의 그것과 크게 차이 없는 가운데 전파법 제15조에 의거 간이한 면허 절차로 진행 가능하다면, 미국의 경우는 재허가 거부 청원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해당 방송지역 주민이나 단체에게 특정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 (2) 유효기간

미국의 경우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의거 3년의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1981년 텔레비전은 5년, 라디오는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96년에 이르러서는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에 의거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방송 허가 유효기간을 8년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적용해오고 있다. 일본 방송국의 경우 전파법 제13조에 의거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1항 제3호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 15> 한국·일본·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관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법적 근거	방송법 제17조	전파법 제15조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유효 기간	3년	5년	8년
재허가 방식	재허가	재허가 (간이한 절차)	8년 (재허가 거부 청원제도)
재허가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li> <li>·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li> <li>·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li> <li>· 경영계획의 적절성</li> <li>· 재정 및 기술적 능력</li> <li>· 방송발전 지원계획</li> <li>· 기타 사업수행 필요사항</li> <li>· 방통위의 방송평가</li> <li>· 시정명령 회수 및 그에 대한 불이행 사례</li> <li>· 시청자위원회의 방송 프로그램 평가</li> <li>·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li> <li>·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여부</li> <li>·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li> <li>· 주파수 지정 가능여부</li> <li>· 무선설비가 무선설비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면허와의 차이없음</li> <li>· 전파법 제15조에 의거 간이한 면허절차로 진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동안 공익의무, 방송 관련 법률 준수에 따른 기본조건 만족 시 재허가 보장</li> <li>· 공익의무조항 (재허가 거부 청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요구에대한조치</li> <li>- 교육 및 정보 관련</li> <li>- 비속, 외설방송 금지</li> <li>- 텔레비전 광고</li> <li>- 정치 입후보자</li> <li>- 공정보도원칙</li> <li>- 자막 방송 요건</li> <li>- 연주소 위치 및 Inspection 파일</li> <li>- 동등 취업기회 원칙</li> </ul> </li> </ul>



### (3) 재허가 시 심사기준

한국의 경우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결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재허가 시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일본의 경우 전파법 제15조에 의거 간이한 절차로서 재허가를 실시하며, 이 때 심사기준은 신규허가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재허가이다.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공익·편의·필요성에 의거 방송사업을 하였고, Telecommunication Act 및 FCC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남용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허가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방송 재허가를 함에 있어 가장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면허 갱신 거부 청원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한 번에 엄청난 수의 방송 재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FCC로서는 인력이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이들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심사 및 분석을 모두 할 여력이 없는데다, FCC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방송국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에 의한 면허 갱신 거부 청원제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면허 갱신 거부 청원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FCC가 정한 9가지의 공익 의무조항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 교육 및 정보 관련 프로그램 제공, 비속·외설·추잡한 방송 금지, 동등한 취업 기회 원칙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 결과에서부터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방송국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척도를 중심으로 재허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면, 미국의 경우는 방송국이 지켜야 하는 공익 의무조항을 토대로 시청자가 면허 갱신 거부 청원을 통해 방송 재허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하겠다.

## 나. 한국의 정기검사와 미국의 불시검사 항목

한국에서는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에 대해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크게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되는데, 대조검사가 실제 설비가 허가·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라면, 성능검사는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러한 정기검사는 현재 각 지역별 전파관리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대조검사가 시설자,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면, 성능검사는 공중선전력, 주파수, 불요발사, 점유주파수대폭, 등가등방복사전력, 실효복사전력, 변조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CC 내의 Enforcement Bureau가 모든 무선 시설물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선 시설물에 대한 검사 방법은 크게 ABIP(Alternative Broadcast Inspection Program: 선택적 방송국 검사 프로그램)와 SIP(Self Inspection Program: 자가 검사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FCC가 미국 각 주의 방송관련기구와 협력을 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민원 및 특별한 문제 발생 시 법이 준수되는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후자는 FCC에서 방송국 자체 측정을 통해 스스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리스트를 규정해줌에 따라 방송사에게 자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는 불시 검사 항목으로 비상경보시스템의 운영과 작동, 안테나 높이·위치·관리, 송신기의 출력 크기, 할당 주파수대의 사용 여부, Aural Modulation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의 7가지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불시 검사 항목과 한국의 정기 검사 항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불시검사 항목과 정기검사 항목의 비교

구분	미국의 불시검사 항목	한국의 정기검사 항목
유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테나의 높이, 위치, 관리 등</li> <li>· 송신기의 출력 크기</li> <li>· 할당 주파수대의 사용 여부</li> <li>· Aural Modulation 규정준수 여부</li> <li>·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li> <li>·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선 높이, 설치장소(대조검사)</li> <li>· 공중선 전력(성능검사)</li> <li>· 전파형식 및 주파수(대조검사)</li> <li>· 변조직선성(성능검사)</li> <li>· 대역 외 방사강도(성능검사)</li> <li>· 유선방송 측정 및 시험결과의 기록 관리(성능검사)</li> </ul>
차이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작동에 관한 항목</li> </ul>	<b>대조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li> <li>· 무선종사자</li> <li>· 전원설비</li> <li>· 안전시설 등</li> </ul>
		<b>성능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주파수 특성</li> <li>- 영상송신장치의 상·하측파대 강도</li> <li>- 미분이득, 미분위상 등</li> </ul> </li> <li>· 디지털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비트수</li> <li>- 영상신호의 형식</li> <li>- 프로그램 채널 당 영상부호화 목표 비트율 등</li> </ul> </li> </ul>

미국과 한국 검사항목 중 유사한 항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안테나 높이·위치·관리’ 등에 대한 항목은 한국 대조검사 항목의 ‘공중선(공중선 높이가 허가증 또는 공사설계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설치장소(증빙서류와 공중선이 설치된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과 유사하다. 안테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한국의 정기검사 항목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미국 ‘송신기의 출력 크기’ 항목은 한국 성능검사의 ‘공중선전력(공중선전력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항목과 유사점을 보인다. 셋째, 미국 ‘할당 주파수대의 사용 여부’ 항목은 한국 대조검사 중 ‘전파형식 및 주파수’ 및 ‘주파수허용편차’ 항목과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미국 ‘Aural Modulation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는 한국 성능검사의 ‘변조직선성(변조주파수의 직선 비례여부 측정)’ 항목과 비교 가능하며, 다섯째,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는 성능검사의 ‘대역 외 발사강도(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항목과 비교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는 한국 성능검사의 ‘유선방송 측정 및 시험결과의 기록 관리(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해 매월 측정·시험한 결과를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항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국내와 미국의 검사 항목을 정부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방송 무선국에 대한 검사 항목만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불시검사 항목과 국내 정기 검사 항목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와 미국의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장 구조 차이 라는 항목을 비교 대상에서 고려한다면, 검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방송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2만 7천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모든 방송국을 FCC에서 검사한다는 것은 인력과 재원 모든 측면에서 무리가 가능 사항이다. 이에 미국의 방송 무선국에 대한 검사는 불시검사와 자가 검사(Self- Inspection)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원활한 방송국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는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성되어 방송국의 방송 운영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자가 검사(SIP)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7개 부분 10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행정 사항 및 기술 이외 사항들, 안테나 구조, Emergency Alert System에 관한 사항, 방송 무선국의 기술적 사항 등 방송 무선국 운용에 필요한 인력 구성, 설비, 주파수의 성능, 전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가 검사라는 것은 미국의 방송 시장 환경 특성상 모든 방송국을 정부에서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시 검사에 대비한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 사업자는 불시검사에 대비하여 방송사업자 자신들의 방송 무선국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국내 대조검사 및 성능검사 항목과 비교하여 본다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설자, 무선 종사자, 전원설비, 안전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대조 검사와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의 주파수 특성과 영상송신장치의 상·하측 파대 강도 등 원활

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과 미국의 자가 검사 리스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언급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 원활한 방송 무선국 운용에 대한 검사 항목은 유사하지만, 두 국가의 방송 시장의 구조 차이로 검사 방법에 있어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방송 무선국에 대한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방송 사업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주고, 불시검사를 통해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국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불시검사 항목이 안테나의 높이 및 위치 등 안테나의 관리와 할당 주파수 대역의 사용 여부, Aural Modulation 규정 준수,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 등 기술적 사항으로 검사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검사 항목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효율적 방송 무선국 운용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관련 하여 국내와 미국을 비교하여 보면, 방송국 운용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항과 그 이외 방송국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 항목은 유사하지만, 방송시장의 차이와 검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검사제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와 미국이 방송국 운용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전파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검사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 1. 방송사업 허가과 방송국 허가의 구분

방송법 제9조는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파법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는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허가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방송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을 비롯하여 사업허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전파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6조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준용하게 된다. 즉,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따라 재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지상파 방송사업은 사업에 대한 허가과 무선국 설비에 대한 허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제작·편성·송출이 일원화된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치 않았으며, 무선국 개설허가가 곧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가 실효성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방송사업의 재허가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같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재허가 기간의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이 경우 방송사업의 재허가와 방송국의 정기검사는 시기적으로도 별개로 진행되게 되었다. 더욱이 향후 제작·분배·전송 분야 사업자의 분화와 다각화, 멀티플렉스 방송의 등장 등으로 방송사업자와 방송국 설비의 소유자가 분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면허와 시설면허의 법제도적 구분과 정비가 필요하다. 즉, 방송사업의 사업면허는 방송법에서 방송의 공익적 기여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사하며, 방송국의 시설면허는 전파법에서 무선국으로서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과 방송국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지상파 방송 시장의 변화나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의 등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불시(不時)검사 제도의 도입

현재 3년을 주기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들이 검사 시기 직전에 무선국 설비에 대한 정비와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전파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방송국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정기검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7개 항목(아래 표 참조)에 대한 불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방송국이 2만 7천여 곳으로 검사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17> FCC의 지상파 TV방송국 기술적 사항 검사 항목 (불시검사)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비상경보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에 운영과 작동에 관한 항목</li><li>(2) 안테나의 높이, 위치, 관리 등에 대한 항목</li><li>(3) 송신기의 출력의 크기</li><li>(4) 할당된 주파수대의 사용여부</li><li>(5) Aural modulation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li><li>(6) Spurious와 harmonic emissions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li><li>(7) 송신장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 기록 여부</li></ol> |
|--|

국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중계국에 대해 무선국 불시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 제24조 제5항에 임시검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국 설비에 대해 검사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불시에 실시하는 검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사항목을 축소하여 실시하는 방안, 그 해 검사 대상 방송국의 일정 비율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 '부적합'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방송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 대상, 검사 항목, 시기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재허가 제도와 연계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대해 일정 기간 결과 후 실시하는 방안이나 검사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파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재허가 기간의 연장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의해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방송법 제9조, 전파법 제19조).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전파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기검사 유효기간 역시 3년이다(전파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44조 제3호).

외국의 사례, 국내 타 매체와의 형평성 측면, 방송사업의 연속성 등에서 지상파 방송국 허가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OECD 국가들의 방송국 허가기간은 5년 내지 10년이다(아래 표 참조).

<표 18> 주요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 허가기간

국가	허가기간	국가	허가기간
미국	8년	일본	5년
영국	10년	프랑스	10년
독일	2~10년(통상5년)*	캐나다	7년
호주	5년	뉴질랜드	20년
노르웨이	10년	핀란드	10년

\* 공영방송은 허가기간에 대한 법률조항이 없으며, 연방·주별로 허가기간이 상이함

IPTV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이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국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개정).



#### 4. 허가 과정의 시청자 의견 제시

방송법 제10조 제2항은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청자 의견 접수 건수가 많지 않아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08년 재허가 심사 시 단 14건만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요지는 경인방송의 Sunny FM을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재허가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항목들(책임·공정성·공익성 등 7개 항목)과 관련한 구체적 의견 제시는 거의 없었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면허갱신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할 권리가 있음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방송지역의 주민이나 단체가 텔레비전 방송국의 면허갱신 신청에 대해 거부를 청원(petition to deny)하거나 비공식적인 반대의사(informal objections)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표 19> 텔레비전 방송국 면허 갱신에 대한 공중 공지 규정

- 텔레비전 방송국은 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이전과 동 문서의 제출 이후에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면허갱신 신청을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함
  - 개별 방송국들은 그들의 면허가 종료되기 전에 면허 종료일, 면허갱신 신청일, 면허갱신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탄원(petition)의 최종 제출 가능일, 그리고 반대탄원의 양식이 담겨있는 public inspection file의 위치 등을 방송해야 함
  - 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제출계획에 대한 최소한 2번의 고지가 저녁 6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출 후에는 3번의 고지가 역시 정해진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함
  - 만약, 해당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 경우(silent TV station)에는 면허갱신 신청서의 제출 이후 최소한 1회 이상 방송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통해서 면허갱신 신청서의 접수를 공고해야 함

국내의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은 재허가 심사의 진행여부 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국이 재허가 절차 진행을 방송으로 직접 공중에게 공지하도록 하여, 공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국의 재허가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재허가 제도의 유연화

### 가. 허가 유효기간의 다변화

허가 유효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사업자도 있다. 예로, GTB는 2004년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으나, 2007년 심사에서도 재허가 추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청문절차까지 거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1년 내지 7년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가 유효기간의 다변화는 사업자의 심사참여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재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심사기준의 매체별 차별적 적용

현행 재허가의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방송법 제17조 제3항의 각호를 근거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방송의 특성에 따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07년 심사의 경우, 사업자별 심사방향 차별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KBS가 재허가 승인을 못 받는 경우 국가기간방송 및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이 사라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특성에 따라 곧 중앙과 지역, 공영과 민영,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등에 따라 심사항목이나 배점 등에 차별화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6. 검사인력 교육체계 마련

현재 검사인력에 대한 교육은 선임자에 의한 현장전수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실제 방송국 설비에 대한 검사 현장에서 선임자의 검사 실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사 절차와 기술을 습득한다. 현장교육(on-the-job training)은 실제 검사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반면,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수검상황에 있는 방송국 담당자가 배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임자와 교육생인 초임자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한 때문에 질의응답이나 반복 시연 및 훈련도 거의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방송국의 재허가 검사 주기가 길어지면서 이러한 현장교육의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상파방송국의 허가기간도 5년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즉, 신입 검사원의 경우 지상파방송국 검사업무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기회를 갖기 어려우며, 심지어 초임 검사원은 업무배치 후 몇 년간 검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체계적 업무교육 대신 현장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방송국 검사업무 인력의 체계적 재생산은 불가능하다. 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우수 검사 인력은 전수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점차 그 수가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 교육원이 있다. 이 곳에는 ‘방송국 허가·검사’, ‘무선국 허가·검사’등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산업체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사원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교육기간도 3~5의 단기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내용이 강의 위주로 구성되어 실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검사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방송국 송출설비와 검사장비를 포함하는 시연 및 실습 시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설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강사진의 구성과 시설의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과 같은 기존 교육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지역의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국 검사 경험이 많은 검사원을 강사로 확보하여 실습·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신임 검사원들은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국 송출설비와 검사장비 등 실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자유롭게 직원 교육·훈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업무에 대한 인증 내지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연구>

- 강종근 (2005), 미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pp.2~40.
- 김대호 (1995), 방송허가제도의 문제점, 1995년 가을철 한국언론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
- \_\_\_\_\_ (2005), 영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pp.43~78.
- 김동준 (2007), 방송사 재허가 심사, 개선되어야 할 과제,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20호, 열린미디어연구소, pp.110~116.
- 김보민 (2009), FCC의 방송 사업자규제와 소비자 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분석,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1호 통권 464호(2009. 6.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29~61.
- 김영덕 (2005), 일본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pp.77~128.
- 김창규 (2005), 한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pp.237~290.
- \_\_\_\_\_ (2008), 『방송통신의 융합과 디지털시대의 정보 미디어 법제, 그리고 정책』, 동방문화사.
- 김형성·지성우 (2005), 독일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pp.131~188.
- 방석호 (1995), 『미디어법학』, 법문사.
- 윤성욱 (2007), 재허가 기간 연장 및 평가제 분리 운영 필요, 『방송문화』 제316호 (2007년 12월), 한국방송협회, pp.48~57.
- 이진 (1998), 『전파이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 이희용 (2008), 방송 재허가 결산과 OBS 경인TV 개국: 우여곡절 거쳐 다시 출발선에 서다, 『신문과 방송』 통권 445호(2008년 1월), 한국언론재단, pp.123~126.

- 전혜선 (2008), 방송평가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언론학보』 제52권 1호(2008년 2월), 한국언론학회, pp.193~215.
- 정인숙 (2009),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창신 (2006),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윤금 (2005), 프랑스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pp.189~236.

#### <국내 참고자료>

- 경북채신청 (2005), 『방송국 허가업무 편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2009),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백서』.
- 서울채신청 (2005), 『무선국 기술업무 지침서』.
- 방송위원회 (2005), 『2004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백서』.
- 방송통신위원회 (2008), 『200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백서』.
- 방송통신위원회 (2009),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 방송통신위원회 (2009), 『200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 <외국 법 및 참고자료>

- 일본 방송법(放送法) (昭和25法律132)
- 일본 전파법(電波法) (昭和25法律131)
- 일본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平成二十年三月二十六日總務省令第二十九号)
- 미국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http://www.criminalgovernment.com/docs/61StatL\\_101/ComAct34.html](http://www.criminalgovernment.com/docs/61StatL_101/ComAct34.html))
- 미국 통신법(Telecommuniucation Act of 1996)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47. Telecommunication  
(<http://www.gpoaccess.gov/CFR/>)

영국 방송법 : 1996년, 방송위원회 (1998)

영국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of 2003)

독일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fStV)

프랑스 방송법, 방송위원회 (2000)



## 한국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 관련 법 정리

### 1. 방송법 및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규칙

#### ○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 ①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방송법 시행령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조

①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 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 포함)
3.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 영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 ○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방송법 시행령 제15조(변경허가 등)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
2.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0조

-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6호의 서식과 같다.
- ⑧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아 변경 허가 또는 승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증, 승인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 ①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재허가 등)

-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2조

- ①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9호의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 운용실적서
  2. 시설배치도(시설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② 방송위원회가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재허가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한 재허가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추천 거부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 취소 등)

-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6.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허가·승인·등록 취소 등)

- ①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전파법 및 시행령

○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26조(업무의 분류)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 전파법 시행령 제27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 ①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45조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 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받은 날
- ④ 제1항에 따른 재허가나 재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이동국, 육상국 등의 무선국 이외의 방송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지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전파법 시행령 제38조(재허가)

-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 전파법 제24조(검사)

- ① 제21조 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금치산자·한정치산자, 죄인 등은 부적합) 지체 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① 법 제24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날
  -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정기검사의 시기·방법)**

-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②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성능검사 :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불요발사)·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 ③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교부한다.
- ⑤ 법 제2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전파법 제34조(방송국 개설허가)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전파법 시행령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 전파법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록 2>

## 일본 방송법 관련 법령 목록

1	放送法 (昭和25法律132)	방송법
2	放送法施行令 (昭和25政令163)	방송법 시행령
3	放送法施行規則 (昭和25電波監理委員會規則10)	방송법 시행규칙
4	有線ラジオ放送業務の運用の規正に関する法律 (昭和26法律135)	유선 라디오 방송 업무 운용 규정에 관한 법률
5	有線ラジオ放送業務の運用の規正に関する法律を施行する規則 (昭和26電波監理委員會規則3)	유선 라디오 방송 업무 운용 규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규칙
6	有線ラジオ放送の設備及び業務に関する届出の特例 (昭和28郵政省令55)	유선 라디오 방송 설비 및 업무에 관한 신고의 특례
7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昭和47法律114)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8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昭和47政令441)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9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昭和47郵政省令40)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10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の設備及び業務に関する届出の特例 (昭和48郵政省令4)	유선 텔레비전 방송 설비 및 업무에 관한 신고 특례
11	電氣通信役務利用放送法 (平成13法律85)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법
12	電氣通信役務利用放送法施行令 (平成14政令17)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법 시행령
13	電氣通信役務利用放送法施行規則 (平成14總務省令5)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법 시행규칙
14	放送法第53條第1項に規定する放送番組センターを公示する省令 (平成13總務省令62)	방송법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센터를 공시하는 성령

## 일본 방송국 개설 관련 방송법 규정

<p><b>第二條 (定義)</b> この法律及び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の解釋に關しては、次の定義に従うものとする。</p>	<p><b>제2조(정의)</b>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명령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p>
<p>一 「放送」とは、公衆によつ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無線通信の送信をいう。</p>	<p>1. “방송”이란 공중에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p>
<p>二の三 「中波放送」とは、五百二十六・五キロヘルツから千六百六・五キロヘルツまでの周波數を使用して音聲その他の音響を送る放送をいう。</p>	<p>2의3. “중파방송”이란 526.5kHz에서 1606.5kHz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음성 기타 음향을 송출하는 방송을 말한다.</p>
<p>二の四 「超短波放送」とは、三十メガヘルツを超える周波數を使用して音聲その他の音響を送る放送（文字、図形その他の影像又は信号を併せ送るものを含む。）であつて、テレビジョン放送に該当せず、かつ、他の放送の電波に重疊して行ふ放送でないものをいう。</p>	<p>2의4. “초단파방송”이란 30MHz 초과 주파수를 사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송출하는 방송(문자, 도형 기타 형상 또는 신호를 함께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써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다른 방송 전파와 중첩하여 행하는 방송이 아닌 것을 말한다.</p>
<p>二の五 「テレビジョン放送」とは、静止し、又は移動する事物の瞬間的影像及びこれに伴う音聲その他の音響を送る放送（文字、図形その他の影像（音聲その他の音響を伴うものを含む。）又は信号を併せ送るものを含む。）をいう。</p>	<p>2의5.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하거나 이동하는 사물을 순간적인 영향과 그에 수반하는 음성 기타 음향을 송출하는 방송[문자, 도형 기타 영상(음성 기타 음향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호를 함께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二の六 「多重放送」とは、超短波放送又はテレビジョン放送の電波に重疊して、音聲その他の音響、文字、図形その他の影像又は信号を送る放送であつて、超短波放送</p>	<p>2의6. “다중방송”이란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의 전파에 중첩되어 음성 기타 음향, 문자, 도형 기타 영상 또는 신호를 송출하는 방송으로서 초단파방송 또는 텔</p>

<p>又はテレビジョン放送に該当しないものをいう。</p>	<p>레비전방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p>三 「放送局」とは、放送をする無線局をいう。</p>	<p>3. “방송국”이란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p>
<p>三の二 「放送事業者」とは、電波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三十一号）の規定により放送局（受信障害対策中継放送（同法第五條第五項に規定する受信障害対策中継放送をいう。以下同じ。）を行うものを除く。）の免許を受けた者、委託放送事業者及び第九條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委託國內放送業務又は委託協會國際放送業務を行う場合における協會をいう。</p>	<p>3의2. “방송사업자”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수신장애대책중계방송을 행하는 것은 제외)의 면허를 받은 자, 위탁 방송사업자 및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위탁국내방송 업무 또는 위탁 협회 국제 방송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협회를 말한다.</p>
<p>四 「放送番組」とは、放送をする事項（その放送が受託放送であるときは、委託して放送をさせる事項）の種類、内容、分量及び配列をいう。</p>	<p>4. “방송 프로그램”이란 방송을 하는 사항(그 방송이 수탁방송일 때는, 위탁하여 방송을 하게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및 배치를 말한다.</p>
<p><b>第二條之二（放送普及基本計畫）</b> 總務大臣は、放送（委託して放送をさせることを含む。次項第一号、第七條、第九條第一項第三号、第二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並びに第六項、第三十四條第一項、第五十二條の十三第一項第四号並びに第五十三條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計畫的な普及及び健全な發達を図るため、放送普及基本計畫を定め、これに基づき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p>	<p><b>제2조의2(방송보급기본계획)</b> ①총리대신은 방송의 계획적인 보급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보급기본계획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2 放送普及基本計畫には、放送局の置局（受託國內放送及び受託内外放送にあつてはこれらの放送を行う放送局の置局及び委託放送業務とし、受託協會國際放送（電波法の規定による免許を受ける無線局により行われ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p>	<p>② 방송보급기본계획에는, 방송국의 치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p>

<p>同じ。)にあつては受託協會國際放送を行う放送局の置局及び委託協會國際放送業務とする。)に關し、次の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p>	
<p>一 放送を國民に最大限に普及させるための指針、放送をすることができる機會をできるだけ多くの者に對し確保することにより、放送による表現の自由ができるだけ多くの者によつて享有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指針その他放送の計畫的な普及及び健全な發達を図るための基本的事項</p>	<p>1. 방송을 국민에게 최대한 보급시키기 위한 지침, 방송을 할 수 있을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 대해 확보하는 것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향유 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 그 외 방송의 계획적인 보급 및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p>
<p>二 協會の放送(協會の委託により行われる受託國內放送を含む。第三十二條第一項本文において同じ。)、學園の放送又は一般放送事業者の放送(協會の委託により行う受託國內放送を除く。)の區分、國內放送、受託國內放送、國際放送、中繼國際放送、受託協會國際放送又は受託内外放送の區分、中波放送、超短波放送、テレビジョン放送その他の放送の種類による區分その他の總務省令で定める放送の區分ごとの同一の放送番組の放送を同時に受信でき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一定の區域(以下「放送對象地域」という。)</p>	<p>2. 협회(NHK)의 방송, 학원의 방송 또는 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구분, 국내방송, 수탁 국내방송, 국제방송, 중계 국제방송, 수탁 협회 국제 방송 또는 수탁 내외 방송의 구분, 중파 방송, 초단파 방송, 텔레비전 방송 그 외의 방송의 종류에 의한 구분 그 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의 구분마다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구역(이하 「방송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p>
<p>三 放送對象地域ごとの放送系(同一の放送番組の放送を同時に行うことのできる放送局の總体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數(受託放送に係る放送對象地域にあつては、放送系により放送することのできる放送番組の數)の目標</p>	<p>3. 방송 대상 지역마다의 방송계(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송국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 대해 같다)의 수(수탁 방송과 관련되는 방송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방송계에 의해 방송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수)의 목표</p>
<p>3 放送普及基本計畫は、第九條第一項、第二項第一号及び第五項に規定する事項、電波法第七條第三項 の放送用割当可能周波</p>	<p>③ 방송 보급 기본계획은,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전파법 제7조제3항의 방송용 할당 가능 주파</p>

<p>數、放送に關する技術の發達及び需要の動向、地域の自然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諸事情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定める。</p>	<p>수, 방송에 관한 기술의 발달 및 수요의 동향, 지역의 자연·경제·사회·문화적 제반사정 기타 사정을 감안해 정한다.</p>
<p>4 總務大臣は、前項の事情の変動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放送普及基本計畫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p>	<p>④ 총무대신의 전항의 사정에 변동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보급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5 總務大臣は、放送普及基本計畫を定め、又は変更したときは、遲滯なく、これ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⑤ 총무대신은 방송보급기본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 일본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p>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平成二十年三月二十六日總務省令第二十九号)</p> <p>最終改正：平成二一年二月二〇日總務省令第一二二号</p> <p>電波法 (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三十一号) 第七條第二項第四号の規定に基づき、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目的)</p> <p><b>第一條</b> この規則は、放送局(放送試験局、放送衛星局、放送試験衛星局及び放送を行う實用化試験局(電氣通信業務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を除く。))を含み、受信障害對策中継放送、受託國內放送、受託協會國際放送、受託内外放送、多重放送又は臨時目的放送を専ら行うものを除く。以下同じ。)に關す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原則)</p> <p><b>第二條</b> 放送局(人工衛星の無線局を除く。第四項を除き、以下同じ。)は、放送をすることができる機會をできるだけ多くの者に對し確保することにより、放送による表現の自由ができるだけ多くの者によって享有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次の各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が開設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p>	<p>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평성20년 3월 26일 총무성령 제29호)</p> <p>최종개정 : 평성 21년 2월20일 총무성령 제 12호</p> <p>「전파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목적)</p> <p><b>제1조</b> 이 규칙은 방송국[방송시험국, 방송 위성국, 방송시험위성국 및 방송을 행하는 실용화시험국(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고, 수신장해대책중계방송, 수탁국내방송, 수탁협회국제방송, 수탁내외방송, 다중방송 또는 임시목적방송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원칙)</p> <p><b>제2조</b> ① 방송국(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제외한다. 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확보되고 이를 통해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의해 향유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개설되어야 한다.</p>
--	---

一 その局以外の放送局に係る一般放送事業者（以下この條及び第七條において「一般放送事業者」という。）

二 一般放送事業者を支配する者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により支配される者

2 放送局の開設は、その局の申請者（その局の免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をいう。以下同じ。）、これを支配する者又はこれらにより支配される者であって衛星放送業務（放送法施行規則（昭和二十五年電波監理委員會規則第十号）第十七條の八第三項第四号に規定する衛星放送業務をいう。）を行う者が同條に規定する基準に適合しない場合における当該申請者以外の者が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おいて支配とは、放送法施行規則第十七條の八第三項第七号に規定する支配をいう。

4 放送局であって放送法施行規則第十七條の八第三項第二号に規定する特別衛星放送又は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一般衛星放送に係るものに關す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については、それぞれ同條第一項又は第二項に規定する基準を準用する。

（中波放送等とテレビジョン放送に係る特例）

**第三條** 前條第一項の規定は、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その局の放送に係る放送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三十二号）第二條の二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放送對

1. 그 국 이외의 방송국과 관련한 일반방송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일반방송사업자”라 한다)

2. 일반방송사업자를 지배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

② 방송국의 개설은, 그 국의 신청자(그 국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를 지배하는 자 또는 이에 의해 지배되는 자로서 위성방송업무(「방송법 시행규칙」 제17조의8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방송업무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가 「방송법 시행규칙」 제17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 이외의 자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지배”란 「방송법 시행규칙」 제17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④ 방송국으로서 「방송법 시행규칙」 제17조의8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 위성방송 또는 제17조의8제3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위성방송국과 관련된 것에 관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제17조의8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한다.

（중파방송 등 및 TV방송과 관련한 특례）

**제3조** 제2조제1항의 규정은,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그 국의 방송과 관련되는 「방송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대상지역(이하 “방송대상지역”

象地域（以下「放送対象地域」という。）において、申請者が中波放送又は超短波放送に係る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者及びテレビジョン放送に係る同項各号に掲げる者となる場合は、適用しない。

**第四條** 前條の規定は、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その局の放送に係る放送対象地域において、一の者が中波放送又は超短波放送に係る第二條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テレビジョン放送に係る同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及び新聞社を經營し、又は支配する者とな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放送対象地域において、他に一般放送事業者、新聞社、通信社その他のニュース又は情報の頒布を業とする事業者がある場合であって、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その一の者（その一の者が支配する者を含む。）がニュース又は情報の獨占的頒布を行うこととな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連続放送対象地域に係る特例）

**第五條** 第二條第一項の規定は、隣接して連続する複数の放送対象地域（以下「連続放送対象地域」という。）のうちの一の放送対象地域にテレビジョン放送（縣域放送（放送法施行規則 別表第一号（注）十三の縣域放送をいう。）に限る。以下この條において同じ。）を行う放送局を開設しようとする場合であって、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連続放送対象地域の各放送対象地域（申請者が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放送局を開設しようとする放送対象地域を除く。）において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

이라 한다)에 있어, 신청자가 중파방송 또는 단파방송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이거나 TV방송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제3조의 규정은,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그 국의 방송과 관련한 방송대상지역에 있어 1인이 중파방송 또는 초단파방송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TV방송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신문사를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해당 방송대상지역에 있어 다른 일반방송사업자, 신문사, 통신사 그 밖에 뉴스 또는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이며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그 1인(그 1인이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뉴스 또는 정보의 독점적 배포를 행할 우려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속방송대상지역에 관한 특례）

**제5조**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인접하여 연속되는 복수의 방송대상지역(이하 “연속방송대상지역”이라 한다) 중 1개의 방송대상지역에 TV방송[縣域방송(「방송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注 13의 縣域방송을 말한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연속방송대상지역의 각 방송대상지역(신청자가 TV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방송 대상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TV방송을 실시하는 일반방송사

一般放送事業者（各放送対象地域ごとに一の一般放送事業者に限る。以下この條及び第十二條第二号において「特定一般放送事業者」という。）の各々と申請者との間で、申請者が次に掲げる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となる場合は、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申請者及び特定一般放送事業者に係る放送対象地域からなる連続放送対象地域が、当該連続放送対象地域のうちの一の放送対象地域に当該連続放送対象地域の他のすべての放送対象地域が隣接する位置関係にある場合又は当該位置関係と同程度に地域的関連性が密接であるものとして總務大臣が告示する地域に該当する場合に限る。

一 特定一般放送事業者の放送局に係る第二條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者

二 二の一般放送事業者の間においていずれか一方が他方の議決権の五分の一以上を有する関係又はいずれか一方の議決権の五分の一以上を有する者に他方がその議決権の五分の一以上を保有される関係（以下「議決権の保有関係」という。）を特定一般放送事業者との間において有する者

三 特定一般放送事業者との間に、当該申請者及び特定一般放送事業者と議決権の保有関係を通じて連鎖関係にある一又は二以上の特定一般放送事業者が介在することとなる者

#### 第六條 削除

（自己に屬する他の放送局の放送番組を中継する方法のみにより放送を行う場合に係

業者(각 방송대상지역마다 1인의 일반방송사업자에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2 條에 “특정일반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각각사업신청자와 관계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신청자와 관계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으로신청자 및 특정일반방송사업자와 관련되는 방송대상지역으로부터 되는 연속 방송 대상 지역이, 해당 연속방송대상지역 중 하나의 방송대상지역에 해당 연속방송대상지역의 다른 모든 방송대상지역이 인접하는 위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위치 관계와 동일한 정도로 지역적 관련성이 밀접한 것으로서 총무대신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특정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과 관련된 제2조제1항제1호의 자

2. 2개의 일반방송사업자 간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결권을 5분의 1이상 가지는 관계 또는 일방의 의결권 5분의 1이상을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관계(이하 “의결권보유관계”라고 한다)가 특정일반방송사업자와의 사이에 있는 자

3. 특정일반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신청자 및 특정일반방송사업자와 의결권보유관계를 통해서 연관 관계가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정일반방송사업자가 개입한 자

#### 제6조 삭제

(자기에 속한 타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방법으로만 방송을 행하는 경

る特例)

**第七條** 第二條第一項の規定は、一般放送事業者がその行う放送に係る放送対象地域において自己に屬する他の放送局の放送番組を中継する方法のみにより放送を行う放送局を開設する場合は、適用しない。

(同一市町村の區域におけるコミュニティ放送局に係る特例)

**第八條** 第二條第一項の規定は、コミュニティ放送(放送法施行規則 別表第一号(注)十四のコミュニティ放送をいう。)を行う放送局を開設する場合であって、申請者が、その放送対象地域の全部又は一部を含む市町村の區域の一部を放送対象地域の全部又は一部として開設された他のコミュニティ放送を行う放送局に係る同項各号に掲げる者(当該市町村の區域の一部を放送対象地域の全部又は一部としない他のコミュニティ放送を行う放送局に係る同項各号に掲げる者を除く。)である場合であって、コミュニティ放送の普及等のために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は、適用しない。

(放送の普及等に係る特例)

**第九條** 第二條第一項の規定は、放送の普及等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は、適用しない。

(経営困難等に係る特例)

**第十條** 第二條第一項の規定は、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その局に係る一般

우와 관련한 특례)

**제7조**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일반방송사업자가 그 행하는 방송과 관련한 방송대상지역에서 자신에 속하는 타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방법으로만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市町村 구역에 있어서의 커뮤니티방송국과 관련한 특례)

**제8조**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커뮤니티방송(「방송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注 14의 커뮤니티방송을 말한다)을 행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그 방송대상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市町村 구역의 일부를 방송대상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개설되어진 타 커뮤니티방송을 행하는 방송국과 관련되어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해당 市町村 지역의 일부를 방송대상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는 커뮤니티방송을 행하는 방송국과 관련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커뮤니티방송의 보급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송의 보급 등과 관련한 특례)

**제9조** 제2조제1항의 규정은 방송의 보급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 곤란 등과 관련한 특례)

**제10조**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은,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그 국과 관련된 일반

放送事業者が同項第三号に掲げる者となる場合であっ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又は当該一般放送事業者以外の一般放送事業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同号に掲げる者に係る同項第二号に掲げる者とな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その局に係る一般放送事業者が認定放送持株会社（放送法第五十二條の三十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会社又は認定を受けて設立された会社をいう。以下同じ。）の子会社である場合及びその局に係る一般放送事業者を認定放送持株会社又はその子会社が支配す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自己に屬する放送局の免許の有効期間中に次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こと（当該免許の時より前の時に次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ことがある場合には、第二條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者でなくなった場合に次の再免許の時までに業務を維持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おそれがある財政状態にある場合に限る。）。

イ 会社更生法（平成十四年法律第一百五十四号）の更生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いること。

ロ 民事再生法（平成十一年法律第二百五号）の再生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いること。

ハ 債務超過の状態が二年間継続しており、かつ、債務超過の状態にある事業年度

放送事業者が 第2条第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일반방송사업자 이외의 일반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이 있는 제2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그 국과 관련되는 일반방송사업자가 인정방송지주회사(「방송법」 제52조의30제1항의 인정을 받은 회사 또는 인정을 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회사인 경우와 그 국과 관련되는 일반방송사업자를 인정방송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자기에 속하는 방송국의 면허 유효기간 중에 다음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해당 면허 이전의 면허를 받을 당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바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2条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아니게 되면 다음 재면허때까지 업무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재정 상태에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가. 「회사更生법」의更生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

나. 「민사재생법」의 재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

다. 채무초과 상태가 2년간 계속되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업년도

を含む連続する三以上の事業年度において  
経常損失が生じていること。

二 当該放送局に係る直近の再免許の時に  
前号括弧書に規定する財政状態にある場合  
に該当しており、かつ、同号括弧書に規定  
する財政状態にあ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放送  
局に係る直近の再免許の時に前二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第一号に該当する場  
合には、同号括弧書に規定する財政状  
態にある場合に限る。）ものとして当  
該放送局に係る再免許を受けているこ  
と。

2 第二條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者とな  
る一般放送事業者は当該一般放送事業  
者の、同号に掲げる者となる一般放送  
事業者に係る同項第二号に掲げる者  
となる一般放送事業者は当該同項第  
三号に掲げる者となる一般放送事業  
者の財政状態を証する書類を總務大  
臣に提出し、その財政状態が前項第  
一号ハに掲げる事項に該当しているこ  
とについて、總務大臣の確認を受けら  
れること。

#### 第十一條 削除

（中波放送等とテレビジョン放送に係る特  
例等の例外）

를 포함한 연속하는 3이상의 사업년  
도에 대해 경상손실이 생기고 있는  
것

2. 해당 방송국과 관련되는 바로 직전의  
재면허 시에 제1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재정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었  
고, 제1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재정상태  
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해당 방송국과 관련되는 바로 직전의  
재면허 시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재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방송  
국과 관련한 재면허를 받은 것

②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인  
일반방송사업자는 해당 일반방송사업  
자의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총무대  
신에게 제출하여 그 재정상태가 제1항제  
1호 각 목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총  
무대신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인 일반방  
송사업자와 관련이 있는, 제2조제1항제2  
호에서 규정하는 자인 일반방송사업자  
는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  
인 일반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를 증명  
하는 서류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재정상태가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  
한다는 것에 대하여 총무대신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삭제

（중파방송 등과 TV방송에 관련된 특례  
등의 예외）

**第十二條**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掲げる者に係る第二條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が認定放送持株會社又は一般放送事業者  
に支配される場合は、適用しない。

一 第三條 中波放送又は超短波放送を行い、又は行おうとする者及び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い、又は行おうとする者

二 第五條 同條の申請者及び特定一般放送事業者

三 第八條 同條の申請者及び申請者以外のコミュニティ放送を行う一般放送事業者

(支配)

**第十三條** 第二條第一項及び第三條から第十條までの規定において支配と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爲をいう。

一 一の者が法人又は団体の議決權の十分の一を超える議決權を有すること。

二 一の法人又は団体の役員で他の法人又は団体の役員（監事、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兼ねる者の總數が、当該他の法人又は団体の役員の總數の五分の一を超えること。

三 一の法人又は団体の代表權を有する役員又は常勤の役員が他の法人又は団体の代表權を有する役員又は常勤の役員（監事、

**제12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인정방송지주회사 또는 일반방송사업자에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조 : 중파방송 또는 초단파방송의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자와 TV방송을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자

2. 제5조 : 제5조의 신청자와 특정일반방송사업자

3. 제8조 : 제8조의 신청자와 신청자이외에 커뮤니티방송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지배)

**제13조**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있어서 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인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을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2.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으로서 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감사,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겸하는 자의 총 수가 해당 타 법인 또는 단체 임원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 또는 상근임원이 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除く。)を兼ねること。

2 申請者が第二條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その局の放送に係る放送対象地域と、自己に屬する他の放送局の放送に係る放送対象地域とが重複しない場合においては、前項第一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支配とは一の者が法人又は団体の議決権の五分の一以上を有することとする。ただし、申請者が連続放送対象地域(当該連続放送対象地域の各放送対象地域が關東廣域圏(茨城縣、栃木縣、群馬縣、埼玉縣、千葉縣、東京都及び神奈川県)の各區域を併せた區域をいう。)以外の放送対象地域である場合に限り、それらの放送対象地域(第五條ただし書に規定する放送対象地域を除く。)の數は七を超えないものとする。)のうちの一の放送対象地域に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放送局を開設しようとする場合であって、その局が開設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連続放送対象地域の各放送対象地域(申請者が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放送局を開設しようとする放送対象地域を除く。)において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一般放送事業者(各放送対象地域ごとに一の一般放送事業者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一般放送事業者」という。)の各々と申請者との間に、直接、議決権の保有關係があるか、申請者及び特定一般放送事業者と議決権の保有關係を通じた連鎖關係にある一又は二以上の特定一般放送事業者が介在している場合(特定一般放送事業者が認定放送持株會社の子會社である場合を除く。)、支配とは一の

임원 또는 상근임원(감사,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겸하는 경우

② 신청자가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인 경우 그 국의 방송 관련 방송대상지역과 자기에 속하는 다 방송국의 방송 관련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배는 1인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단, 신청자가 연속방송대상지역[해당 연속방송대상지역의 각 방송 대상 지역이 관동 광역권(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및 카나가와현의 각 구역을 합친 구역을 말한다.) 이외의 방송 대상 지역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러한 방송대상지역(제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방송대상지역을 제외한다)의 수는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중 하나의 방송대상지역에 TV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국이 개설되는 것으로서, 해당 연속방송대상지역의 각 방송대상지역(신청자가 TV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방송대상지역을 제외한다)에 있어 TV방송을 실시하는 일반방송사업자(각 방송대상지역마다 하나의 일반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특정일반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각각과 신청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으로 의결권의 보유 관계가 있고, 신청자 및 특정일반방송사업자와 의결권의 보유 관계를 통한 연관 관계에 있는 1 또는 2이상의 특정일반방송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특정일반방송

者が法人又は団体の議決権の三分の一以上を有することとする。

**3** 前條の規定において支配と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爲をいう。

一 その認定放送持株會社又は一般放送事業者が、第十二條に規定する第二條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の百分の三十三を超える議決権を有すること。

二 その認定放送持株會社又は一般放送事業者の役員で、第十二條に規定する第二條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の役員（監事、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兼ねる者の總數が、当該第十二條に規定する第二條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の役員の總數の五分の一を超えること。

三 その認定放送持株會社又は一般放送事業者の代表権を有する役員又は常勤の役員が第十二條に規定する第二條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の代表権を有する役員又は常勤の役員（監事、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除く。）を兼ねること。

（中波放送及び超短波放送に係る準用）

**第十四條** 第五條及び前條第二項の規定は、中波放送及び超短波放送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中波放送については、第五條及び前條第二項中「テレビ

사업자가 인정방송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지배는 1인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있어 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그 인정방송지주회사 또는 일반방송사업자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자의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2. 그 인정방송지주회사 또는 일반방송사업자의 임원으로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자의 임원(감사,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하는 자의 총 수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자의 임원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인정방송지주회사 또는 일반방송사업자의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 또는 상근임원이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자의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 또는 상근임원(감사,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겸하는 경우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과 관련한 준용）

**제14조**

ジョン放送」とあるのは「中波放送」と読み替え、超短波放送（コミュニティ放送を除く。）については、第五條及び前條第二項中「テレビジョン放送」とあるのは「超短波放送（コミュニティ放送を除く。）」と読み替え、コミュニティ放送については、第五條中「複数の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複数の都道府縣」と、「連続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連続都道府縣」と、「一の放送対象地域にテレビジョン放送（縣域放送（放送法施行規則（昭和二十五年電波監理委員會規則第十号）別表第一号（注）十三の縣域放送をいう。）に限る。以下この條において同じ。）を行う放送局」とあるのは「一又は二以上の都道府縣に屬する放送対象地域にコミュニティ放送を行う放送局」と、「各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各都道府縣」と、「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とあるのは「コミュニティ放送を行う」と、「放送対象地域を除く。）」とあるのは「放送対象地域の全部又は一部を含む都道府縣を除く。）」と、「放送対象地域からなる」とあるのは「放送対象地域の屬する都道府縣からなる」と、「一の放送対象地域に当該」とあるのは「一の都道府縣に当該」と、「すべての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すべての都道府縣」と、前條第二項中「連続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連続都道府縣」と、「各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各都道府縣」と、「が關東廣域圏（茨城縣、栃木縣、群馬縣、埼玉縣、千葉縣、東京都及び神奈川県各區域を併せた區域をいう。）以外の放送対象地域である場合に限り、それらの放送対象地域（第五條ただし書に規定する

放送対象地域を除く。)の數」とあるのは「(第五條ただし書に規定する都道府縣を除く。)の數」と、「一の放送対象地域」とあるのは「一又は二以上の都道府縣に屬する放送対象地域」と、「テレビジョン放送を行う」とあるのは「コミュニティ放送を行う」と、「放送対象地域を除く。）」とあるのは「放送対象地域の全部又は一部を含む都道府縣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出資者等)

**第十五條** 開設しようとする放送局の主たる出資者、役員及び審議機關の委員は、できるだけその放送に係る放送対象地域に住所を有す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출자자 등)

**제15조**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주된 출자자, 임원 및 심의 기관의 위원은 가능한 한 그 방송과 관련되는 방송대상지역에住所를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부록 5>

## 일본 전파법 관련 법령 목록

1	電波法 (昭和25法律131)	전파법
2	電波法施行令 (平成13政令245)	전파법 시행령
3	電波法施行規則 (抄) (昭和25電波監理委員會規則14)	전파법 시행규칙
4	無線局 (放送局を除く。)の開設の根本的基準 (昭和25電波監理委員會規則12)	무선국(방송국은 제외) 개설의 근본적 기준
5	放送局の開設の根本的基準 (昭和25電波監理委員會規則21)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6	無線局免許手續規則 (昭和25年電波監理委員會規則15)	무선국 허가 절차 규칙
7	登録点検事業者等規則 (平成9郵政省令76)	등록점검사업자등 규칙
8	特定無線局の開設の根本的基準 (平成9郵政省令72)	특정무선국개설의 근본적 기준
9	無線設備規則 (昭和25電波監理委員會規則18)	무선설비 규칙
10	無線機器型式檢定規則 (昭和36郵政省令40)	무선기기 형식검정 규칙
11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等に関する規則 (昭和56郵政省令37)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12	無線従事者規則 (平成2郵政省令18)	무선종사자 규칙
13	無線局運用規則 (昭和25電波監理委員會規則17)	무선국운용 규칙
14	電波法による旅費等の額を定める政令 (昭和25政令173)	전파법에 따른 여비등의 금액 결정에 관한 정령

15	電波監理審議會が行う審理及び意見の聴取に関する規則（平成6郵政省令68）	전파감리심의회가 행하는 심의와 의견 수렴에 관한 규칙
16	電波監理審議會議事規則（昭和27郵政省令24）	전파감리심의회 의사 규칙
17	電波法による伝搬障害の防止に関する規則（昭和39郵政省令16）	전파법에 따른 전파장해의 방지에 관한 규칙
18	測定器等の較正に関する規則（平成9郵政省令74）	측정기등의 교정에 관한 규칙
19	電波法關係手数料令（昭和33政令307）	전파법 관련 수수료령
20	特定周波數変更對策業務に関する規則（平成13總務省令104）	특정주파수변경대책 사무에 관한 규칙
21	電波法に規定する指定機關を指定する省令（平成13總務省令73）	전파법에 규정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22	電波の利用狀況の調査等に関する省令（平成14總務省令110）	전파 이용상황의 조사등에 관한 성령
23	中波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平成4郵政省令4）	중파방송 송신 표준방식
24	超短波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昭和43郵政省令26）	단파방송 송신 표준방식
25	標準テレビジョン放送（デジタル放送を除く。）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平成3郵政省令36）	표준 TV방송(디지털방송 제외) 송신 표준방식
26	標準テレビジョン音聲多重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昭和58郵政省令23）	표준 TV 음성다중방송 송신 표준방식
27	標準テレビジョン文字多重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昭和60郵政省令77）	표준 TV 문자다중방송 송신 표준방식
28	超短波音聲多重放送及び超短波文字多重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昭和63郵政省令25）	초단파 음성다중방송 및 초단파 문자다중방송 송신 표준방식
29	高精細度テレビジョン放送（デジタル放送を除く。）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	HD TV방송(디지털방송 제외) 송신 표준방식

	(平成3郵政省令16)	
30	高精細度テレビジョン音聲多重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 (平成3郵政省令17)	HD TV 음성다중방송 송신 표준방식
31	標準テレビジョン・データ多重放送及び高精細度テレビジョン・データ多重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 (平成6郵政省令47)	표준 TV・data 다중방송 및 HD TV・data 다중방송 송신 표준방식
32	超短波データ多重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 (平成7郵政省令17)	초단파 data 다중방송 송신 표준방식
33	標準テレビジョン放送等のうちデジタル放送に関する送信の標準方式 (平成15總務省令26)	표준 TV방송 등 중 디지털 방송 송신 표준방식
34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平成二十年三月二十六日總務省令第二十九号)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35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の認定放送持株會社の子會社に関する特例を定める省令 (平成二十年三月二十六日總務省令第三十号)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의 인정 방송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성령

<부록 6>

## 일본 방송국 개설 관련 전파법 규정

<p><b>第五條 (欠格事由)</b>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は、無線局の免許を与えない。</p>	<p><b>제5조(결격사유)</b>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면허를 주지 않는다.</p>
<p>一 日本の國籍を有しない人</p>	<p>1.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p>
<p>二 外國政府又はその代表者</p>	<p>2.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p>
<p>三 外國の法人又は団体</p>	<p>3. 외국 법인 또는 단체</p>
<p>四 法人又は団体であつて、前三号に掲げる者がその代表者であるもの又はこれらの者がその役員の三分の一以上若しくは議決權の三分の一以上を占めるもの。</p>	<p>4.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1 이상 혹은 의결권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것</p>
<p>4 公衆によつ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無線通信の送信(以下「放送」という。)をする無線局(電氣通信業務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受信障害対策中継放送をするもの及び人工衛星の無線局(以下「人工衛星局」という。)であつて、他人の委託により、その放送番組をそのまま送信する放送を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放送局」という。)については、第一項及び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人工衛星に開設する特定放送局にあつては、第一号、第二号又は第四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は、無線局の免許を与えない。</p>	<p>④ 공중선으로부터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이하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는 무선국[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수신장해해소를 위해 중계방송을 하는 것 및 인공위성의 무선국(이하 「인공위성국」이라고 한다.)으로서 타인에게 위탁을 받아 그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송신하는 방송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인공위성에 개설하는 특정방송국에 대해서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면허를 주지 않는다.</p>
<p>一 第一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又は前項各号に掲げる者</p>	<p>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p>
<p>二 法人又は団体であつて、第一項第一号</p>	<p>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제1호 내지</p>



<p>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者が業務を執行する役員であるもの又はこれらの者がその議決権の五分の一以上を占めるもの</p>	<p>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인 경우 또는 그러한 자의 의결권이 5분의1이상인 경우</p>
<p>三 法人又は団体であつて、イに掲げる者により直接に占められる議決権の割合とこれらの者によりロに掲げる者を通じて間接に占められる議決権の割合として総務省令で定める割合とを合計した割合がその議決権の五分の一以上を占めるもの（前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p>	<p>3.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점유하는 의결권의 비율과 그러한 자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의결권의 비율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이 그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것(전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イ 第一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者</p>	<p>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p>
<p>ロ イに掲げる者により直接に占められる議決権の割合が総務省令で定める割合以上である法人又は団体</p>	<p>나. 가목의 자의 의해 직접 점유하는 의결권의 비율이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p>
<p>四 法人又は団体であつて、その役員が前項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であるもの</p>	<p>4.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임원이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인 경우</p>
<p>5 前項に規定する受信障害対策中継放送とは、相当範囲にわたる受信の障害が発生しているテレビジョン放送（放送法第二條第二号の五 のテレビジョン放送をいう。以下同じ。）及び当該テレビジョン放送の電波に重疊して行う多重放送（同條第二号の六 の多重放送をいう。以下同じ。）を受信し、そのすべての放送番組に変更を加えないで当該受信の障害が発生している区域におい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同時にこれを再送信する放送のうち、当該障害に係るテレビジョン放送又は当該テレビジョン放送の電波に重疊して行う多重放送をする無線局の免許を受けた者が行うもの以外のものをいう。</p>	<p>⑤ 전항에서 규정한 수신장애해소 중계방송이라 함은 상당 범위에 걸쳐 수신장애가 발생한 텔레비전 방송(방송법 제2조 제2호의5의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텔레비전 방송의 전파와 중첩해 실시하는 다중방송(동조 제2호의6의 다중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하여 당해 수신장애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그 수신된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재송신하는 방송 중, 당해 장애와 관련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당해 텔레비전 방송의 전파에 중첩해 실시하는 다중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를 받은 자가 행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p>

<p><b>第六條（免許の申請）</b> 無線局の免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申請書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を添えて、総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b>제6조(면허신청)</b> ① 무선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p>
<p>一 目的</p>	<p>1. 목적</p>
<p>二 開設を必要とする理由</p>	<p>2. 개설이 필요한 이유</p>
<p>三 通信の相手方及び通信事項</p>	<p>3.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p>
<p>四 無線設備の設置場所</p>	<p>4. 무선설비의 설치장소</p>
<p>五 電波の型式並びに希望する周波数の範囲及び空中線電力</p>	<p>5. 전파형식 및 희망하는 주파수의 범위 및 공중선전력</p>
<p>六 希望する運用許容時間（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時間をいう。以下同じ。）</p>	<p>6. 희망하는 운용허용시간(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七 無線設備（第三十條及び第三十二條の規定により備え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設備を含む。次項第二号、第十條第一項、第十二條、第十七條、第十八條、第二十四條の二第四項、第七十三條第一項ただし書及び第五項並びに第二百條の十八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工事設計及び工事落成の予定期日</p>	<p>7. 무선설비(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비해야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다음 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2제4항, 제73조제1항단서·제5항 및 제102조의18제1항에 대해서도 같다.)의 공사설계 및 공사완료의 예정일</p>
<p>八 運用開始の予定期日</p>	<p>8. 운용 개시 예정일</p>
<p>九 他の無線局の第十四條第二項第二号の免許人又は第二十七條の二十三第一項の登録人（以下「免許人等」という。）との間で混信その他の妨害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関する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p>	<p>9. 타 무선국의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인 또는 제27조의23제1항의 등록인(이하 “면허인등”이라 한다)간에 혼신 그 밖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p>
<p>2 放送をする無線局（電氣通信業務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を除く。第七項第四号、次條第二項第二号及び第五号並びに第三項、第十四條第三項並びに第十七條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免許を受けようと</p>	<p>② 방송을 하는 무선국(전기통신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항제4호, 다음 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p>

<p>する者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申請書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を添えて、総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p>
<p>一 前項第一号、第二号及び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事項</p>	<p>1. 전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에서 열거하는 사항</p>
<p>二 無線設備の工事費及び無線局の運用費の支弁方法</p>	<p>2. 무선설비의 공사비 및 무선국의 운용비의 지불 방법</p>
<p>三 事業計畫及び事業收支見積</p>	<p>3.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견적</p>
<p>四 放送事項</p>	<p>4. 방송사항</p>
<p>五 放送區域</p>	<p>5. 방송구역</p>
<p>六 他の無線局の免許人等との間で混信その他の妨害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関する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p>	<p>6. 타 면허인등 간에 혼신 그 밖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p>
<p>七 次に掲げる無線局（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であつて総務大臣が公示する周波数を使用するものの免許の申請は、総務大臣が公示する期間内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⑦다음에 열거하는 무선국(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총무대신이 공시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면허 신청은 총무대신이 공시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四 放送をする無線局</p>	<p>4. 방송을 하는 무선국</p>
<p><b>第七條（申請の審査）</b> 総務大臣は、前條第一項の申請書を受理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申請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b>제7조(신청심사)</b> ①총무대신은 전조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이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p>
<p>一 工事設計が第三章に定める技術基準に適合すること。</p>	<p>1. 공사설계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p>
<p>二 周波数の割当てが可能であること。</p>	<p>2.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p>
<p>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総務省令で定める無線局（放送をする無線局（電氣</p>	<p>3. 전2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무선국[방송을 하는 무선국(전기통</p>

<p>通信業務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を除く。)を除く。)の開設の根本的基準に合致すること。</p>	<p>신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의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합치하는 것</p>
<p>2 總務大臣は、前條第二項の申請書を受理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申請が次の各号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②총무대신은 전조제2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신청이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p>
<p>一 工事設計が第三章に定める技術基準に適合すること。</p>	<p>1. 공사설계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p>
<p>二 總務大臣が定める放送用周波數使用計畫(放送をする無線局に使用させることのできる周波數及びその周波數の使用に關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計畫をいう。以下同じ。)に基づき、周波數の割当てが可能であること。</p>	<p>2. 총무대신이 정하는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방송을 하는 무선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및 그 주파수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거해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한 것</p>
<p>三 当該業務を維持するに足りる財政的基礎があること。</p>	<p>3. 당해 업무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p>
<p>四 總務省令で定める放送によ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放送を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できるだけ多くの者に對し確保することにより、放送による表現の自由ができるだけ多くの者によつて享有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申請者に關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基準をいう。)に合致すること。</p>	<p>4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대해 확보하는 것으로서,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향유되어 지도록 하기 위해, 신청자와 관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합치하는 것.</p>
<p>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總務省令で定める放送をする無線局の開設の根本的基準に合致すること。</p>	<p>5. 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송을 하는 무선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합치하는 것</p>
<p>3 放送用周波數使用計畫は、放送法第二條の二第一項の放送普及基本計畫に定める同條第二項第三号の放送系の數の目標(次項において「放送系の數の目標」という。)の達成に資することとなるように、第二十六條第一項に規定する周波數割当計</p>	<p>③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은 방송법 제2조의 2 제1항의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제3호의 방송계 수의 목표(다음 항에서 “방송계 수의 목표”라고 한다.)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26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파수할당계획에서</p>

<p>畫に示される割り当てることが可能である周波數のうち放送をする無線局に係るもの(次項において「放送用割当可能周波數」という。)の範囲内で、混信の防止その他電波の公平かつ能率的な利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勘案して定めるものとする。</p>	<p>나타내고 있는 할당 가능한 주파수 중 방송을 하는 무선국과 관계되는 것(다음 항에서 “방송용 할당 가능 주파수”라고 한다.)의 범위 내에서 혼신의 방지 기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감안해 정한다.</p>
<p>4 總務大臣は、放送系の數の目標、放送用割当可能周波數及び前項に規定する混信の防止その他電波の公平かつ能率的な利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の変更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放送用周波數使用計畫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p>	<p>④ 총무대신은 放送系 數의 目標, 방송용 할당 가능 주파수 및 전항에서 규정한 혼신의 방지 기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5 總務大臣は、放送用周波數使用計畫を定め、又は変更したときは、遲滞なく、これ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⑤ 총무대신은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해야 한다.</p>
<p>6 總務大臣は、申請の審査に際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申請者に出頭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⑥ 총무대신은 신청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第八條 (予備免許)</b> 總務大臣は、前條の規定により審査した結果、その申請が同條第一項各号又は第二項各号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申請者に對し、次に掲げる事項を指定して、無線局の予備免許を与える。</p>	<p><b>제8조(예비면허)</b> ① 총무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정해 무선국의 예비면허를 준다.</p>
<p>一 工事落成の期限</p>	<p>1. 공사완료의 기한</p>
<p>二 電波の型式及び周波數</p>	<p>2. 전파형식 및 주파수</p>
<p>三 呼出符号(標識符号を含む。)、呼出名称その他の總務省令で定める識別信号(以下「識別信号」という。)</p>	<p>3. 호출부호(표식부호를 포함한다。), 호출명칭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식별신호(이하 「식별신호」라고 한다.)</p>
<p>四 空中線電力</p>	<p>4. 공중선전력</p>

五 運用許容時間	5. 운용허용시간
2 總務大臣は、予備免許を受けた者から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前項第一号の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총무대신은 예비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第九條 (工事設計等の変更) 前條の予備免許を受けた者は、工事設計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總務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總務省令で定める輕微な事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9조(공사설계 등 변경) ① 전조의 예비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설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前項但書の事項について工事設計を変更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總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전항 단서의 사항에 관해서 공사설계를 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3 第一項の変更は、周波數、電波の型式又は空中線電力に変更を來すものであつてはならず、かつ、第七條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項第一号の技術基準に合致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제1항의 변경이 주파수, 전파형식 또는 공중선전력의 변경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前條の予備免許を受けた者は、總務大臣の許可を受けて、通信の相手方、通信事項、放送事項、放送區域又は無線設備の設置場所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전조의 예비면허를 받은 자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통신상대방, 통신사항, 방송사항, 방송구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b>第十條 (落成後の検査)</b>	<b>제10조(준공검사)</b>
<b>第十二條 (免許の付与)</b> 總務大臣は、第十條の規定による検査を行つた結果、その無線設備が第六條第一項第七号又は同條第二項第一号の工事設計 (第九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変更があつたときは、変更があつた	<b>제12조(면허교부)</b> 총무대신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6조제1항제7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공사설계(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것)에 적합하고

<p>もの) に合致し、かつ、その無線従事者の資格及び員数が第三十九條又は第三十九條の十三、第四十條及び第五十條の規定に、その時計及び書類が第六十條の規定にそれぞれ違反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遲滞なく申請者に對し免許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p>	<p>그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가 제39조 또는 제39조의13, 제4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그 시계 및 서류가 제60조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 대해 면허를 교부해야한다.</p>
<p></p>	<p></p>
<p><b>第十三條 (免許の有効期間)</b> 免許の有効期間は、免許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總務省令で定める。ただし、再免許を妨げない。</p>	<p><b>제13조(면허 유효기간)</b> ① 면허 유효기간은 면허일로부터 기산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p>
<p>2 九百三メガヘルツから九百五メガヘルツまでの周波数の電波を使用し、かつ、五ワット以下である無線局であつて、適合表示無線設備のみを使用するものの免許の有効期間は、前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十年とする。</p>	<p>② 903MHz에서 905MHz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고, 공중선전력이 5W 이하인 무선국으로서 적합표시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것의 면허 유효기간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p>
<p>3 船舶安全法第四條 (同法第二十九條ノ七の規定に基づく政令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の船舶の船舶局(以下「義務船舶局」という。)及び航空法第六十條の規定により無線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航空機の航空機局(以下「義務航空機局」という。)の免許の有効期間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無期限とする。</p>	<p>③ 선박안전법 제4조 (동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근거한 政令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박의 선박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고 한다.) 및 항공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고 한다.)의 면허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한다.</p>
<p></p>	<p></p>
<p><b>第十三條の二 (多重放送をする無線局の免許の効力)</b> 超短波放送(放送法第二條第二号の四の超短波放送をいう。)又はテレビジョン放送をする無線局の免許がその効力を失つたときは、その放送の電波に重疊</p>	<p><b>제13조의2(다중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효력)</b> 초단파 방송(방송법 제2조제2호의 4의 초단파 방송을 말한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을 때는 그 방송의 전파에 중첩하여 다</p>

して多重放送をする無線局の免許は、その効力を失う。	중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도 그 효력을 잃는다.
<b>第十四條 (免許狀)</b> 總務大臣は、免許を与えたときは、免許狀を交付する。	<b>제14조(면허장)</b> ① 총무대신은 면허 교부시 면허장을 교부한다.
2 免許狀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면허장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 免許の年月日及び免許の番号	1. 면허 연월일 및 면허 번호
二 免許人(無線局の免許を受けた者をいう。以下同じ。)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2. 면허인(무선국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三 無線局の種別	3. 무선국 종별
四 無線局の目的	4. 무선국 목적
五 通信の相手方及び通信事項	5.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
六 無線設備の設置場所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七 免許の有効期間	7. 면허 유효기간
八 識別信号	8. 식별신호
九 電波の型式及び周波數	9. 전파형식 및 주파수
十 空中線電力	10. 공중선전력
十一 運用許容時間	11. 운용허용시간
3 放送をする無線局の免許狀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左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장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 前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六号から第十一号までに掲げる事項	1. 전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二 放送事項	2. 방송사항
三 放送區域	3. 방송구역
<b>第十五條 (簡易な免許手續)</b> 第十三條第一	가. <b>제15조(간이면허절차)</b> 제13조제1항 단



<p>項ただし書の再免許及び適合表示無線設備のみを使用する無線局その他総務省令で定める無線局の免許については、第六條及び第八條から第十二條までの規定にかかわらず、総務省令で定める簡易な手續によることができる。</p>	<p>서의 재면허 및 적합표시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무선국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간이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p>
<p><b>第十七條</b> 免許人は、通信の相手方、通信事項若しくは無線設備の設置場所を変更し、又は無線設備の変更の工事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総務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放送をする無線局の免許人が放送事項又は放送区域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p>	<p><b>제17조</b> ① 면허인은 통신상대방, 통신사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인이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하다.</p>
<p>2 第九條第一項但書、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無線設備の変更の工事をする場合に準用する。</p>	<p>② 제9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b>第二十六條 (周波數割当計畫)</b> 總務大臣は、免許の申請等に資するため、割り当てることが可能である周波數の表(以下「周波數割当計畫」という。)を作成し、これを公衆の閱覽に供するとともに、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p>	<p><b>제26조(주파수할당계획)</b> ① 총무대신은 면허 신청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표(이하 「주파수할당계획」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공중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변경 경우도 동일하다.</p>
<p>2 周波數割当計畫には、割り当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無線局の範圍を明らかにするため、割り当てることが可能である周波數ごとに、次に掲げる事項(放送をする無線局(電氣通信業務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を除く。)に係る周波數にあつては、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p>	<p>② 주파수할당계획에는 할당 받을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위해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방송을 하는 무선국(전기통신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련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p>

一 無線局の行う無線通信の態様	1. 무선국이 실시하는 무선통신 형태
二 無線局의 목적	2. 무선국의 목적
三 周波數の使用の期限その他の周波數の使用に關する條件	3. 주파수의 사용의 기한 기타 주파수의 사용에 관한 조건
四 第二十七條の十三第四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周波數であるときは、その旨	4. 제27조의1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파수일 때는 그 취지
<b>第五十二條（目的外使用の禁止等）</b> 無線局は、免許狀に記載された目的又は通信の相手方若しくは通信事項（放送をする無線局（電氣通信業務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は放送事項）の範圍を超えて運用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通信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b>제52조(목적외 사용 금지등)</b> 무선국은 면허장에 기재된 목적 또는 통신상대방 혹은 통신사항(방송을 하는 무선국(전기통신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방송사항)의 범위를 넘어 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통신은 제외한다.
一 遭難通信（船舶又は航空機が重大かつ急迫の危險に陥つた場合に遭難信号を前置する方法その他總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行う無線通信をいう。以下同じ。）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조난 신호를 먼저 두는 방법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二 緊急通信（船舶又は航空機が重大かつ急迫の危險に陥るおそれがある場合その他緊急の事態が発生した場合に緊急信号を前置する方法その他總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行う無線通信をいう。以下同じ。）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긴급 신호를 전치 하는 방법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三 安全通信（船舶又は航空機の航行に對する重大な危險を予防するために安全信号を前置する方法その他總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行う無線通信をいう。以下同じ。）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신호를 전치 하는 방법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四 非常通信（地震、台風、洪水、津波、	4. 비상 통신(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하

<p>雪害、火災、暴動その他非常の事態が発生し、又は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有線通信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又はこれを利用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きに人命の救助、災害の救援、交通通信の確保又は秩序の維持のために行われる無線通信をいう。以下同じ。)</p>	<p>고, 화재, 폭동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선 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원, 교통 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무선 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五 放送の受信</p>	<p>5. 방송의 수신</p>
<p>六 その他總務省令で定める通信</p>	<p>6.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통신</p>
<p><b>第七十一條の二 (特定周波數変更對策業務及び特定周波數終了對策業務)</b> 總務大臣は、次に掲げる要件に該当する周波數割当計畫又は放送用周波數使用計畫(以下「周波數割当計畫等」という。)の変更を行う場合において、電波の適正な利用の確保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予算の範囲内で、第三号に規定する周波數又は空中線電力の変更に係る無線設備の変更の工事をしようとする免許人その他の無線設備の設置者に対して、当該工事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ための給付金の支給その他の必要な援助(以下「特定周波數変更對策業務」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p>	<p><b>제71조의2(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b> ① 총무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 또는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이하 「주파수할당계획등」이라고 한다.)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전파의 적정한 이용의 확보를 꾀이하 「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변경과 관련되는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려고 하는 면허인 기타 무선설비의 설치자에 대해서, 당해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원조(이하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b>第七十五條 (無線局の免許の取消し等)</b> 總務大臣は、免許人が第五條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より免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なつたときは、その免許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p>	<p><b>제75조(무선국 면허취소등)</b> ①총무대신은 면허인이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일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한다.</p>
<p>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總務大臣</p>	<p>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총무대신은 면허인이</p>

<p>は、免許人が第五條第四項（第三号に該当する場合に限る。）の規定により免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三号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状況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免許人の免許の有効期間の残存期間内に限り、期間を定めてその免許を取り消さないことができる。</p>	<p>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동항제3조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면허인의 면허 유효기간의 잔존기간에 한해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p>
<p><b>第七十六條</b> 總務大臣は、免許人等がこの法律、放送法 若しく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これらに基づく處分に違反したときは、三箇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無線局の運用の停止を命じ、若しくは第二十七條の十八第一項の登録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効力を停止し、又は期間を定めて運用許容時間、周波數若しくは空中線電力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p>	<p><b>제76조</b> ① 총무대신은 면허인이 이 법률, 방송법 또는 이러한 법률에 따르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무선국의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27조의1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수 있다.</p>
<p>2 總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ほか、登録人が第三章に定める技術基準に適合しない無線設備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他の登録局の運用に悪影響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きその他登録局の運用が適正を欠くため電波の能率的な利用を阻害するおそれが著しいときは、三箇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登録の全部又は一部の効力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p>	<p>②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외에 등록인이 제3장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등록국의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다른 등록국 운용의 적정성이 부족하여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3 總務大臣は、免許人（包括免許人を除く。）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免許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p>	<p>② 총무대신은 면허인(포괄면허인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p>
<p>一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無線局の運用を引き続き六箇月以上休止したとき。</p>	<p>1. 正当한 이유 없이 무선국의 운용을 계속해서 6개월이상 휴지한 때</p>

二 不正な手段により無線局の免許若しくは第十七條の許可を受け、又は第十九條の規定による指定の変更を行わせたとき。	2. 부정한 수단에 의해 무선국의 면허 혹은 제17조의 허가를 받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을 행한 때
三 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制限に従わないとき。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에 따르지 않을 때
四 免許人が第五條第三項第一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4. 면허인이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6 總務大臣は、第三項（第四号を除く。）及び第四項（第五号を除く。）の規定により免許の取消しをしたとき並びに前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により登録の取消しをしたときは、当該免許人等であつた者が受けている他の無線局の免許等又は第二十七條の十三第一項の開設計畫の認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⑥ 총무대신은 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전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는 해당 면허인등의 자가 받은 다른 무선국의 면허 또는 제27조의13제1항의 개설계획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b>第九十九條の十一（必要的諮問事項）</b> 總務大臣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電波監理審議會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b>제99조의11(필요적 자문 사항)</b> 총무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해야 한다.
第七條第二項第四号（放送によ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同項第五号（放送をする無線局の開設の根本的基準、）	제7조제2항제4호(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향유기준), 제2항제5호(방송을 하는 무선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第七條第三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放送用周波數使用計畫の制定又は変更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b>第三百條の二（電波利用料の徴收等）</b>	<b>제103조의2(전파이용료 징수등)</b>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9-24

##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발 행 일 2009년 10월 (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세종로100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mailto: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http://www.kcc.go.kr)

인 쇄 처 양우인쇄

---